

사우디아라비아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1
2. 정치사회동향 /3
3. 한국과의 주요이슈 /5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6
2. 주요 산업 동향 /8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18

III. 무역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21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24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27
대한수입규제동향 /31
관세제도 /31
주요인증제도 /32
지적재산권 /36
통관운송 /38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45
- 외국기업 투자동향 /46
- 우리기업 투자동향 /48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51
- 진출형태별 절차 /55
- 투자입지여건 /63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71
- 조세제도 /76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82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특성 /84
2. 물가정보 /87
3. 바이어발굴 /89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93
5. 무역, 투자 진출시 애로사항 /98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99
7. 이주정착 가이드 /101
8. 출장가이드 /104



1992 MAGELLAN Geographix Santa Barbara, CA (800) 929-4627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 | |
|---------------|---|
| 국명 |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 (Kingdom of Saudi Arabia) |
| 위치 | 아라비아 반도 |
| 면적 | 215만 Km ² (아라비아반도의 4/5 차지, 한반도의 10배) |
| 기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야드 등 내륙 지역: 일반적으로 고온 건조 ○ 젯다 등 홍해 연안과 담맘 등 걸프 연안: 고온 다습(평균 섭씨 32 - 34 도, 최고 54 도, 최저 0 도) |
| 수도 | 리야드 (Riyadh) |
| 인구 | 2,312 만명(남자 1,279만, 여자 1,033만/ 사우디인 1,685백만, 외국인 627만, 2005년) |
| 주요도시 | 리야드(446만), 제다(314만), 담맘(175만), 메카(129만), 메디나(81만) 등 |
| 민족 | 아랍족 (베드원 27%, 정착민 73%) |
| 언어 | 아랍어 |
| 종교 | 이슬람교 (수니파 90%, 시아파 10%) |
| 건국(독립)일 | 9월23일 (사우디 왕국 선포일) |
| 정부형태 | 전제 군주제 (정교 일치) |
| 국가원수 (실권자) | 압둘라 왕: King Abdullah bin Abdulaziz al-Saud (2005.8.1 취임) 2 성지의 수호자(the Custodian of the Two Holy Mosques)로 칭함 |
| 입법부 | 없음(국왕의 자문기구인 마줄리스 슈라 'SHOURA COUNCIL'가 정부 법안 심의를 함으로써 입법부의 기능을 가짐, SHOURA COUNCIL의 위원은 총 120명으로 국왕이 임명) |
| 정당 | 없음 |
| 정부성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적: 친서방, 온건 노선 ○ 국내적: 정교 일치의 보수 이슬람 |

자료원: EIU, COUNTRY PROFILE 2006, 사우디 중앙통계국 Statistical Year Book 2006

주: 통계는 2007.12월 현재 입수 가능한 최신 통계

나. 경제 지표

| | |
|-------------------------|---|
| 명목 GDP | US\$ 3,092억 (2005년), US\$3,470억(2006년) |
| 실질 경제성장률 | 6.5% (2005년), 4.3% (2006년 추정) |
| 1인당 GDP | US\$12,570 (2005년), US\$13,750 (2006년) |
| 실업률 | 8.0%(2006년, 남자), 실제 실업률은 15~20%로 추산되며, 자국민 취업 확대를 위해 자국민 우선고용정책인 Saudization을 강화 중 |
| 물가상승률 | 0.4% (2005년), 2.3%(2006년) |
| 화폐단위 | Saudi Arabian Riyal (SAR) |
| 환율 | US\$1 = SR 3.745 (고정환율) |
| 외채 | 416억 달러(2005년 추정), 466억 달러(2006년 추정) |
| 외환보유고 | 265억 달러(2005년), 253억 달러(2006년 추정) |
| GDP구조(2006년) | 농업 3.0%, 석유가스 50.0%, 제조 9.5%, 건설 4.5%, 서비스기타 33.0% |
| 교역규모 | 수출 : US\$1,806억(2005년), US\$2,110억(2006년) 수입 : US\$595억(2005년), US\$697억(2006년) |
| 경상수지 | 871억 달러 흑자(2005년), 1,033억 달러 흑자 (2006년) |
| 주요 교역품 (2006년) | 수출 : 석유 및 석유제품 89.3%, 석유화학제품 3.4%, 플라스틱2.5%, 금속 및 금속제품 1.0%, 기타 3.8% 수입: 수송기계 25.7%, 금속철강 19.3%, 식품옹산물 9.0%, 화학제품 8.0%, 섬유 및 제품 3.9% |
| 주요수출국 및 수출점유율(2006년) | 일본 15.9%, 미국 14.3%, 한국 8.1%, 중국 6.2%, 싱가포르 4.0%, 네델란드 3.0% |
| 주요수입국 및 수입점유율(2006년) | 미국 14.5%, 중국 8.6%, 독일 8.1%, 일본 8.1%, 이탈리아 4.0%, 영국 3.9%, 프랑스 3.9%, 한국 3.8%, 인도 3.8%, 호주 3.0% |
| 석유매장량 | 2,643억 배럴 (세계 매장량의 약 23.1%) (OPEC 자료) |
| 천연가스매장량 | 235조 ft ³ 로서 세계 총 매장량의 4% (OPEC 자료) |
| 군사력 | 국방 항공부 예하의 정규군 약 10.8만명(지상군 7.5만, 공군 1.8만, 해군 1.5만), 국가 방위국(National Guard) 약 7.5만 명, 내무부 산하 치안병력 4.4만명(경찰 2만, 경비대 1.6만, 특수군 8천) 등 총 22.7만 명 추정 |

자료원: EIU, 사우디 중앙통계국 Statistical Year Book 2006, OPEC

주: 통계는 2007.12월 현재 입수 가능한 최신 통계

다. 한-사 관계

| | |
|------|---|
| 체결협정 | 경제기술협력협정(1974), 문화협정(1974), 항공협정(1976), 항공운수소득면세협정(1990), 교육교류약정(1997), 투자보장협정(2002), 이중과세방지협정(2007), 고등교육협력MOU(2007) |
| 교역규모 | US\$2,978백만 (우리나라의 수출, 2006년) US\$20,552백만 (우리나라의 수입, 2006년) |
| 교역품 | 자동차, 철강, 산업기계, 가전, 직물 (우리나라의 수출) 광물성원료(원유, 나프타, LPG), 석유화학제품 (우리나라의 수입) |
| 투자교류 | 우리나라의 대사우디 투자: 2006년 3분기 까지 60건, US\$ 6천만 사우디의 대한 투자: 2006년 3분기 까지 26건, US\$2억6천만 |
| 교민 | 약 1,300 명 (2007.11기준) |

자료원: 사우디 투자청, 한국무역협회, 한국 외교통상부

주: 통계는 2007.12월 현재 입수 가능한 최신 통계

2. 정치 사회 동향

가. 정치 동향

1926년 압둘아지즈 이븐 사우드가 히자즈(Hijaz) 왕국을 선포하고, 1932년 Najd 및 Hijaz를 통합하여 국명을 현재의 사우디아라비아 왕국(Kingdom of Saudi Arabia)으로 개칭한 사우디는 설립자 압둘아지즈의 유언인 형제상속의 원칙에 따라 왕위를 계승하고 있으며, 2005년 8월 파드(Fahd) 국왕의 서거에 따라 압둘라(Abdullah)가 제6대 왕으로 즉위하였다.

파드 전 국왕은 이슬람정상회의, 이슬람회의기구, 세계무슬림연맹 등에서 이슬람의 단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해왔으며 이슬람국가간 단결과 이해조정을 이루려 노력하였다. 1986년 호칭을 폐하(Majesty)에서 '두 성지의 수호자(Custodian of the Two Holy Mosques)'로 바꾸었는데 이는 이슬람을 통하여 단결과 결속을 이루려는 파드 국왕의 의지를 보여 준 것이다. 신임 압둘라국왕도 동호칭을 그대로 승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압둘라 국왕은 취임 후 왕실 계파간 화해 및 점진적인 정치·경제개혁 정책 추진, 왕실 후계 구도의 신중한 접근, 미국 등 서방, 아시아 및 아랍·이슬람 국가와의 관계강화 등을 통한 국정운영으로 안정적인 통치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과는 9.11 테러사건 이후 소원해진 관계를 청산하고, 국제테러리즘 공조 및 양국관계 강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03. 5 리야드 테러사건으로 Al-Qaeda등 테러 단체들의 표적이 사우디 정부로 전환됨으로써 대테러 관련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2005.4 양국 정상회담에서 “사우디-미국 전략대화” 협의체 창설에 이어 동 회의를 2차례 개최(2005.11월 젯다 및 2006.5월 워싱턴)한 바 있다.

압둘라 국왕은 취임 이후 대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동방정책(look east)을 적극 추진하여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도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05.8월 및 11월 이해찬 국무총리가 사우디를 2회 방문하였고, 2006.1~2월에는 압둘라 국왕이 중국, 인도, 말련 및 파키스탄을 방문하였고, 2006.4월에는 Sultan 왕세제가 일본 및 싱가포르 방문하였다. 2007년 3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여 양국간 관계강화를 위한 노력을 확대하였다.

국제 및 지역기구에서 아랍·이슬람세력을 대변하고 동 국가들에 대한 정치, 경제적 지원 강화를 통해 사우디의 국제적 비중 및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유엔, 아랍동맹 등에서 국왕 자신이 제시한 아랍평화안(Arab Peace Initiative)에 입각한 아랍-이스라엘 분쟁 해결, 이라크 통합 및 제 정파간 화해 노력 및 팔레스타인 정부 재정지원 등 추진하면서 2005.12월 이슬람정상회의(OIC)를 메카에서 주재하였고, 2006년 12월 GCC정상회의, 2007년 아랍정상회의 등을 통하여 아랍 및 이슬람의 맹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현 Al-Saud 왕가의 장기집권, 반미정서, 높은 실업률(특히, 청년층) 및 빈부격차 등에 기인한 반정부 및 이슬람 강경세력의 저항으로 치안이 불안정한 측면이 있으나, 아직은 Abdullah 국왕의 통치권에 근본적인 위협세력으로 대두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Abdullah 국왕하의 사우디 왕정이 안정적인 통치기반을 확고히 해 나가기 위해서는 ① 왕실 지도부의 후계구도를 둘러싼 내분 가능성, ② Al-Saud 왕가의 80년간에 걸친 장기집권에 기인한 반정부 세력의 민주화 및 경제 개혁요구, 이슬람 강경세력의 테러활동 지속, ③ 높은 실업률 및 빈부격차 등 난제들을 잘 다스려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요소들이 향후 정국 안정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나. 사회동향

사우디는 국왕이 전권을 가지고 있는 전제군주제이자 이슬람을 바탕으로 하는 왕정일치의 국가로서 사회 전반이 이슬람율법에 따라 관습화되어 있다. 전 국민이 무슬림으로서 1일 5회의 기도를 실시하고 기도시간 중에는 영업을 중단하며 여성들은 아바야로 불리는 검은색 천으로 된 옷을 입고, 히잡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며, 여성에게 운전이 금지되는 등 지극히 남성중심의 사회관습을 이어오고 있다.

1995년까지만 해도 사우디 내에서 반정부 세력이나 활동은 미약했고 그나마 외부와 연계되지 않은 단순 극소수의 반미, 반왕정 활동으로만 간주되었다. 그러나 1995년 11월 리야드 폭탄테러 사건에 이어 1996년 6월 담맘 미군기지 아파트 폭파 테러가 발생하면서, 사우디 소수 종파인 동부 지역의 쉬아파를 중심으로 한 반왕정, 반미 세력의 활동이 조직적이며 외부세력과도 연대한 것이 알려졌다. 특히 2003년 5월, 11월 2차례에 걸친 리야드 외국인 거주단지에 대한 연쇄자살폭탄 테러는 인명피해도 커졌을 뿐만 아니라 국제테러조직인 알카에다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압둘라 국왕은 취임 이후 사우디 내 테러리즘 척결을 최우선시 하고 미국 등 서방과의 공조 하에 강력한 테러 소탕작전을 전개한 바, 테러활동이 다소 위축된 양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간헐적인 테러가 계속되는 양상이다. 2005.1 내무부 청사 테러사건 이후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2006년에 리야드 테러 총격사건(5월), Abqaiq 유전시설 공격사건(2월) 등 테러가 간헐적으로 발생하였다. 2007년 4월 석유시설, 정부요인 등에 대한 테러기도 혐의를 사전 저지하고 7개 세포조직을 적발하여 테러범 172명을 체포하였으며, 2007년 11월 동부지역 석유시설, 이슬람종교 지도자, 보안군 등을 대상으로 한 테러기도 혐의로 6개 세포조직을 적발 208명을 체포하였고, 2007년 12월 예멘 및 이라크 국경지대에서 밀입국 기도 및 불법무기소지 등 혐의로 800여명 이상을 체포하여 다량의 무기를 압수하는 등 정부의 대테러 활동이 강화되고 있어 테러활동은 최근 들어 위축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우디내 테러가 국민 저변에 확산되어 있는 반미 및 반서방 정서, Al-Saud 왕가의 장기집권 및 부패, 빈부격차 및 고실업 등에 기인하고 있는데다, 이라크에서 활동해온 사우디 과격분자들의 귀환 등을 예상해 볼 때 테러를 완전 척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Abdullah 국왕은 즉위 이후 부패척결, 정의실현 및 국민 복리증진을 민생을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채택, 부의 공정한 배분을 통한 빈부격차 해소에 주력하고, 왕족들의 부패단절을 각 기관에 지시하는 등 부패척결에 앞장서고 있다. 사우디의 실질 실업률은 15% 내외의 높은 실업률로 추정 되는데, 특히 대학을 갓 졸업 한 청년층의 실업률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실업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Saudization 정책을 추진, 75%의 산업인력을 자국인화 한다는 목표 하에 자국인 고용 의무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외국인 채용 제한업종을 늘려가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석유의존경제 탈피와 함께 청년 실업해소, 자국 내 사우디인 고용확대를 위한 인재 양성에도 주력하여 2006년도에는 해외 국비유학생 18,000명(미국 15,000명, 아시아 3,000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2007년도에 84명의 국비유학생을 파견키로 확정하고 2007년 4월 중 1차로 55명이 연세대학교 등 6개 대학에 배치되어 한국 유학을 시작하였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수입 검사 제도: 대 사우디 수출품 인증제도

- 사우디는 1995년도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소비재 상품에 대해 사우디 표준청(SASO)에서 정한 표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사 확인하는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외국 수입제품의 경우에도 국제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 동 인증제도는 매 선적 시마다 선적 전 검사 및 안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한국의 수출업체에게 비용과 절차 면에서 부담을 주고, 교역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동 제도는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소비재상품에 적용(2004년 8월 이전까지는 68개 품목 군에 적용) 되므로 한국에만 차별적인 제도라 할 수 없으나,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2007년 6월부터는 한국정부에서 지정한 10개 시험기관에서 인증서 발급을 전담하고 있다.

나. 영사 인증 제도: 폐지됨

- 영사 인증제도는 상업송장(C/I) 원본, 원산지 증명서(C/O) 원본, 서적증명서(C/S), 수출 신고필증, 수출계약서 등에 대해 국내 절차를 밟은 후 국내 주재 사우디 영사에게 재차 확인을 받는 제도로서 시간 및 수수료 부담 등으로 한국 수출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한 바 있으나, 2006년 5월 동 영사인증제도는 폐지되어 현재는 영사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다. 사우디 입국비자 발급제도

- 사우디 외교부는 WTO 가입과 관련하여 비즈니스 방문의 경우에 사우디 입국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나,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비즈니스 방문의 경우 현지의 초청장 없이 상공회의소 등록증과 신청서만으로 24시간 내 발급토록 훈령이 전달된 바 있으나(2005.10.), 실제 이행되지 않고 있어 한국 비즈니스맨들의 사우디 입국비자발급 시 불편사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 2007년 9월 사우디 최고경제회의(SEC)는 사우디기업인 및 외국기업인의 끊임없는 비자발급 개선요구에 따라 비즈니스비자의 경우 초청장없이 재외공관뿐만 아니라 공항 또는 사우디 입국지점에서 1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해 주도록 개선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2007년 11월 국무회의에서 비자수수료를 SAR 1,000(약 US\$267)로 결정하여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간의 관습 등을 감안하여 평가할 때 실제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 여성 사업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자발급을 거절하고 있으며, 사우디 외교부의 공식 초청 노트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입국을 불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에 사절단으로 방문하는 여성기업인에게도 비자발급을 해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라. 사회보험료 환불

- 70~80년대 사우디아라비아에 근무하였던 우리나라 근로자(20~30만 명으로 추산)들이 근무 당시 불입하였던 사우디 사회보험료(Social Insurance Premium)를 환불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사우디 정부의 처리지연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마. 외국인력 비자발급

- 제3국 인력에 대한 Block Visa 획득에 상당기간 소요되어, 국내업체들의 인력수급에 큰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 Block Visa: 사우디 정부에서 자국시장에 필요한 외국인력의 취업을 위해 해당 업체가 신청한 인원 중 일정 인원(쿼터)을 정해 인원수대로 일괄 발급하는 비자

바. 외국인의 관청 출입 문제

- 사우디 정부는 외국인의 관청 출입을 불허하고, 현지인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공사 책임자가 관련 공무원과의 업무협의 시 현지인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경우 부정확한 의사전달 및 처리지연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사. GCC와의 FTA 체결 문제

- 사우디를 포함한 걸프협력회의(GCC)는 EU,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과 FTA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한국과의 FTA체결도 현안사항 중의 하나이다. 한국은 2007년 3월 대통령 순방 시 GCC와 FTA협상을 추진키로 발표한 바 있으며, 2007년 11월 실무 협의단이 리야드 소재 GCC사무국을 방문하여 협상일정을 상의한 바 있으며, 2008년 3월~4월 경 최초 실무협상이 있을 예정이다.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고유가 기반, 경제성장세 지속

- 중동지역의 정치적 갈등상황과 테러, 주변정세 불안정으로 인해 경제운용이 불투명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유가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는 2003년 이후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 2005년 GDP는 3,092 억 달러, 실질 GDP는 전년대비 6.5% 증가하였고, 2006년에는 4.3% 성장하였다.

사우디 경제성장을 현황 및 전망

| 구 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주) |
|---------------|------|------|------|------|------|------|---------------------|
| 실질 GDP 성장률(%) | 0.5 | 0.1 | 7.7 | 5.3 | 6.5 | 4.3 | 4.0 |

주: 2007년은 전망치임.

자료: EIU, SAMA

- 사우디의 높은 경제성장은 최대 석유 매장량 및 생산량을 근간으로 한 천연자원 중심의 수출구조에서 기인하고 있는데, 석유관련 산업이 전체산업의 70%, 수출의 90%를 차지하는 단순 산업구조이며 유가의 등락에 따라 정부재정 수지와 경제성장이 크게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다.
- 70년대 오일 봄의 정책실패로 인한 장기적 경기침체 및 고 실업 문제를 경험한 바 있는 사우디는 제 2의 오일 봄을 계기로 제 2의 경제 도약을 달성하려는 목표로 경제정책을 수립하였는데, 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으로 i) 석유 의존산업 및 동부 지역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ii)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고용창출로 고 실업 문제를 해결하며,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및 국내자본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나. 경제성장 및 산업기반확대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확대

- 풍부한 오일 머니 유입에 따라 사우디 정부는 경제성장 및 산업기반확대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를 확대하고 있는데, 최근 발표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는 i)사우디 5개 경제도시 개발 프로젝트 ii)사우디 원유·가스 개발 및 석유화학산업 프로젝트로 구분되고 있다.
-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들의 주요 특징은 i)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국내자본의 투자 활성화 및 고용창출효과 기대 ii) 5개 경제도시 가운데 3개 도시가 홍해에 접한 서부지역 도시로서 지역 발전의 균형과 함께 중동은 물론 아프리카·유럽·아시아를 잇는 물류 중심지로서의 개발 계획 iii)5개 경제도시의 노동집약적 2차 산업 중점육성과 의료·교육 등 서비스분야의 대규모 개발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 기대 iv) 전통적 산업기지인 동부 지역 특히 Jubail 을 중심으로 한 원유개발과 석유화학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대규모 설비증산과 관련 Infra 구축 v)원유공급자인 ARAMCO 의 석유화학산업 진출투자와 같은 고부가 석유화학분야로의 투자 집중 vi) 광업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석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다각화 및 광업부분시스템의 필수 요건인 철도수송망과 같은 대규모 Infra 투자 등이다.

다. 2008년 정부 예산

- 2008년도 사우디 정부 지출예산은 전년대비 7.9% 증가한 1093 억 달러로 확정하였다. 수입예산은 12.5% 증가한 1200 억 달러로 재정수지는 107 억 달러의 흑자예산으로 편성되었다. 사우디는 2007년 지출예산도 13.4% 증액 편성한 바 있다.
- 2007년 예산편성 유가 단가는 US\$45/b 로 전년도 대비 배럴당 \$10 높으나, 여전히 보수적으로 편성하였다. 2008년 평균 유가가 \$72/배럴(Jadwa 연구소)로 예상되어 2008년 정부예산도 계획보다 대폭적인 흑자가 예상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연도별 정부예산 현황

(단위: US\$ 억)

| 구분 | 2006 | | 2006 | | 2007 | |
|----|-------|-------|-------|-------|-------|--|
| | 예산 | 예산 | 증감(%) | 예산 | 증감(%) | |
| 수입 | 1,040 | 1,067 | 2.6 | 1,200 | 12.5 | |
| 지출 | 893 | 1,013 | 13.4 | 1,093 | 7.9 | |
| 수지 | 147 | 53 | -63.9 | 107 | 101.9 | |

자료원: Ministry of Finance of Saudi Arabia, Arab News

라. 사우디아라비아 주요경제지표 (2002-2006)

| 구 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 GDP(십억불) | 188.6 | 214.6 | 250.3 | 309.2 | 347.4 |
| 1 인당 GDP(\$) | 8,310 | 9,200 | 10,450 | 12,570 | 13,750 |
| 실질 GDP 성장률(%) | 0.1 | 7.2 | 5.3 | 6.5 | 4.3 |
| 물가상승률(%) | 0.2 | 0.6 | 0.3 | 0.4 | 2.3 |
| 실업률(%), 여성 제외) | 7.57 | 8.20 | 8.50 | 8.80 | 8.0* |
| 총교역액(백만불) | 102,088 | 127,112 | 167,048 | 225,962 | 285,700 |
| 수출(백만불) | 72,464 | 93,244 | 125,998 | 174,635 | 199,100 |
| 수입(백만불) | 29,624 | 33,868 | 41,050 | 51,327 | 86,600 |
| 경상수지(백만불) | 11,872 | 28,049 | 51,927 | 87,205 | 102,700 |
| 총외채(10 억불) | 29.5 | 31.3 | 34.9 | 41.6 | 46.6* |
| 외환보유고(10 억불) | 20.6 | 22.6 | 27.3 | 26.5 | 25.3* |
| 원유생산(천배럴/일) | 7,093 | 8,410 | 8,897 | 9,353 | 9,200* |
| 원유수출(10 억불) | 54,439 | 75,259 | 93,360 | 144,615 | 150,500 |

자료원: EIU, OPEC

주: * 표는 추정치임

2. 주요 산업 동향

가. 산업 구조 개관

-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산업이 전체산업 생산의 약 59%(총 GDP 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석유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제조업은 전체 산업 생산의 11.1%(총 GDP 의 9.5%)로 비교적 낮은 편이며, 석유 화학 산업이 제조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 제조업의 실질 성장은 실질 GDP 성장과 함께 최근 4년간 7%-10%대의 높은 신장세를 기록하였다.
 - 실질 제조업 성장을: 7.1%(2003) → 6.8%(2004) → 7.1%(2005) → 10.9%(2006)

산업별 GDP 구조

(단위: 백만 US\$, %)

| 분야 | 2003 | 2004 | 2005 | 2006 | 2006 산업비중% |
|------------------------|----------------|----------------|----------------|----------------|---------------|
| A. 산업생산 (정부서비스 제외) | 175,102 | 206,554 | 262,291 | 295,702 | 85.2 |
| 1. 농림수산업 | 9,721 | 9,917 | 10,204 | 10,494 | 3.0 |
| 2. 광물성 원료 | 78,430 | 102,525 | 148,840 | 173,452 | 50.0 |
| a) 오일 & 가스 | 77,687 | 101,755 | 148,036 | 172,614 | 49.7 |
| b) 기타 | 743 | 770 | 804 | 838 | 0.2 |
| 3. 제조업 | 23,005 | 25,554 | 29,665 | 32,886 | 9.5 |
| a) 석유정제 | 7,929 | 8,649 | 10,521 | 11,593 | 3.3 |
| b) 기타 | 15,076 | 16,905 | 19,145 | 21,292 | 6.1 |
| 4. 전력, 가스 및 수처리 | 2,632 | 2,775 | 2,938 | 3,110 | 0.9 |
| 5. 건설 | 12,570 | 13,638 | 14,611 | 15,662 | 4.5 |
| 6. 도소매, 유통 | 14,362 | 15,502 | 16,719 | 18,050 | 5.2 |
| 7. 수송, 통신 | 8,860 | 9,511 | 10,261 | 11,026 | 3.2 |
| 8. 금융, 보험, 부동산, 기타 서비스 | 25,522 | 27,132 | 29,053 | 31,022 | 8.9 |
| B. 정부생산, 서비스 | 37,314 | 41,432 | 43,945 | 48,321 | 13.9 |
| 소계 (A+B : 관세수입 제외) | 212,416 | 247,986 | 306,236 | 344,023 | 99.1 |
| C. 관세수입 | 2,157 | 2,353 | 2,697 | 2,951 | 0.9 |
| 총 GDP (A+B+C) | 214,573 | 250,339 | 308,933 | 346,974 | 100.0 |

자료원: Saudi Arabian Monetary Authority (SAMA), Annual Report.

주: 통계는 2007.12 월 현재 입수 가능한 최신 통계임

나. 석유산업

1) 개요

-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의 석유부존 및 수출국으로 확인된 석유 매장량은 2,615 억 배럴로서 전세계 매장량의 25.2%에 해당되며, 가채 년수는 83년에 달한다. 미확인 매장량 또한 2,000 억 배럴로 추정되는 바, 이를 합산하는 경우 가채 년수는 100년으로 추정된다.
- 석유부문이 사우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에는 경상 GDP의 80%, 정부 세입의 85% 수준을 점하였으며, 05년에는 GDP의 40%, 정부 세입액의 7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 2006.12월 기준 원유 생산능력은 일일 1,100만 배럴이며, 실제 생산량은 일일 950만 배럴이다. 사우디의 파이프라인은 총 길이 15,000Km로 90여 개가 가동 중이며 주로 원유 생산 지대와 경제시설 및 수출 터미널을 연결하고 있다.

2) 산유 약사

- 세계석유 수급사정을 감안하여 탄력적인 산유정책을 추진해 온 사우디는 1978년 말 및 79년 초 이란의 석유수출 중단과 1980년 9월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야기된 세계적인 석유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유량을 꾸준히 증가시켜 1980년에는 일일 990만 배럴, 1981년 상반기 중에는 일일 1,010만 배럴의 기록적인 수준에 달하기도 하였다.
- 그러나 1982년 말부터 시작된 국제 원유 공급과잉 이후 OPEC 단일 유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폭적인 감산 정책을 유지하여 1985년에는 일일 320만 배럴까지 산유량을 줄인 바 있다.
- 1985년을 고비로 세계원유 수요가 점차 늘게 됨에 따라 사우디의 산유량은 90년 8월 걸프 사태 발발 직전 일일 540만 배럴까지 증대되었으며, 걸프전 이후 산유량을 계속 증대, 97년에는 일일 830만 배럴을 생산하였다.
- 이후 2002년 일일 850만 배럴을 유지하다, 최근 중국, 인도 등의 급격한 산업 발전으로 원유 수요가 급증하여 2005년 들어 일일 95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다.
- 2006. 12월 기준 사우디의 원유 생산 능력은 1,100만 배럴, OPEC 쿼터는 일일 878만 배럴이다.

3) 유전 개발

- 사우디는 석유 생산 능력을 증대하여 지속적으로 세계 석유 공급을 주도할 수 있도록 유전 개발을 추진 중이다. 사우디 Aramco 사는 120만 배럴/일을 증산할 수 있는 Khurais 유전(리야드 동쪽 위치, 2009년 완공 예정)을 본격적으로 개발(30억 달러 규모), 추진 중인 공사는 시추 및 파이프 라인 설치 등 5개의 패키지로 나누어 발주 예정이며, Haradh 유전의 생산량을 30만 배럴/일에서 60만 배럴/일로 증대하는 Project를 수행 중에 있다.

- 사우디 Aramco 사는 원유 및 가스 증산을 위한 탐사와 개발, 원유 저장 및 파이프 라인 설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2007년까지 90 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2024년까지 석유 및 가스부문에 1,300 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4) 정유 산업

- 사우디는 정제 시설 확충을 통해 원유보다 부가 가치가 높은 석유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 사우디의 정제 능력은 1980년 64 만 5 천 배럴/일이었으나 1980년대에 정제시설을 확장하여 1990년에는 1 일 175 만 배럴 규모의 정제 시설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에는 완만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우디에는 총 8 개의 정제 시설이 있으며 총 182 만 배럴/일의 정제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 사우디는 미국(1998년), 우리나라(1991년), 필리핀(1994년), 일본(2004년), 중국(2005년)의 정유사업에 진출하여 일일 165 만 배럴의 해외 정유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인도 와도 합작을 추진하고 있다.

원유생산 및 경제능력 현황 및 전망

(만 배럴/일)

| 구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원유생산 | 950 | 1,050 | 1,100 | 1,150 | 1,200 | 1,250 |
| 경제능력 | 182 | 182 | 182 | 210 | 210 | 250 |

자료원: 사우디 석유광물부

주: EIU, BMI 통계와는 다소 차이발생

석유제품 생산실적 (2005년 기준)

(국내정유시설, 백만 배럴/연)

| LPG | 가솔린 | 남사 | 등/젯유 | 디젤 | 연료유 | 아스팔트 | 기타 | 합계 |
|-------|-------|-------|-------|--------|--------|------|------|--------|
| 13.23 | 98.89 | 53.34 | 60.05 | 193.77 | 169.53 | 8.65 | 0.00 | 597.46 |

자료원: 사우디 석유광물부

주 : 통계는 2007.12 월 현재 입수 가능한 최신 통계임

5) 석유 비축시설 및 수출 터미널

- 사우디는 국내 5 곳에 94.5 만 배럴 규모로 원유 및 제품을 비축하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 걸프만과 홍해에 9 개의 석유 수출용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걸프만의 Ras Tanura, Ras Al-Ju'aymah 와 홍해의 Yanbu 등 3 대 터미널을 통해 사우디 전체 수출물량의 2/3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 3 대 수출 터미널의 처리 능력은 1,400 만배럴/일로 사우디의 원유생산량을 능가한다.
 - 3 대 수출 터미널외에도 걸프만에는 Jubail 터미널, Jizan 석유제품터미널, Zuluf 해상 터미널이 있으며, 홍해에는 Jeddah 터미널, Rabigh 터미널, 중립지대에는 Ras Al-Khajif 터미널이 있다.

사우디 정제시설 현황(2005년 기준)

| 단독지분 | 국내시설 | | 해외합작투자 | 합계 |
|----------------|-----------------|-------------------------------|--------------------|---------------|
| | 합작투자 | 소계 | | |
| Ras Tanura 325 | | | Motiva(50%) 840 | |
| Rabigh 423 | SASREF | 1,816천B/D (세계 9위, 2.2%) | S-Oil(35%) 525 | 3,461천 B/D |
| Yanbu 190 | (Shell50%) 305 | | Petron(40%) 180 | |
| Riyadh 120 | SAMREF | | Motor oil(42%) 100 | |
| Jeddah 60 | (Exxon 50%) 365 | | | |
| Khajif 35 | | | | |
| 소계: 1,146천B/D | 소계: 670천B/D | | 소계: 1,654천B/D | |

자료원: 사우디 석유광물부

주: 통계는 2007.12 월 현재 입수 가능한 최신 통계임

다. 가스 산업

1) 개요

- 사우디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235 조 ft³로서 세계 총 매장량의 4%(러시아, 이란, 카타르에 이어 세계 4위)에 이르고 있으며, 세계 1위의 LPG 수출국이다.
 - 주요 가스전으로 육상의 Ghawar 유전과 해상의 Safaniya 유전, Zuluf 유전이 있다.
 - 대부분의 건성가스(non-associated gas)는 Ghawar 유전 하층부의 Khuff 구조에 존재하며, Dorr 가스전은 쿠웨이트와의 중립지대 Khafji 유전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 사우디의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을 활용한 석유화학공업은 장래의 석유자원 고갈시대를 대비한 탈석유 및 산업국내화 정책의 일환으로 사우디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이다.
 - 1976년 설립된 사우디 기간산업공사(Saudi Basic Industries Corporation : SABIC)가 이러한 석유화학공업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SABIC 은 매년 수십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 그간의 막대한 투자로 석유화학제품의 세계적인 생산국이 된 사우디로서는 이미 공급 과잉 상태에 있는 국제 석유화학 제품 시장에서의 판로개척이 커다란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동 제품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WTO 가입을 추진 중이다.
- 사우디의 천연가스 수요는 연평균 5%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2009년에는 15 조 cf/일을 생산할 계획이다.

천연가스 수급현황 및 전망

(단위: 조cf)

| 구분 | 1990 | 1995 | 1999 | 2000 | 2001 | 2002 | 2009 |
|----|------|------|------|------|------|------|------|
| 생산 | 3.2 | 4.2 | 4.5 | 4.8 | 5.2 | 5.5 | 15 |
| 소비 | 3.2 | 4.2 | 4.5 | 4.8 | 5.2 | 5.5 | N/A |

자료원: 사우디석유광물부

2) 가스생산 및 처리시설 확충

- 2002년 10월 가동을 시작한 4,300만 입방미터/일 규모의 Hawiyah 가스 처리 시설은 Jauf 가스전의 저황유가스 및 Khuff 가스전의 고황유 가스를 공급받고 있으며, 400만 입방 미터/일 규모의 Haradh 가스 처리 시설이 2003년 중반 완공되었다.
- 1980년대 중반 19.5억 입방피트/일 규모의 Khuff 가스 생산 시설을 설비한 바 있는 사우디는 Haradh, Hawiyah 가스전에서 나오는 NGL에서 에탄올과 LPG를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 당초 사우디 정부는 Saudi Gas Initiative(SGI)라는 가스 생산 프로젝트를 통해 외국인 투자와 천연가스 개발을 유도하였으나 2003년 중반에 무산된 바 있는데, SGI 프로그램 일환으로 계획되었던 많은 가스개발 대상부지를 당시 협상하였던 외국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전력산업

- 전력 보급률은 92%로서 모든 발전설비는 화력설비로 구성되어 있다.
- 연평균 7.7%의 전력소비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매년 150만 ~ 200만 kW 증가 예상되며, 발전용량을 2000년 26,233MW에서 2020까지 69,000MW로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2014년까지 매년 20억불을 투자하여 총 900억불을 투자할 계획이다.
- 사우디 전력산업 주요 지표(2000년): 발전시설용량 26,233MW(가용능력 22,109MW), 첨두 부하 21,966MW, 발전량 1,245억 Kwh, 판매량 1,135억 Kwh(산업용 274억 Kwh), 수용가 362.6만 가구, 가구당 평균전력소비 31,294Kwh/연

유형 및 기간별 발전능력 확충(MW)

| 유형/기간 | 2000 ~ 05 | 2006 ~ 10 | 2011 ~ 15 | 2016 ~ 23 | 합계 |
|----------------|-----------|-----------|-----------|-----------|--------|
| Steam | 1,600 | 3,400 | 2,000 | 3,000 | 10,000 |
| Combined Cycle | 4,714 | 5,176 | 3,904 | 10,300 | 24,094 |
| Gas Turbine | 2,859 | 2,451 | 4,782 | 6,268 | 16,396 |
| 합계 | 9,209 | 11,027 | 10,686 | 19,568 | 50,490 |

송전선 확장

| 유형(KV) | 1999년 | 2000 ~ 05 | 2006 ~ 10 | 2011 ~ 15 | 2016 ~ 23 | 합계 |
|-----------|--------|-----------|-----------|-----------|-----------|--------|
| 380 | 3,367 | 4,200 | 770 | 1,120 | 702 | 10,159 |
| 400DC | 0 | 0 | 480 | 0 | 0 | 480 |
| 230 | 2,042 | 230 | 31 | 0 | 0 | 2,303 |
| 110 ~ 132 | 12,107 | 7,812 | 3,739 | 4,537 | 8,524 | 36,755 |

- 사우디 내 발전, 변전, 송전 프로젝트 이외에 GCC 국가간 전력망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총 \$60억 규모)를 추진 중이며, 1단계로 쿠웨이트 - 주재국 - 바레인 - 카타르 간 총 802Km를 연결하는 공사(\$12.5억 규모)의 입찰을 진행 중이다.

마. 건설 플랜트

- 건설부문은 GDP 의 4.5% 수준을 차지하고, 약 15%의 노동력을 고용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2005 년 발주액은 250 억불이며, 2006 년도 발주금액은 2 배 이상 증가한 554 억 불에 달했다.
- 석유화학공장, 발전 및 담수, 시멘트공장 등 각종 플랜트 건설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담수, 석유화학 플랜트 등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발주 증가가 예상된다.
 - 사우디는 담수 생산공장 건설, 하수정화 처리시설 등 수자원 부문에 2024 년까지 \$463 억을 투자할 계획임.
 - 담수 및 전력을 민간중심으로 생산하고 운영하는 독립 수전력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 계획
 - 수전력 회사(담수청과 사우디 전력회사 합작회사) 주관으로 사우디 정부에서 40%의 재원을 부담하고, 60%의 재원은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독립 수전력 프로젝트를 수행 중
 - 쥬베일 및 얀부지역을 중심으로 석유화학공장 건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2020 년까지 SABIC 과 민간 석유화학회사를 중심으로 \$1,400 억을 투자할 계획
 - SABIC은 2010년까지 \$80억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며, 사우디 아람코사도 2010년까지 석유화학분야에 \$200억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 Tasnee사, Sahara사, NPPC사 등 민간 석유화학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석유화학공장 건설을 추진 중

바. IT, 통신 및 교통

1) 개요

- 최근 수년간 정부의 육성정책 및 수요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사우디는 중동 지역 최대의 IT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 IT 제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분야로 연간 10 억불 규모이며, 매년 2 ~ 3% 증가하는 추세이다
 - 폭증하는 인구증가율을(연 3.4% 증가) 감안할 때 향후 컴퓨터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한 관련제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 IT 어플리케이션, IT 비즈니스 및 인트라넷 서비스, 모바일 및 무선통신 기기 및 네트워크 시스템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사우디의 철도노선은 담맘과 리야드를 연결하는 전장 1,000Km 의 2 개 노선이며, 2,800 Km 의 새로운 철도 신설을 추진 중이다.

2) IT 및 통신

- 사우디 IT 시장은 2005 년 기준으로 년 23 억불 규모로 2006 년도에는 12%가 증가한 25 억 6 천만 불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며, 2010 년까지 매년 두 자리 수 성장이 전망된다.

- 젊은 층 인구 증가와 함께 휴대폰, 인터넷 수요가 성장 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우디 인구 중 15 세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비율은 증가 추세이다.
- 이는 휴대전화 및 인터넷 수요를 확대시켜 IT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5년 11 백만 명이던 휴대전화 가입자는 2010년에 사우디 전체인구의 약 75%인 2천만 명을 초과할 전망이다

사우디 IT 시장 규모 및 전망

| 구 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유선전화(천대) | 3,800 | 3,950 | 4,075 | 4,200 | 4,300 | 4,450 |
| 유선전화비율(대/백명) | 15.4 | 15.6 | 15.7 | 15.8 | 15.7 | 15.9 |
| 휴대전화가입자 (천명) | 11,200 | 13,500 | 14,950 | 16,900 | 18,950 | 20,636 |
| 휴대전화가입자비율 (명/백명) | 45.4 | 53.4 | 57.6 | 63.5 | 69.4 | 73.7 |
| 인터넷사용자 (천명) | 1,950 | 2,600 | 3,100 | 3,700 | 4,300 | 4,750 |
| 인터넷사용자비율(명/백명) | 7.9 | 10.3 | 11.9 | 13.9 | 15.7 | 17.0 |
| 광대역통신망가입자 (천명) | 64.5 | 123.7 | 205.9 | 300.0 | 450.0 | 575.0 |
| 광대역통신망가입자 (명/백명) | 0.3 | 0.5 | 0.8 | 1.1 | 1.6 | 2.1 |
| 퍼스널컴퓨터보유비율 (대/천명) | 167 | 178 | 189 | 199 | 209 | 218 |
| 패키지소프트웨어판매액(백만US\$) | 448.3 | 497.3 | 546.1 | 598.4 | 653.0 | 712.6 |
| IT하드웨어 소비(백만US\$) | 1,107.2 | 1,251.1 | 1,382.8 | 1,539.0 | 1,704.9 | 1,888.8 |
| IT서비스 소비(백만US\$) | 728.1 | 811.8 | 906.7 | 1,007.6 | 1,120.0 | 1,244.9 |
| 총 IT 소비(백만US\$) | 2,283.5 | 2,560.2 | 2,835.6 | 3,145.0 | 3,477.9 | 3,846.1 |
| 증가율(%) | | 12.1 | 10.8 | 10.9 | 10.6 | 10.6 |

자료원: Pyramid Research, IDC,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주: 2006년 추정치, 2007년 이후는 전망치

□ 유선전화

- 휴대전화의 폭발적 수요증가가 유선전화 시장을 대체하고 있어 유선전화 시장은 소폭 확대될 것이나, 인구에 비례한 가입비율은 정체 내지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05년 말 사우디 가구당 유선전화 보급률은 약 85%로 국제통신연맹ITU가 조사한 GCC 평균 이하 수준이다.
 - 주요 도시를 제외할 경우 유선전화 보급률은 보다 낮음.
- 2004년 ITU 통계에 기초하여 평가하면 2005년 사우디 유선전화 가입비율은 전체 인구의 15.4% 수준으로 평가된다.
- 2005년도 휴대전화시장을 개방한 이후 2007년 12월 현재 제2 유선전화사업자 선정을 진행 중에 있다.
- 국영통신 기업인 STC(Saudi Telecommunication Co.)는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의 경쟁 확대에 따라 전화요금은 12.5~25%정도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 전화요금인하는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동통신: 휴대 전화

- 2005년도 11백만명 수준이던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2010년도에 2천만명을 초과하여 4명 중 3명이 휴대전화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05년도에 이동통신 시장을 개방, 국가통신회사인 STC 이외 "Ettihad Ettisalat 사(두바이 Ettisalat 사 주도 컨소시움)가 2005년 5월부터 "Mobily"라는 브랜드로 이동통신 서비스 및 제3세대(3G) 기술 공급 중이며, 2007년 5월 쿠웨이트 이동통신사 컨소시움이 제3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되어 2008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으로 있어 향후 이동통신분야는 3파전으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질 전망이다.

□ 인터넷

- 2005년도 195만명 수준인 인터넷 사용자는 2010년도에 475만명 수준으로 전체인구의 약 17%가 인터넷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ITU에 의하면, 사우디 인구의 약 34%가 PC를 보유하고 있으며, STC 자회사로서 ISP인 Saudinet에 의하면, 사우디 가구의 34%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 ITU에 의하면, 인터넷 사용자의 약 70%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의 선불카드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전자상거래: e-Commerce

- 사우디는 전문 IT 기술인력 부족으로 전자상거래 발전속도가 매우 느린 편이다.
- 사우디 정부는 ISP와 인터넷관련기업 직원의 최소한 15%는 사우디인으로 고용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전자상거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사우디 내 인터넷 결제시스템의 부재로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3) 철도 건설

- 사우디 철도는 담맘과 리야드를 연결하는 전장 1,000Km의 2개 노선이 있으며, 향후 4개의 철도노선 신설을 추진 중에 있다.
 - 사우디 철도청(SRO)은 기존 철도노선에 총 2,800Km의 3개 노선을 추진
 - 3개 노선은 ① 젯다→리야드→담맘 노선 ② 담맘→쥬베일 노선 ③ 메카→메디나→얀부 노선 예정
 - 사우디 광물청은 리야드 - 인산염 광산지역(Al-Jalamid) 노선 산업철도 건설을 추진 중
- 동서 횡단 철도 프로젝트인 랜드브리지(Landbridge) 프로젝트는 리야드-제다(950km), 담맘-쥬베일(115km) 구간 철도건설 프로젝트로 2007년 6월 현재 4개 컨소시엄이 응찰한 상태이며, 사우디 철도청(SRO)이 철도부지 확보지연에 따라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 메카-메디나 고속철도(MMR) 프로젝트는 메카-제다-메디나 간 고속철도(450km) 건설프로젝트로 2007년 3월 7개 컨소시엄이 응찰하여 입찰이 진행중이다.

- 남북 주요광산을 연결하는 광산업 철도건설 프로젝트(총 연장 1,766km)는 2007년 4월에 3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차(6.1 억 달러, 576km)는 빈라덴 그룹, 2차(5.2 억 달러, 440km)는 중국 컨소시엄, 3차(7.7 억 달러, 750km)는 호주기업 컨소시엄이 수주하였고, 공사기간은 42개월이다.
- 리야드경전철 건설프로젝트는 수도 리야드 시내 2개 라인 총 연장 51km 경전철 건설 프로젝트로서 프랑스 설계회사가 예비 설계를 완료한 상태에 있다.

사. 제조업

- 사우디의 제조업은 정부가 직접 투자하여 운영하는 중화학공업 부문과 민간부문이 주로 운영하는 소규모 공업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이중 중화학 부문은 주로 석유화학 계열, 시멘트, 철강, 비료 등 소수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육성되고 있다.
- 정부는 제3차 개발계획 기간 중 민간부문의 제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국내 산업 보호 및 진흥법” (National Industries Protection and Encouragement Law)을 제정하였음. 동 법에는 ① 산업설비 및 원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면제, ② 경쟁수입품에 대한 고율의 보호 관세부과, ③ 합작기업의 경우 외국 합작선의 이익에 대한 잠정적인 소득세감면, ④ 공장부지 및 정부물품 조달상의 특혜 등 수입대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많은 지원정책이 규정되어있으며, 그 밖에도 사우디 공업개발기금(SIDF)이 프로젝트 건설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50%까지를 15년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등 금융 면에서의 지원도 있다.
- 1983년 3월 정부는 국내 민간기업을 육성하고, 외화를 절약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 발주공사를 수주하는 모든 외국기업은 수주액의 최소한 30% 이상을 사우디 국내 업체에게 하청을 주어야 한다는 이른바 "30% Rule" (Cabinet Decree No. 124, March 14, 1983)을 발표하였다.
- 1984년 8월에는 이에 대한 시행규칙(Regulations for Application of Cabinet Decree No. 124)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동 「룰」은 일반건설계약(General Construction Contracts) 및 유지보수계약(Contracts of Repair and Maintenance) 등 모든 공공 사업(Public Works)에 적용되며, 하청의 대상이 되는 사우디 국내업체는 사우디 국민이 100% 소유한 사우디 법인으로 한정되고 있다. (즉 외국인과 사우디인의 합작기업은 사우디인의 지분 소유비율에 불문하고 사우디 국내업체에서 제외됨)
- 외국기업은 사우디 국내업체에 대한 30% 하청계획을 입찰 참가 시부터 제출해야 하며, 동 하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선수금 또는 첫 회분 기성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며, 만약 외국기업이 사우디 국내업체에 대한 하청배분을 공사후반부에 가서 수행코자 할 경우에는 동 하청계약이 실행될 때까지 공사지급대전의 50%를 유보하도록 되어 있다.
- 1997년 말 국내산업보호 및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장 수는 총 1,896개로서 총 자본금은 172.8 억불이며, 총 고용 근로자수는 15만 명임. 또한 외국 자본 투자법(Foreign Capital Investment Law 1979)에 따라 설립된 공장 수는 총 338개로서 총 자본금은 230.4 억불이며 총 고용 근로자수는 46,000명이다.

- 사우디에는 2005년 기준 3,657개의 공장(투자규모는 680 억불)이 분포해 있으며, 석유 화학 및 플라스틱 생산시설 위주로 쥬베일과 앤부 지역에 밀집해 있다.

아. 농업 및 축산업

- 사우디 정부는 1970년대 말부터 농업부문 개발을 주요 개발목표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농업용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관개시설 등의 확충과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과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농업의 증산 및 다양화에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인 2000~2005년 중 농업분야에 총 54억 불을 투자, 괄목 할 만한 성장을 시현하였다.
- 이러한 지원에 의해 제7차 경제개발계획기간 중 농업분야 연평균 성장률은 2%를 기록했으며, 총 GDP 기여율이 불변가격 기준으로 5.5%, 약 1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 농업생산은 178만 톤, 대추야자 73만 톤, 과일 119만 톤, 채소 192만 톤, 기타 곡물 217만 톤 등임.
 - 사우디는 1992년 410만 톤의 밀을 생산, 세계 6위 밀 수출국이 된 바 있으나, 이후 정부보조금 및 수매량이 대폭 줄어듦에 따라 1996년 밀 생산량은 100만 톤으로 국내 소비량 130만 톤에 조금 못 미침.
 - 보리 생산은 1994년 200만 톤에서 1996년 48만 톤으로 감소되어 국내소비량 100만 톤에 훨씬 부족하여 부족분을 외국에서 수입함.
- 사우디는 수자원안보, 식량안보 문제의 균형을 유지해 나가면서 지속가능하고 다양한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발전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 농업관련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향후 20억불을 투자할 예정으로 수자원 공급 용 4,500Km 파이프라인 설치, 하수처리를 위한 22,000Km 파이프라인 설치 등의 프로젝트를 5년 내 수행
- 사우디는 2005년 기준 전국 24개 담수 공장에서 일일 5.72억 갤론의 담수를 생산, 세계 총 담수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며, 식수의 70%를 충당하고 있으나, 농업용수로는 지하수만이 사용 가능하다.
- 한편 농업분야 종사자는 2004년 기준 582,000명으로 연평균 3.4%씩 증가하고 있으며, 자국민화율은 48%이다.
- 축산 부문 관련, 사우디 가금(닭고기) 소비량은 전세계에서 10번째로 소비량의 25%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 331,000마리(1999년 대비 18.2% 증가), 닭 4억 5,400마리(1999년 대비 32.2% 증가), 양 95만 마리(1999년 대비 1.4% 감소), 낙타(1999년 대비 1.3% 증가)를 사육하고 있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GCC 단일시장 현황

1) 개요

- GCC 단일시장은 2001년12월 제22차 정상회의에서 로드맵이 완성되었는데, 2007년 12월 3~4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걸프협력회의(GCC) 제28차 최고이사회(GCC Supreme Council: 정상회의)에서 GCC 6개국 정상들은 2008년 1월 1일부터 단일시장 출범, 2010년 통화단일화(경제통합)의 당초 일정을 재확인하였다.

2) 단일시장 주요내용

- GCC 단일시장은 1983년 역내 FTA 시행에서 출발하는데, 최초에는 거주·이전·민간부문 근로·자본의 이동·고용 등 5개 경제활동분야에서 비차별적 대우(내국민 대우)원칙에 합의함으로써 비록 경제협약에는 '단일시장'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단일시장의 시초가 되었다.
- 이후 GCC는 2001년 정상회담(최고 이사회)에서 2007년 말 시장단일화(Common Market) 완성, 2010년 통화단일화(Monetary Union) 출범을 목표로 설정한 경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장단일화에 대한 로드맵이 확정됐으며, 단일시장의 영역도 모든 경제 활동 분야로 확대되었다. 2001년 경제협약 제2장 제3조에 명시된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다.
 - 거주와 이전
 - 개인 및 정부부문에서의 근로
 - 연금 및 사회복지
 - 모든 전문직종에서의 고용
 - 모든 경제·투자·서비스활동분야에서의 고용
 - 부동산 소유
 - 자본의 이동
 - 주식 소유 및 회사의 설립
 - 교육, 보건 및 사회 서비스

다. GCC의 FTA 추진현황

1) 개요

- 제2차 이라크 전쟁(2003년) 이후 고유가 상황이 고착화되면서 각국은 에너지자원 확보와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중동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여 GCC와의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GCC 국가들은 제2차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경제통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장기적인 경제성장 기반의 구축과 석유 의존적인 산업구조의 개선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 GCC 국가들이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EU, 중국, 인도 등과의 FTA를 통한 연계 강화로 중동지역에서의 미국의 지배적 지위를 상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또한, FTA 체결을 통해 국제질서에 적극 참여한다는 가시적인 효과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정국가 체제 유지에 따른 인권문제나 민주화 문제 등의 대외적인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국별 FTA 추진동향

- 고유가 현상이 구조화되고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은 자원 확보, 중동 지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강화 등을 위해 GCC국가들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 중에 있다.
- FTA 추진에 있어서 GCC 국가들보다는 상대 국가들이 보다 적극적이다.

GCC의 국(블록)별 FTA 추진현황

(2007.12. 현재)

| 국(블록)별 | 추진 동향 |
|--------------------------|---|
|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바논은 GCC와의 FTA협상을 마무리하여 2006년 7월부터 FTA 협정 발효. - 시리아는 2006년 들어 최종문안에 대한 합의 완료. - 요르단은 2007년 현재 GCC와 협상중임 |
|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GCC 전체 대신 개별 회원국과의 FTA 추진중임 - 바레인('04.9월) 및 오만 ('05.10월)과는 협상을 완료 - UAE와는 2005년 3월 협상을 개시 - 쿠웨이트는 2004년 2월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Trade and Investment Frame work Agreement)에 따라 FTA 개시를 위한 조건을 협의 중 |
| E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9년 GCC와 협력협정(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한 후 1990년 부터 FTA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약 10년간 진전이 없다가 1999년 GCC가 EU와의 협상을 위해 2005년부터 관세동맹 시행을 결의함에 따라 EU 이사회의 GCC관세동맹 설립조건부 협상추진 승인(2001.7.16)에 따라 2002년 3월부터 협상을 재개하여 2004년 상품분야 협상을 타결하였고, 2007년 최종 타결이 예상됨 |
| 중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유의 안정적 확보와 중동 내 미국 영향력 강화를 경계하는 차원에서 2004년 FTA 전 단계로 경제협약에 관한 포괄협정을 체결하고 FTA협상을 적극 추진 중 - 2004. 7월 GCC와 FTA 조기추진에 합의한 후 2005.4월 협상개시, 2007년 타결을 목표로 협상 중 |
| 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9월 GCC와의 협상을 개시, 2008년까지 최종안 마련 예정 |
| 인도, 파키스탄, MERCOSU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파키스탄, MERCOSUR와는 경제협력에 대한 포괄협정을 체결하고, FTA 협상을 개시할 계획임 - 인도는 GCC와 무역.투자.산업개발.에너지 등 전 방위 상호협력 추진 |
| 터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도에 경제협력에 대한 포괄협정을 체결하고,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2007년 말까지 FTA 협약체결을 목표 |
| 호주, 싱가폴, 뉴질랜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말까지 FTA 협력협정에 서명, 2007년부터 본격적 협상을 진행 중 |
| 한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3월 대통령 국빈방문시 FTA협상 추진을 천명한 이후 2007년 11월 협상개시 일정을 협의하였고, 2008년 3-4월 최초 협상 개시가 전망 |

자료원: GCC 사무국 및 기타 언론발표뉴스 종합 정리

3) GCC의 FTA 추진 상의 주요특징

- 대외협상 시 공동 대응 기본 원칙: GCC 회원국들은 2001년 GCC 정상 회담 (최고 이사회)에서 대외경제관련 협정에 있어서는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의 경제협약에 합의하였다.
 - 구체적으로 역외 국가와의 FTA 협상에 있어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GCC 단위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GCC 단위의 공동협상을 통해 협상력 자체를 높이고 각 회원국의 대외경제정책을 GCC 단위에서 통일시키고자 한 것으로서 이것은 2003년부터 발효되고 있는 관세동맹, 그리고 역내 무관세 원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 FTA 체결관련 회원국간 갈등 노정
 - FTA 협상 시 GCC 공동대응이 기본원칙이나 바레인이 GCC 합의사항을 어기고 2004년 9월에, 오만이 2005년 10월에 미국과의 FTA를 개별적으로 체결하였고, UAE와 쿠웨이트가 미국과 개별협상을 추진하고 UAE-호주, 쿠웨이트-싱가포르 등이 개별 단위로 FTA 협상을 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 미국은 9.11테러 이후 경제적인 목적보다는 중동지역의 정치경제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중동국가 개별적으로 FTA를 추진 중인데, 이러한 미국의 목적과 GCC 국가 중 가장 규모가 작고, 미국에 우호적이며, 산업다각화가 필요한 바레인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바레인과 가장 먼저 FTA를 체결한 것으로 분석된다.
- 2005년 GCC는 통합무역정책(Unified GCC Trade Policy)에 대해 합의한 이후 2006년 부터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GCC단위의 공동 대응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 회원국들의 미국과의 개별 FTA 추진과 관련 갈등이 지속되자 2005년 12월 GCC 금융장관회의 및 최고이사회에서 2005년 6월 미국과의 FTA까지만 개별 협상을 인정하고, 이후의 FTA부터는 공동 협상을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정상 회담(최고 이사회)에서 통합무역정책(Unified GCC Trade Policy)으로 채택, 최종 결정되었다.
 - 통합무역정책의 이행을 위해 GCC는 각국 상공, 재무장관으로 구성된 통합무역정책 위원회를 설립하여 GCC 통합 대외경제정책 수립, 수출입 정책의 통합, 덤핑에 대한 국내상품 보호정책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호주(UAE), 싱가포르(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UAE), 뉴질랜드 등이 개별 국가 단위로 협상을 하지 않고 GCC와 2006년 말까지 FTA 협력협정에 서명, 2007년 부터 본격적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 FTA협상 전 포괄적 협정을 우선 체결하고 있다.
 - GCC는 중국, EU 등과의 FTA에서처럼 양자관계에 관한 포괄적 협정(Cooperation Agreement, Framework Agreement 등)을 먼저 체결하고 상품, 서비스 분야 FTA는 포괄 협정의 틀에 따라 보다 간략한 절차에 따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포괄 협정에는 에너지협력 등 경제협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EU, 중국, 인도와의 Cooperation Agreement에 에너지 협력에 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었다.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주: 사우디의 수출입통계는 2007.12월 현재 입수 가능한 2006년도 수출입 통계임

가. 교역 총괄

- 2006년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은 2110억 24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6.9%가 증가 하였고, 수입은 697억 700만 달러로 17.2%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총 교역은 2807억 31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7.0%가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는 1413억 17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흑자 폭은 16.7%가 증가하였다.
- 사우디의 수출 및 수입 모두 크게 증가한 것은 2003년부터 지속된 고유가의 영향에 따라 석유 수출에 따른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풍부하게 유입된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한 수입 수요 확대에 따라 수입도 증가하였다.

연도별 사우디 대외 교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

| 구 분 | 2004년 | | 2005년 | | 2006년 | |
|-----|---------|---------|-------|---------|-------|--|
| | 금 액 | 금 액 | 증감율 | 금액 | 증감율 | |
| 총교역 | 170,743 | 240,035 | 40.6 | 280,731 | 17.0 | |
| 수 출 | 125,998 | 180,572 | 43.3 | 211,024 | 16.9 | |
| 수 입 | 44,745 | 59,463 | 32.9 | 69,707 | 17.2 | |
| 수 지 | 81,253 | 121,109 | 49.1 | 141,317 | 16.7 | |

자료원: Ministry of Economy & Planning, Saudi Arabia

나. 수출동향

- 2006년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총 수출은 2110억 달러로 전년대비 16.9%가 증가하였다. 사우디의 수출은 석유수출이 대부분으로서 2001년 감소 후 유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2002년부터 회복세를 보였으며, 2004년도에는 1천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2006년도에는 최초로 2000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연도별 사우디 수출현황

(단위: 백만불, %)

| 구 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
| 수출액 | 72,464 | 93,244 | 125,998 | 180,572 | 211,024 |
| 증감율 | 6.6 | 28.7 | 35.1 | 43.3 | 16.9 |

자료원: Ministry of Economy & Planning, Saudi Arabia

- 국가별로는 일본이 전년도에 이어 제1수출대상국(15.9%)의 위치를 고수하였고, 대한국 수출은 12.2%가 증가한 172억 달러로 제3위 수출국의 위치를 고수하였다.
- 대중국 수출은 21.9%의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10대 국가 수출 총액은 전체의 60%인 1264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0.6%가 증가 하였다.

국가별 수출동향

(단위: 백만불, %)

| 국별 | 2005년 | | 2006년 | | |
|----------|---------|--|---------|-------|-------|
| | 수출액 | | 수출액 | 증감율 | 비중 |
| 1 일본 | 28,155 | | 33,624 | 19.4 | 15.9 |
| 2 미국 | 27,932 | | 30,079 | 7.7 | 14.3 |
| 3 한국 | 15,298 | | 17,165 | 12.2 | 8.1 |
| 4 중국 | 10,805 | | 13,175 | 21.9 | 6.2 |
| 5 싱가포르 | 9,463 | | 8,448 | -10.7 | 4.0 |
| 6 네덜란드 | 6,482 | | 6,275 | -3.2 | 3.0 |
| 7 이탈리아 | 5,372 | | 4,835 | -10.0 | 2.3 |
| 8 바레인 | 4,970 | | 4,534 | -8.8 | 2.1 |
| 9 프랑스 | 4,242 | | 4,426 | 4.3 | 2.1 |
| 10 태국 | 3,676 | | 3,873 | 5.4 | 1.8 |
| 10대국가 소계 | 125,705 | | 126,434 | 0.6 | 59.9 |
| 기타 국가 | 54,867 | | 84,590 | 54.2 | 40.1 |
| 수출 총액 | 180,572 | | 211,024 | 16.9 | 100.0 |

자료원: Ministry of Economy & Planning, Saudi Arabia

- 품목별로는 광물성연료(원유 등) 수출이 16.5% 증가한 1884억 달러로 전체수출의 89.3%를 차지하였고, 수송기계 및 부품(56.4%), 금속제품(37.3%)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품목별 수출동향

(단위: 백만 달러, %)

| 구 분 | 2004년 | | 2005년 | | 2006년 | |
|-----------|---------|--|---------|--|---------|------|
| | 수출액 | | 수출액 | | 증감율% | 비중% |
| 수출 총액 | 125,998 | | 180,572 | | 211,024 | 16.9 |
| 광물성연료 | 110,861 | | 161,706 | | 188,403 | 16.5 |
| 석유화학제품 | 5,060 | | 6,525 | | 7,121 | 9.1 |
| 플라스틱, 고무 | 3,371 | | 4,810 | | 5,280 | 9.8 |
| 수송기계 및 부품 | 1,339 | | 1,645 | | 2,572 | 56.4 |
| 금속제품 | 1,385 | | 1,539 | | 2,113 | 37.3 |
| 수출 총액 | 125,998 | | 180,572 | | 211,024 | 16.9 |
| 광물성연료 | 110,861 | | 161,706 | | 188,403 | 16.5 |

자료원 : Ministry of Economy & Planning, Saudi Arabia

다. 수입동향

- 2005년도 사우디 아라비아의 총 수입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69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고유가에 따른 풍부한 오일머니의 유입에 따라 풍부해진 유동성과 함께 수입 수요가 크게 확대되면서 수입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연도별 사우디 수입현황

(단위: 백만불, %)

| 구 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
| 수입액 | 32,290 | 36,916 | 44,745 | 59,463 | 69,707 |
| 증감율 | 3.6 | 14.3 | 21.2 | 32.9 | 17.2 |

자료원 : Ministry of Economy & Planning, Saudi Arabia

- 국가별로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이 각각 50억불 이상을 수출하여 사우디 수입시장의 39.3%를 차지하였다. 대중국 수입은 60억 달러로 인도(43.3%) 다음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35.5%)하여 2005년도 4위에서 2위로 부상하였으며, 대한국 수입은 21.7% 늘어난 2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프랑스에 밀려 제8대 수입국(2004년 6대, 2005년 7대 수입국)을 차지하였다.

국가별 수입동향

(단위: 백만불, %)

| 국별 | 2005년 | 2006년 | | |
|----------|--------|--------|------|-------|
| | 수입액 | 수입액 | 증감율 | 비중 |
| 1 미국 | 8,787 | 10,081 | 14.7 | 14.5 |
| 2 중국 | 4,406 | 5,971 | 35.5 | 8.6 |
| 3 독일 | 4,863 | 5,659 | 16.4 | 8.1 |
| 4 일본 | 5,358 | 5,639 | 5.2 | 8.1 |
| 5 이탈리아 | 2,258 | 2,813 | 24.6 | 4.0 |
| 6 영국 | 2,785 | 2,751 | -1.2 | 3.9 |
| 7 프랑스 | 2,050 | 2,689 | 31.1 | 3.9 |
| 8 한국 | 2,170 | 2,640 | 21.7 | 3.8 |
| 9 인도 | 1,836 | 2,630 | 43.3 | 3.8 |
| 10 호주 | 1,672 | 2,062 | 23.3 | 3.0 |
| 10대국가 소계 | 36,185 | 42,935 | 18.7 | 61.6 |
| 기타 국가 | 23,278 | 26,772 | 15.0 | 38.4 |
| 수입 총액 | 59,463 | 69,707 | 17.2 | 100.0 |

자료원 : Ministry of Economy & Planning, Saudi Arabia

- 품목별로는 기계장비, 수송기계 및 식품 수입이 주도하여 전체의 60%를 차지 하였다.
- 전 품목별로 높은 수입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프로젝트 영향에 따라 금속철강 (62.5%), 기계류(24.2%)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백만불, %)

| 구 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
|--------|--------|--------|--------|------|
| | 수입액 | 수입액 | 수입액 | 증감율% |
| 수입 총액 | 44,745 | 59,409 | 69,707 | 17.3 |
| 기계류 | 9,908 | 14,445 | 17,947 | 24.2 |
| 수송기계 | 9,575 | 12,454 | 13,454 | 8.0 |
| 금속, 철강 | 4,453 | 6,339 | 10,300 | 62.5 |
| 식품농산물 | 4,204 | 5,584 | 6,307 | 12.9 |
| 화학제품 | 4,078 | 4,855 | 5,591 | 15.1 |
| 섬유및제품 | 2,155 | 2,577 | 2,742 | 6.4 |

자료원: Ministry of Economy & Planning, Saudi Arabia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교역 총괄

- 2007년 상반기중 한국의 對 사우디 수출은 19.5 억 달러(50.9%증가), 수입은 96.8 억 달러 (0.8% 감소)로 무역수지는 77.3 억 달러 적자 기록하였다.
- 수출은 고유가 및 원화강세 등 불리한 대외 무역환경에도 불구하고 1980년 이후 금액 및 증가율 면에서 사상 최대 기록
- 수입은 고유가 지속으로 2006년까지 급증하였으나, 2007년 상반기중 전년수준 유지
- 수출의 대폭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원유수입액으로 무역수지는 77 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적자 폭은 줄어들어 전년대비 9.6%가 개선됨

한-사우디 교역동향

(단위 : 백만불, %)

| 구 분 | 2005년 | | 2006년 | | 2007년 1-6 월 | |
|-----|---------|-------|---------|-------|-------------|------|
| | 금 액 | 증감율 | 금 액 | 증감율 | 금액 | 증감율 |
| 총교역 | 18,199 | 34.7 | 23,530 | 29.3 | 11,630 | 5.2 |
| 수 출 | 2,093 | 22.5 | 2,978 | 42.3 | 1,951 | 50.9 |
| 수 입 | 16,106 | 36.5 | 20,552 | 27.6 | 9,679 | -0.8 |
| 수 지 | -14,013 | -38.8 | -18,454 | -24.1 | -7,728 | 9.6 |

자료원 : KITA 한국무역통계

나. 수출 동향

- 2003년 이후 연속 두 자리 수 증가세로 2002년까지의 부진에서 완전 탈피, 매년 최고 증가세를 경신하면서 급속히 신장
- 원화강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오일 머니 유입으로 인한 경기 활성화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에 따라 철강, 플랜트 기자재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확대
- 2005년까지 UAE, 이란에 이어 중동 내 3위 수출대상국이었으나, 2006년에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하였고, 2007년 상반기중에는 중동 최대 수출시장으로 자리를 굳힘

연도별 수출 및 증가율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 구 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1-6 |
|-----|-------|-------|-------|-------|-------|----------|
| 수출액 | 1,259 | 1,409 | 1,708 | 2,093 | 2,978 | 1,951 |
| 증감율 | -1.2 | 11.9 | 21.2 | 22.5 | 42.3 | 50.9 |

자료원: KITA 한국무역통계

- 철강, 기계 등 플랜트 기자재 수출이 급증하고, 가전, 화물차 등의 수출은 급감하면서 주력수출 상품도 철강, 기계류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 전선, 기타산업기계, 화학기계 등과 철강재 용기 등 철강제품의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대 사우디 수출을 견인
- 2006년까지 수출을 주도하였던 승용차 수출은 10% 증가에 그쳤고, 화물자동차 수출이 급감함에 따라 수송기계 수출은 전체적으로 13.4% 감소하였다.
- 원화 환율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및 중국 등 경쟁국 진출 강화에 따라 냉장고, 칼라 TV 등 가전제품과 휴대폰 등의 수출은 크게 부진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백만불, %)

| 구 분 | 2006년 | 2007년 1~6월 | 비 고 |
|--------|-------|------------|--------|
| | 금액 | 금액 | |
| 수출총계 | 2978 | 1951 | 50.9 |
| 수송기계 | 940 | 433 | -13.4 |
| 철강제품 | 647 | 430 | 118.8 |
| 산업기계 | 233 | 253 | 387.1 |
| 기초산업기계 | 134 | 150 | 366.2 |
| 가정용전자 | 160 | 89 | -7.4 |
| 직물 | 151 | 80 | 0.7 |
| 중전기기 | 63 | 68 | 230.4 |
| 전선 | 14 | 60 | 2565.3 |
| 석유화학제품 | 101 | 57 | 17.3 |
| 섬유제품 | 101 | 56 | 5.8 |

자료원 : KITA 한국무역통계, MTI 2 단위

다. 수입동향

- 대 사우디 수입은 2003년 ~ 2006년 기간중 20~30%대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7년 상반기 수입은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 원유수입이 대부분(85%차지)인 수입구조의 특성상 수입은 유가의 등락에 따라 좌우, 2006년도에 원유의 수입이 크게 증가(32.2%)함으로서 수입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2007년 상반기중 원유수입가격은 전년 수준으로 유지함에 따라 수입액 또한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

연도별 수입현황

(단위: 백만 달러, %)

| 구 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1~6 |
|-----|-------|-------|--------|--------|--------|----------|
| 수입액 | 7,551 | 9,268 | 11,800 | 16,106 | 20,552 | 9,679 |
| 증감율 | -6.3 | 22.7 | 27.3 | 36.5 | 27.6 | -0.8 |

자료원: KITA 한국무역통계

- 고유가 영향의 지속으로 2003~2006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던 원유수입은 2007년 상반기중 3.3%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수입의 84.2%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2007년 상반기중 수입품목별 비중은 원유 84.2%, 석유제품 7.2%, LPC 4.1% 비중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백만불, %)

| 구분 | 2006년 | 2007.1-6 | | 비 고 |
|--------|--------|----------|-------|---|
| | 금액 | 금액 | 증감률 | |
| 수입 총계 | 20,552 | 9,679 | -0.8 | |
| 광물성연료 | 19,743 | 9,246 | -1.2 | 원유 8,151(-3.3%), 나프타 698(12.7%), LPG 397(28.3%), 중유 0.7(208.3%) |
| 석유화학제품 | 678 | 344 | 4.1 | 석유화학합성원료 177(-1.4%), 기타석유화학제품 69 (0.7%), 석유화학 중간원료 55(8.8%), 기초유분 41(35.6%) |
| 비료 | 13 | 32 | 151.1 | 질소비료 32(151.1%) |
| 비철금속제품 | 49 | 31 | 9.8 |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18(-7.5%), 동괴 및 스크랩 13 48.2%) |
| 농산물 | 19 | 7 | -33.1 | 주류 6.8(-33.1%) |
| 철강제품 | 5 | 6 | 8.6 | 합금철 3(-), 고철 2.5(1,016.2%) |
| 수산물 | 10 | 6 | 40.2 | 새우 5.2(37.4%) |

자료원: KITA 한국무역통계, MTI 2 단위

라. 2007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 2006년 수출이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2007년 상반기중 수출도 사상최고의 증가율(50.9%)를 기록한 데는 고유가로 인한 사우디 수입수요가 크게 확대된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원화강세와 고 유가에 따른 원가부담 등의 불리한 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2007 상반기 수출증가율은 80년대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여 2007년간 사상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풍부한 오일 머니 유입과 함께 프로젝트 발주 확대 등에 따른 사우디 수입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이 수출증가의 직접적 원인으로 분석
 - 특히, 원화 환율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철강제품 등 주력품목의 수출이 지속 확대되고 있어 품질개선 및 원가절감 등을 통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對 사우디 수출은 2005년까지 UAE, 이란에 이어 중동 내 3위였으나, 2006년에 UAE, 이란을 제치고 중동 내 1위로 부상한 이후, 2007년 상반기에도 1위 자리를 확고히 지킴으로써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중동 최대의 수출시장으로 굳히게 되었다.
 - 이는 사우디의 WTO 가입과 함께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라 UAE 등으로부터의 간접 수입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직수입 추세가 확대된 것도 반영된 결과.
- 무역수지 적자는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극심한 무역역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 사우디와의 교역에서 우리나라 2005년도에 140억불 적자, 2006년 185억불로 최대의 적자규모를 기록하였으나, 2007년 상반기 중 적자는 9.6%개선된 77억불을 기록
 - 그러나 적자규모는 수출액 대비 4배(2006년 6배에 비해 개선)에 달하고 있어 무역역조현상은 극심한 상황
- 수입의 95.5%가 에너지로서 교역구조는 건전하다고 할 수 있다.
 - 교역구조의 불균형의 주된 원인이 원유, 나프타, LPG 등 에너지 수입(전체수입의 95.5% 비중)에 기인한 것이며, 수출은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주력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역 구조적 측면에서는 건전한 구조라 할 수 있음.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 금지 품목

- 종교적, 안전과 관련된 일부 상품은 수입이 금지되는데, 알코올, 비의료용 약, 이슬람 종교 관련 물품, 이슬람 정신에 반하는 물품(돼지고기) 등 7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이 금지된다.

수입금지품목

| No. | HS Code | 적요 |
|-----|-------------------|---|
| 1. | 01.03 | |
| 2. | 02 09 00 10 | |
| 3. | 02 06 30 00 | |
| 4. | 02 06 41 00 | |
| 5. | 02 06 49 00 | |
| 6. | 02.03 | |
| 7. | 05 02 10 00 | |
| 8. | 02 10 11 00 | |
| 9. | 02 10 12 00 | |
| 10. | 02 10 19 00 | |
| 11. | 15 01 00 30 | |
| 12. | 16 02 41 00 | |
| 13. | 16 02 42 00 | 산 돼지 및 돼지고기, 돼지비계, 털, 피, 내장, 족발과 돼지고기로 만든 모든 상품 |
| 14. | 16 02 49 00 | |
| 15. | 41 03 30 00 | |
| 16. | 15 03 00 11 | |
| 17. | 15 03 00 21 | |
| 18. | 15 03 00 91 | |
| 19. | 16 01 00 31 | |
| 20. | 16 01 00 21 | |
| 21. | 16 01 00 11 관계 품목 | |
| 22. | 41 03 31 00 | |
| 23. | 41 06 31 00 | |
| 24. | 41 06 32 00 | |
| 25. | 41 13 20 00 | |
| 26. | 01 06 19 40 | 사냥견, 경호견, 맹인 안내견을 제외한 개, 단, 사냥견, 경호견 또는 맹인 안내견의 경우에도 수출 국가의 공인 기관 인증서가 첨부되고 수의학적으로 보증되어 사우디 대사관에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수입 가능 |
| 27. | 02 08 20 00 | 개구리 고기 |
| 28. | 09 08 10 00 | 마약 |
| 29. | 09 08 20 00 | |
| 30. | 12 07 91 00 | |
| 31. | 12 07 99 10 | |
| 32. | 12 07 99 20 | |
| 33. | 12 11 30 00 | |
| 34. | 12 11 40 00 | |
| 35. | 12 11 90 20 | |
| 36. | 12 11 90 60 | |
| 37. | 13 02 11 00 | |
| 38. | 13 02 19 10 | |
| 39. | 29 39 91 10 관계품목 | |
| 40. | 31.01 | 동물 또는 식물 천연유기비료 |

| No. | HS Code | 적요 |
|-----|--|--|
| 41. | 12 11 90 90 | 고로 냇 |
| 42. | 12 11 90 90 | 구장(蒟醬)(후춧과), 그 잎 |
| 43. | 22.03 | |
| 44. | 22.04 | |
| 45. | 22.05 | 모든 종류의 알코올 음료 |
| 46. | 22.06 | |
| 47. | 22 07 20 90 | |
| 48. | 22.08, (예외 22 08 90 11 and 22 08 90 19) | |
| 49. | 24 03 99 20 | 담배 찌꺼기 |
| 50. | 25 24 00 00 | 석면 및 석면제품 |
| 51. | ex 29.31 | 사린 유독가스 |
| 52. | 30 06 80 00 | 산업폐기물 및 위험 폐기물 |
| 53. | 36 04 10 00 | 스냅, 로켓, 황자터, 야간 별 등과 같은 어린이가 사용 하는 불꽃놀이 용품 |
| 54. | 40.12, except 40 12 90 00 | 중고 및 재생타이어 |
| 55. | 49 01 99 10 | 코란 |
| 56. | 49 07 00 11 | 사우디아라비아 우표 |
| 57. | 49 09 00 20 | 전자회로에 의한 인사카드 |
| 58. | 49 11 10 90 | Hadi(특히 동률) 쿠폰 |
| 59. | 49 11 10 90 | 외국회사의 빈 청구서 |
| 60. | 85 12 30 00 | 보안 자동차 레이더 탐지장비 |
| 61. | 85 28 12 99 | 위성 인터넷 수신기 |
| 62. | 85 29 10 00 | 위성 인터넷 수신기 |
| 63. | 85 31 80 90 | 경찰차 사이렌 또는 동물 소리를 감소시키는 장비 |
| 64. | ex 87.01 | |
| 65. | ex 87.02 | |
| 66. | ex 87.03 | 손상된 차량, 우측핸들 차량 |
| 67. | ex 87.04 | |
| 68. | ex 87.05 | |
| 69. | ex 87.09 | |
| 70. | ex 87.11 | 2,3,4 바퀴 어린이용 모터사이클 또는 차량 |
| 71. | 90 13 10 00 | 전자회로를 사용하는 쌍안경과 목표물에 붉은 광선을 직접 비추는 프로젝트 |
| 72. | 93 02 00 00 | |
| 73. | 93 04 00 90 | 연발 권총과 휴대폰, 라이터, 페이저, 펜 모양의 권총 또는 기타 권총 |
| 74. | 93 07 00 90 | |
| 75. | 95 03 80 00 | 원격조정 비행기 및 부품 |
| 76. | 95 03 90 00 | 소음발생 권총 및 총, 진짜와 유사한 장난감 권총 |
| 77. | 97 05 00 00 | 박제 동물 |
| 78. | 기타 | 동물의 피로 제조한 모든 식품 |
| 79. | 기타 | Zamzam 명세를 가진 음료 |
| 80. | 기타 | 모든 종류의 도박 또는 게임용 기계, 장비 및 기기 |
| 81. | 기타 | 쿠웨이트 및 이라크 전쟁 잔여 장비 및 기기 |
| 82. | 기타 | 모든 종류의 담배 관련 인쇄물 |
| 83. | 기타 | 방사능이나 핵 먼지에 오염된 상품 |

나. 수입 허가 품목

- 일부 품목의 경우 종교적 또는 안전 등의 이유로 수입을 허용하되, 관련부처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다.

수입허가품목

| No. | HS Code | 적 요 | 담당부처 |
|-----|--|---|--|
| 1. | 01 01 10 10 | 아라비아 순수혈통 말 | 승마 클럽 |
| 2. | 01 01 10 20 | 아라비아 순수혈통 말 | 승마 클럽 |
| 3. | 01 01 90 10 | 아라비아 순수혈통 말 | 승마 클럽 |
| 4. | 01 01 90 20 | 아라비아 순수혈통 말 | 승마 클럽 |
| 5. | 06 02 20 10 | 대추야자수 및 종자 | 농업부 |
| 6. | 23 09 90 50 | 동물사료용 조제품 | 농업부 |
| 7. | 28-29류 | 화학제품 | * 폭발 물질: 내무부 공공 안전국 * 기타 화학 물질: 상공부, 보건부 또는 고고학 및 박물관 관리국 |
| 8. | ex 30.03 | 수의약품 | 농업부 |
| 9. | ex 30.04 | 수의약품 | 농업부 |
| 10. | 25 01 00 30 | 나트륨염화물 | 내무부 무기폭발물 국 |
| 11. | 27.12, (제외2712 10 00) | 파라핀유, 바세린유 | 내무부 무기폭발물 국 |
| 12. | 31 02 30 00 | 폭발하기 쉬운 화약, 추진파우더, 폭발성 휴즈, 뇌관, 전자점화물질, 테레빈유, 송진, 셀룰로스 질산염, 알루미늄 파우더 및 포, 마그네슘 파우더 및 포 | 내무부 무기폭발물 국 |
| 13. | 31 02 50 00 | | 내무부 무기폭발물 국 |
| 14. | 36 01 00 00 | | 내무부 무기폭발물 국 |
| 15. | 36 02 00 00 | | 내무부 무기폭발물 국 |
| 16. | 36 03 00 10 | | 내무부 무기폭발물 국 |
| 17. | 36 03 00 90 | | 내무부 무기폭발물 국 |
| 18. | 25 01 00 30 | | 내무부 무기폭발물 국 |
| 19. | 35 03 00 10 | | 내무부 무기폭발물 국 |
| 20. | 38 05 10 00 | | 내무부 무기폭발물 국 |
| 21. | 39 06 10 00 | | 내무부 무기폭발물 국 |
| 22. | 39 12 20 00 | | 내무부 무기폭발물 국 |
| 23. | 76 03 20 00 | | 내무부 무기폭발물 국 |
| 24. | 81 04 30 00 | | 내무부 무기폭발물 국 |
| 25. | 31.02 | 화학 비료 | 농업부 |
| 26. | 31.03 | 화학 비료 | 농업부 |
| 27. | 31.04 | 화학 비료 | 농업부 |
| 28. | 31.05, (제외31 02 30 00 및 31 02 50 00) | 화학 비료 | 농업부 |
| 29. | 36 04 10 00 | 불꽃제품 | 내무부 무기폭발물 국 |
| 30. | 36 04 90 00 | | 내무부 무기폭발물 국 |
| 31. | 38 08 30 00 | 제초제, 발육 억제제, 식물성장 조절제 | 농업부 |
| 32. | ex 58 07 10 00 | 군복, 군사용 뱃지 등 | 관련 국방부처 |
| 33. | ex 58 07 90 00 | | 관련 국방부처 |
| 34. | ex 61 01 | | 관련 국방부처 |
| 35. | ex 61 03 | | 관련 국방부처 |
| 36. | ex 62 01 | | 관련 국방부처 |
| 37. | ex 62 03 | | 관련 국방부처 |
| 38. | 65 05 90 94 | 뾰족한 모자 | 관련 국방부처 |
| 39. | 65 06 10 30 | 군사용 헬멧 | 관련 국방부처 |
| 40. | ex 73 26 90 99 | 군사용 기타 철강제품 | 관련 국방부처 |
| 41. | ex 90 05 10 00 | 야간투시용 쌍안경 | 관련 국방부처 |
| 42. | 83 01 40 20 | 보안감시장비 | 내무부 공공안전국 |
| 43. | 85 25 40 00 | 보안용 카메라, CCTV시스템, 침입방지 경보시스템 | 내무부 공공안전국 |
| 44. | 85 43 89 20 | 민간항공용 금속탐지기 | 내무부 공공안전국 |
| 45. | 85 31 10 00 | 마그네틱 카드 또는 지문 인식기 | 내무부 공공안전국 |
| 46. | 90 22 19 90 | 보안 출입문 및 장비, 금속 | 내무부 공공안전국 |
| 47. | 90 22 19 10 | 소지품스크린장비, 출입통제 장비 | 내무부 공공안전국 |
| 48. | 84 19 40 00 | 종류 장비 | 상공부 |

| No. | HS Code | 적 요 | 담당부처 |
|-----|--|------------------------------|--|
| 49. | 84 59 61 00 | 열쇠 제작, 복사 및 수리기계 및 관련 기기 | 내무부 공공안전국 |
| 50. | 84 59 69 00 | 열쇠 제작, 복사 및 수리기계 및 관련 기기 | 내무부 공공안전국 |
| 51. | 84 72 30 00 | 우편계기 | 우편관리국 |
| 52. | 85 25 20 11 | 군사목적 수송장비 | - 개인 및 기업에 의해 수입된 무선 세트: 정보통신기술 위원회 - 기타: 관련 정부부처 |
| 53. | 85 25 20 19 | CITC로부터 주파수 할당이 요구되는 수송장비 | 정보통신기술위원회 |
| 54. | 85 25 20 30 | CITC로부터 주파수 할당이 요구되는 수송장비 | 정보통신기술위원회 |
| 55. | 85 25 20 40 | CITC로부터 주파수 할당이 요구되는 수송장비 | 정보통신기술위원회 |
| 56. | 85 25 20 50 | CITC로부터 주파수 할당이 요구되는 수송장비 | 정보통신기술위원회 |
| 57. | 85 25 20 60 | CITC로부터 주파수 할당이 요구되는 수송장비 | 정보통신기술위원회 |
| 58. | 85 25 20 90 | CITC로부터 주파수 할당이 요구되는 비디오 증폭기 | 정보통신기술위원회 |
| 59. | 85.26 관련제품 | CITC로부터 주파수 할당이 요구되는 수송장비 | 정보통신기술위원회 |
| 60. | 85 42 10 00 | 휴대폰침 및 선불 휴대 전화 카드 | 정보통신기술위원회 |
| 61. | ex 87.03 | 장갑차 | 내무부 |
| 62. | 89 02 00 00 | 낚시배 | 내무부 국경수비대 |
| 63. | 93류 | 무기 및 탄약 | 내무부, 무기폭발물국 |
| 64. | 기타 | CITES에 의한 야생동물 및 관련상품 | 국가 야생동물보호육성 위원회 |
| 65. | 기타 | 문화 및 고고학적 상품 | 고고학 및 박물관 관리국 |
| 66. | 기타 | 화폐그림, 지폐 모델 등이 그려져 있는 상품 | 중앙은행(통화국) |
| 67. | 기타 | 박람회 전시용 물품 | 상공부 |
| 68. | 84 24 81 10 84 24 81 20 84 24 81 30 84 24 81 90 | 관개장비 | 농업부 |
| 69. | 82.01 | 농업용 트랙터 | 농업부 |
| 70. | 84 13 19 84 13 19 90 84 13 80 84 38 11 00 84 38 20 00 | 워터 펌프 | 농업부 |
| 71. | 84 32 10 00 84 32 21 00 84 32 29 00 | 경작기 | 농업부 |
| 72. | 84 32 30 00 84 32 40 00 84 32 80 00 | 파종기 | 농업부 |
| 73. | 84 33 11 00 84 33 20 00 84 33 30 00 84 33 40 00 84 33 51 00 84 33 52 00 84 33 59 00 84 33 60 00 | 수확기 | 농업부 |

다. 비관세장벽

- 비관세 장벽으로는 관세부과 가격산정, 관세환급, 선적 전 검사제도 등이 있다.
- 관세는 송장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나, 사우디는 국내가격이나 국내제조업자가 상의한 가격 등을 근거로 하여 최저 수입가격을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 세관원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 관세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사우디에 수입된 물품이 제3국으로 수출되기 위해 반출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관세가 환급되어야 하나, 환급되지 않거나 지연되고 있으며, 절차가 복잡하다.
- 수입제품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공산품의 경우 사우디 표준청(SASO)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인증제도 참조)

라. 수입쿼터

- 수입품목에 대해 관세를 적용하고 일부 품목의 경우 수입 시 허가를 받거나 수입을 금지하는 경우는 있으나, 물량으로 규제하는 경우는 없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 사우디아라비아는 관세 이외에 관세부과 가격산정, 관세환급, 선적 전 검사제도 등의 비관세 장벽이 있으나, 수입쿼터, 반덤핑 등의 비관세 장벽은 없으며,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수입규제 사항은 없다.
- 다만, 조류독감 등이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으로부터의 가금류 수입금지 등의 조치가 한시적으로 취해지며, 한국에서 발생할 경우에도 수입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5. 관세제도

가. 관세율 제도

-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세는 사우디 통치기본법(Basic Law of Governance) 제20조에 의거 내각에서 세율을 결정하고 왕령에 의거 확정되는데, 관세 적용 품목의 분류는 HS 2002 기준에 따라 분류 하고 있다.
- 관세는 기본적으로 종가세 제도로 통상 관세율은 0%, 5%, 12%, 20%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별한 품목의 경우 100%를 적용하고 있다.
- 식품과 기초 필수품(의약품 대부분 포함)과 개발프로젝트를 위한 기자재 수입은 무관세이며, 일반상품의 경우에는 5%, 자국산업 보호를 위하여 자국에서 생산되어 성장이 예상되는 품목은 12%, 국내 제조 상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유치산업 보호품목은 20%의 관세를 적용한다.
 - 20% 적용품목: 시멘트, 계란, 윤활유, 철망, 카페트, 훈스, 철관, 비누 및 황산 등

- 사우디가 WTO 가입(2005.12.11)과 관련하여 합의한 상품부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무역장벽을 점진적으로 완화, 외국상품의 시장접근 확대를 수용
 -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를 통합하여 10년간 이행기간 종료 후 평균 최고 관세는 농산품 12.4%, 비농산품 10.5%로 인하
 - 농산품 개별관세는 5% – 200%(담배, 대추야자)까지 허용
 - 비농산품 중 11%는 무관세 수입하고 반면, 철강제품 및 목재는 가장 높은 관세율을 적용
 - 대부분 품목 (92.6%)에 대한 최종 관세율은 가입일에 확정됨
 - 가입 당시 5-15%인 199개 품목의 관세율은 2008년까지 0%로 인하(무관세화)
 - 나머지는 2008년 또는 2010년에 최종 관세율 확정

나. 관세율 알아보는 법

- 사우디 관세율은 관세청(Customs Department)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v.sa>)를 통해 검색할 수 있는데, 관세율은 Item No., HS Code, Description, Unit 또는 Duty Rate로 검색이 가능하다.
- 검색방법
 - 홈페이지 접속 : <http://www.customs.gov.sa>
 - English Version 선택
 - Tariff Search 선택
 - HS Code 또는 제품명, 관세율 등을 기준으로 검색이 가능

6. 주요인증제도

가. 상품인증제도 개요

- 사우디아라비아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정책을 추구하고 있어 수입품에 대해 물량이나 가격으로 규제하지는 않으며,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하여 관세로서 수입품을 규제하고 있다. 국민의 기초생활 필수품인 설탕, 쌀, 차, 커피원료, 보리, 옥수수, 가축 및 육류 등에 대해서는 무관세이나, 국내산업의 보호가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05년12월11일 사우디아라비아가 WTO에 공식 가입함에 따라 관세부과 대상 품목도 크게 줄어들게 되었는데, 10년간 이행기간 종료 후 농산품에 대해서는 12.4%, 비 농산품은 10.5%로 인하하고, 비 농산품 중 11%는 무관세로 수입하며, 가입 당시 5-15%인 199개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2008년도에 0%로 무관세화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이슬람 종주국으로서 이슬람 율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사우디는 돼지 및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가공식품, 사냥개·경찰견·안내견을 제외한 개, 개구리 고기, 마약, 알코올 음료, 산업폐기물, 중고타이어, 레이저 전파탐지기, 위성인터넷수신기, 게임 기계, 동물 피로 만든 식품 등 이슬람 율법에서 섭취를 금지하는 식품류나 이슬람 윤리를 저해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수입을 금하고 있다.
-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국가의 안전보호, 공공도덕 유지, 환경 보호 및 비정상적인 거래 방지를 위하여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최소한 요구되는 일정한 품질 표준을 수립하고 국내 및 외국상품 여부에 관계없이 동 표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 수입상품을 포함하여 사우디 내에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자체적인 표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인증을 받도록 함에 따라 수출국 입장에서는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이는 수입상품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상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수입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라기 보다는 사우디아라비아 자체의 필요에 의한 특별한 제도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 사우디 내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표준은 국가 표준 기구인 사우디 표준청(Saudi Arabia Standards Organization: SASO)에서 수립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WTO 가입과 함께 무역에 관한 WTO기술장벽 협약(TBT: Technical Barriers on Trade)사항을 준수하여 기술적인 표준을 정비하였다.

나. 상품 인증 제도 종류

- 상품에 대한 인증은 상품의 종류별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사우디내 유통되는 상품 중에서 식품의 경우에는 보다 까다로운 편이다. 모든 식품은 사우디 표준청(SASO)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라벨링이 요구되며, 식품에 대한 자세한 성분, 유효기간 등이 포함된 제조업자의 성분증명서와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소비자보호 증명서 등을 사우디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 모든 종류의 육류(가금류, 해산물 포함), 육류가공식품, 가축, 채소류, 과일, 사람의 혈액 등에 대해서 위생 증명서가 요구되며, 전염병이나 질병으로부터 안전함을 증명 되어야 한다.
- 육류상품에 대해서는 공인된 장소에서 이슬람 율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축되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와 도축일자, 가축의 종류, 평균 나이 등이 기재되고 도축 12시간 이내 공인 수의사가 검사하여 인체 무해함이 입증된 위생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 종자(열매)의 경우 수출입자의 이름과 주소, 포장방법, 성분 등과 곤충, 전염병과 기타 질병에 안전함을 증명하는 검사증명서와 식물위생 증명서, 종자분석증명서, 중량 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야채 및 과일의 경우에도 위생증명서가 필요하다. 가축의 경우에는 위생 증명서 및 혈통 증명서, 검사 증명서 등이 요구되며, 애완용 동물의 경우에는 위생 증명서와 백신증명서가 필요하다.
- 이밖에 의약품 및 의료 기자재, 군사용 장비 또는 상품의 경우에도 별도로 정한 표준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 공산품 등 소비재상품의 경우에는 사우디 표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인증서(Conformity of Certificate)가 필요하다.
- 사우디 표준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제도의 운영은 수입상품의 경우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MoCI)에서, 국내상품의 경우 자치부(Ministry of Municipalities),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와 상공부(MoCI)에서 관광하고 있다.

다. 對 사우디 수출 인증(강제적합성 인증) 제도 개요

- 사우디아라비아 상공부는 수입상품을 비롯하여 국내 유통되는 모든 소비재 상품에 대하여 사우디 규격과 표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반입 전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수입상품의 사우디 표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 검사 및 인증과 관련된

제도(mechanism)가 수출품 인증제도(강제적합성 인증제도)(Conformity Certificate for the Goods Exported to the Kingdom of Saudi Arabia)이다.

- 종전까지는 수출인증제도를 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ICCP) 라 칭 하였는데, ICCP는 1995년 11월 사우디 표준청(SASO: Saudi Arabian Standards Organization)과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MOC)에서 도입하여 최초 76개 품목 카데고리에 대해 적용하였고, 1998년 8월에는 적용 품목을 단순화하여 식품(별도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완구, 오락장비를 추가하여 총 66개 카데고리로 정비하였으며, 다시 2001년 8월에는 자동차부품, 가스조리기구, 휴대폰 등을 추가하면서 총 68개 품목 카데고리로 ICCP를 운영하여 왔다.
- 그러나, 2004년 8월에 상공부 시행령 제6386조에 따라 적용 품목을 모든 소비재 상품으로 확대하면서 국제 인증 제도(ICCP)를 폐지하고, 대신 새로운 인증제도(Conformity Certificate)를 도입하였으며, 주무 부서의 경우에도 사우디 표준청 (SASO)에서 상공부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MoCI)로 상위 이관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다.
- 사우디의 수입품목에 대한 수입검사제도인 국제인증제도(ICCP)는 외국 수출업체들에게 비용과 절차 면에서 부담을 주고, 국가간 교역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제13차 한-사우디 공동위원회(2004.6.29~30, 젯다)에서 교역장벽 완화를 위한 제안 의제로 상정하여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 사우디측은 동 인증 제도가 수입 규제 측면보다는 국민의 건강이나 국가의 안전보호 등과 관련되고 전 국가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제도로서 수입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라. 수출 인증 제도 운영 목적

- 수출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보건유지, 소비자의 안전보호, 국가안전보호, 종교 및 공중도덕의 유지, 환경보호 및 비정상적인 의도의 상거래 방지를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에 적합한 상품만이 사우디에 반입되도록 하게 위함이다.
- 일반적으로 국가별로 고유의 표준을 정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자국 표준에 적합한 상품만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수입상품에 대한 인증제도는 사우디의 국가적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WTO에서도 합의한 사항이다.

마. 인증대상 품목(Regulated Products)

- 인증대상품목(종전 ICCP에 따라 국제인증을 받아야 되는 품목)은 2004년 8월까지는 68개 카데고리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2004년 8월 시행령 개정 이후 현재는 모든 소비재 상품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 소비재 상품의 경우에도 샘플 또는 데모용, 사우디 내 비매품인 경우와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의 부품, 임시수입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증서가 면제된다.
-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코자 하는 모든 소비재 상품은 선적 전 인증을 받아야만 현지에서 통관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다만, FOB 가격으로 \$3,000미만의 경우에는 선적 전 인증을 받거나 사우디에 도착하여 인증을 받아도 되게 되어 있다.

- 그러나, 의료장비(Medical equipment), 의약품(Medical products), 식품(Food), 군사용 상품(military related products)은 동 강제적합성인증제도에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기준에 따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바. 인증 취득방법 및 절차

- 인증 대상인 소비재 상품(Regulated Products)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Conformity of Certificate: CoC)를 취득하는 방법은 종전까지 상품의 성질에 따라 3가지(Route 1, 2, 3)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으나, ICCP 폐지 이후에는 한국정부가 인정하는 시험검사소에서 발행한 적합성 인증서만 첨부되면 수출이 가능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 이와 관련, 한국정부는 사우디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07년5월 산업기술연구원 등 10개 시험 기관을 지정하여 사우디에 통보하였으며, 2007년 6월부터는 한국정부가 지정한 10개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만 허용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 그러나, 제도변경 등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종전 규정에 의한 인증서가 세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착을 위해서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 공인 시험기관 (Approved Laboratories)

- 對 사우디 수출품 적합성 인증을 위한 검사기관으로 2007년 5월 한국정부(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는 산업기술시험원 등 10개 기관을 지정하여 사우디 정부에 통보 하였다. 따라서, 2007년 6월부터는 이들 10개 지정기관에서만 유효한 강제적합성인증서를 발급 할 수 있다.

한국정부지정 10 개 시험기관 리스트

| Agency | Tel. Number Fax. Number | Contact Point | E-Mail Web site |
|--|----------------------------------|-------------------|---|
| Korea Testing Laboratory | 82-2-860-1475 82-2-860-1610 | Kim, Donggi | dgkim@ktl.re.kr klee@ktl.re.kr www.ktl.re.kr |
| Korea Electric Testing Institute(KETI) | 82-31-428-7562 82-31-455-7150 | Youk, Dong In | youkdi@keeti.re.kr www.keeti.re.kr |
| EMC Research Institute(ERI) | 82-31-679-9591 82-31-336-2427 | Park, Hyo Sung | hspark@eri.re.kr www.eri.re.kr |
| Korea Testing & Research Institute | 82-2-2164-0151 82-2-2634-1007 | Park, Hyeong Geun | sungjae@ktr.or.kr poly1004@ktr.or.kr www.ktr.or.kr |
| Korea Environment & Merchandise Testing Institute | 82-2-2102-2510 82-2-856-5618 | Min Gwan Gi | ggmin@kemti.org mngnt@kemti.org www.kemti.org |
| Korea Machinery-Meter and Petrochemical Testing & Research Institute | 82-31-785-1283 82-31-785-1219 | choi, wan gyoo | wang@mpi.or.kr www.mpi.or.kr |
| KOREA APPAREL TESTING & RESEARCH INSTITUTE | 82-2-3668-3028 82-2-3668-2902 | Kim, Han Su | hskim7422@hanmir.com www.katri.re.kr |
| FITI TESTING & RESEARCH INSTITUTE | 82-2-3299-8061 82-2-3299-8159 | Jeon, Young Min | ymjeon@fiti.re.kr sjlee@fiti.re.kr www.fiti.re.kr |
|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Materials | 82-2-3415-8761 82-2-3415-8755 | Lee, Seung Hyeok | shlee@kicm.re.kr shlee6906@korea.com www.kicm.re.kr |
| Korea Toy Industry Cooperative | 82-2-795-9505 82-2-795-0401 | Kim, Moon Sik | kimmoonsik@yahoo.co.kr hyjkotoy@naver.com www.kotoy.or.kr |

자료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7. 지적재산권

- 사우디의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의 목적은 WTO 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 Agreement)의 규정에 적합하게 모든 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을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보호하는데 있다.
 - TRIPS 협정 1 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사우디는 자체 법규와 절차에 따라 TRIPS 협정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다.
- 사우디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은 (i)상표법 (Trademarks Law), (ii) 특허법 (The Law on Patents), (iii) 저작권법(Copyright Law)이 있으며,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담당 정부 부처는 다음과 같다.
 - 상표법 (Trademarks Law): 상공부
 - 특허법 (The Law on Patents): KACST (King Abdulaziz City for Science and Technology)
 - 저작권법 (Copyright Law): 문화정보부
- 특허법령
 - 1989.1.17. 특허법 제정 (KACST 에 특허이사회 설치)
 - 2004.7.17. 특허법 개정 (신특허법: Royal Decree No. M/27)
 - * 신특허법은 TRIPS 협정 규정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산업디자인, 집적회로 디자인, 식물변종에 관한 특허 사항이 포함
 - * 2004.12.26. 신특허법에 따른 특허법 시행령 제정 (Ministerial Decision No. 118828/M/10)
- 특허 유효기간은 구 특허법에서는 특허유효기간을 15 년으로 하고, 5 년간 연장이 가능토록 하였으나, 신특허법에서의 유효기간은 20 년이다.(제 19 조)

특허 수수료

(단위: SAR, Saudi Arabian Riyal, US\$1 = SAR 3.75)

| Fees | Patent | Industrial Designs | 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 New Plants Varieties |
|---|--------|--------------------|---------------------------------------|----------------------|
| Registration application | 800 | 300 | 1000 | 1000 |
| Change or transfer of ownership | 400 | 150 | 1000 | 1000 |
| Amendment or addition to the application | 200 | 100 | 500 | 200 |
| Obtaining a copy of the application or certificate | 100 | 100 | 100 | 100 |
| Registration of licence contracts | 800 | 300 | 1000 | 1000 |
| Grant of compulsory license | 8000 | 3000 | 5000 | 5000 |
| Grant and publication | 1000 | 350 | 1000 | 1000 |
| Annual fees | | | | |
| First year | 500 | 300 | 1000 | 1000 |
| Second year | 1000 | 300 | 1500 | 1000 |
| Third year | 1500 | 600 | 2000 | 1500 |
| Fourth year | 2000 | 600 | 2500 | 1500 |
| Fifth year | 2500 | 900 | 3000 | 2000 |
| Sixth year | 3000 | 900 | 3500 | 2000 |
| Seventh year | 3500 | 1200 | 4000 | 2500 |
| Eighth year | 4000 | 1200 | 4500 | 2500 |
| Ninth year | 4500 | 1500 | 5000 | 3000 |
| Tenth year | 5000 | 1500 | 5500 | 3000 |
| Eleventh year | 5500 | | | 3500 |
| Twelfth year | 6000 | | | 3500 |
| Thirteenth year | 6500 | | | 4000 |
| Fourteenth year | 7000 | | | 4000 |
| Fifteenth year | 7500 | | | 4500 |
| Sixteenth year | 8000 | | | 4500 |
| Seventeenth year | 8500 | | | 5000 |
| Eighteenth year | 9000 | | | 5000 |
| Nineteenth year | 9500 | | | 5500 |
| Twentieth year | 10000 | | | 5500 |
| Twenty-first year to twenty-fifth year (for protection of trees) 7000 | | | | |

(주) 수수료는 기업에 대한 수수료이며, 개인 신청 시에는 위 수수료의 50%

- 저작권(copyright): 수수료 없음
- 상표권
 - 신청금(Application Fee): SAR1,000
 - 등록비(Registration Fee): SAR 3,000
 - 등록갱신(Renewal of Registration Fee): SAR 3,000
 - 등록변경(Changes or Modifications to Registration): SAR 1,000
 - 등록갱신연체료(Late Fee for Delayed Renewal: within 6 months): SAR 1,000
- 특허법 위반에 관한 제재조치로서 특허법 위반의 경우 SAR 100,000(\$26,667) 이내에서 벌금을 부과하며, 재범일 경우에는 2 배 가중 부과한다.
- 특허제도 운영관련 정부 개선사항으로서 사우디는 신풍특허법 제정과 함께 특허출원 후 취득 시까지의 제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특허담당 시험관을 15 명에서 80 명으로 확대하고, 특허시험 조사, 영어교육 등 훈련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하며, 중복 조사에 따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 특허기관에서 발행된 시험검사 조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8. 통관/운송

가. 통관 개요

- 사우디는 통관 절차가 복잡하고 불투명하며, 요구하는 서식이 많아 통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에이전트를 통하여 수출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에이전트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 이슬람 율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디자인이 중시되는 소비재 물품의 통관이 까다롭고, 돼지고기 및 그 기름이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식품의 통관은 불가하다. 또한 통관에 관한 규정을 담당 세관원이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 견본이나 박람회에 전시되는 물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거나 통관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일어나기도 한다.

나. 수입 신고

- 상품이 도착하게 되면, 세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하역하게 되고, 수입상은 수입 신고 및 통관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 수입신고는 수입신고서(Bill of Entry)를 작성하여 B/L, 원산지증명서(C/O), 패킹 리스트, 상업송장 등을 첨부하여 세관 Documentation Department에 제출한다.
- 수입신고서에는 수입상품의 수량 및 종류, 상품명세, 가격, 중량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다. 물품 검사

- 물품검사는 샘플링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무작위로 샘플을 선정하여 수입금지품목 여부 등과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 수입신고서와 기재내용이 다르거나 품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수입통관을 거부하거나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라. 통관 절차 업무 흐름도

- 상품도착 → 세관창고 하역 → 통관서류 제출 → 컴퓨터등록
 - FCL의 경우: 상품검사 및 관세 부과를 위해서 상품을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옮긴 후 샘플링검사 → 관세부과 → 관세납부 → 통관완료
 - LCL의 경우: 상품검사 → 관세부과 → 관세납부 → 통관완료
- 상품이 도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하역되면, 수입상(혹은 통관업자)은 BILL OF ENTRY에 수입상품의 수량 및 종류, 상품명세, 가격, 중량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후 B/L, C/O, P/LIST, COMMERCIAL INVOICE 등과 함께 세관 DOCUMENTATION DEPARTMENT에 제출한다.
- BILL OF ENTRY 및 CLEARANCE ORDER에 서명하고 수입상은 관세를 납부함으로써 통관이 완료된다.
- 관세가 납부된 상품은 통관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세관 정문에서 필요한 경우 세관장의 지시 하에 재검사를 요구 받을 수도 있다.

- 소요 기간은 근무일 기준 약 5일이 소요되며, 세관 업무시간은 08:00-14:30 이고 목, 금요일은 휴무이다.

마. 세관 제출서류

- 원산지증명서 3부
- INVOICE(상공회의소 인증 필요)
- BILL OF LADING
- 위생검사서
- 보험증명서
- 수입검사 인증서
- 유전자 변형 식품 시 GE마크 필히 부착

바. 통관 시 유의 사항

- 주류, 돈육 및 그 성분의 함유제품은 통관 불가 품목이므로 식품, 의약품을 수출할 경우 동 성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사전에 철저 확인하여야 한다.
- 손목시계, 악세사리 등은 샘플이라도 과세 통관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양이 많은 샘플의 경우 통관이 어려움이 있다.
- Label 부착은 각별한 유의를 요하는 분야로 특히 식품류, 개인위생구류, 의약품 라벨은 SASO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도록 세심한 관심이 요망된다.
-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공정 수출업자로 등록된 경우 1년 이상 수출입 절차가 까다롭게 적용되므로 사소한 사안이라도 유의하여야 한다.
- 중고자동차는 수입통제 품목에 포함되어 엄격한 통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사. 주요 항구(무역항)

- 사우디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대륙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시아와 인접해 있는 동부지역 해안은 700km,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의 반대편에 있는 서부지역 해안은 1,800km이다. 사우디의 서부지역 해안은 국제무역의 주요 경로에 위치하고 있어 항구가 발달해 있다.
- 사우디에는 6개의 상업 무역항과 2개의 산업 무역항이 있으며, 연간 처리물동량은 다음과 같다.

연간 처리실적

| | 2006년 | 전년대비 증가율 |
|----------------|----------|----------|
| 연간 처리물동량 | 133.8백만톤 | 1.2% |
| 연간 컨테이너 처리물량 | 386만대 | 3.5% |
| 연간 통과컨테이너 처리물량 | 150만 | 0% |
| 승객수송 | 132만명 | -39.6% |

화물형태별 처리실적(2004-2006)

(단위: 톤)

| 화물형태 | 2004 | | 2005 | | 2006 | |
|-------------------|-------------|------------|-------------|------------|-------------|------------|
| | 하역 | 하역 | 하역 | 선적 | 하역 | 선적 |
| 벌크화물(solid) | 14,711,618 | 5,122,980 | 18,155,133 | 5,676,193 | 17,139,308 | 6,259,001 |
| 벌크화물 (liquid)* | 2,260,569 | 56,945,484 | 2,812,782 | 58,009,331 | 2,802,218 | 57,268,900 |
| 일반화물 | 6,826,876 | 735,465 | 7,609,355 | 842,424 | 8,815,958 | 1,001,417 |
| 컨테이너(톤) | 18,407,905 | 13,577,157 | 21,427,602 | 15,935,614 | 22,118,763 | 16,741,234 |
| 수송기계 | 1,139,882 | 114,606 | 1,469,281 | 177,173 | 1,201,366 | 158,834 |
| 가축 | 101,879 | 190 | 125,725 | - | 286,509 | 36,810 |
| 계 | 43,448,729 | 76,495,882 | 51,599,878 | 80,640,735 | 52,364,122 | 81,466,196 |
| 합계 | 119,944,611 | | 132,240,613 | | 133,830,318 | |

주: 원유제외

자료원: Saudi Ports Authority

1) 상업무역항

杰다 이슬람 항 (Jeddah Islamic Port)

| | |
|-----------------------------|--------------|
| 정박지 수(Number of berths) | 58 |
| 깊이(Depth) | 16 미터 |
| 용량(Capacity) | 년간 30.6 백만톤 |
| 터미널 수(Number of Terminals) | 7 |
| 재수출 영역(Re -export area) | 900,000 평방미터 |
| 창고지역 면적(Warehouses City) | 10.5 백만평방미터 |
| 2개 도크를 갖춘 수리조선소 및 운반능력 45천톤 | |

담맘 킹알둘아지즈 항 (King Abdulaziz Port, Dammam)

| | |
|-----------------------------|------------------------------|
| 정박지 수(Number of berths) | 39 berths |
| 깊이(Depth) | 14 meters |
| 용량(Capacity) | 19.4 million tons (annually) |
| 터미널 수(Number of Terminals) | 7 Terminals |
| 재수출 영역(Re -export area) | 400,000 sq. m |
| 창고지역 면적(Warehouses City) | 12 Million sq. m |
| 2개 도크를 갖춘 수리조선소 및 운반능력 45천톤 | |

쥬베일 상업항 (Jubail Commercial Port)

| | |
|----------------------------|------------|
| 정박지 수(Number of berths) | 12 |
| 깊이(Depth) | 14 미터 |
| 용량(Capacity) | 년간 5.8 백만톤 |
| 터미널 수(Number of Terminals) | 3 |

얀부 상업항 (Yanbu Commercial Port)

| | |
|----------------------------|-----------|
| 정박지 수(Number of berths) | 9 |
| 깊이(Depth) | 11 미터 |
| 용량(Capacity) | 년간 3.7백만톤 |
| 터미널 수(Number of Terminals) | 3 |

지잔 항 (Jizan Port)

| | |
|----------------------------|-----------|
| 정박지 수(Number of berths) | 12 |
| 깊이(Depth) | 12 미터 |
| 용량(Capacity) | 년간 6.4백만톤 |
| 터미널 수(Number of Terminals) | 2 |

디바 항(Dhiba Port)

| | |
|----------------------------|---------|
| 정박지 수(Number of berths) | 3 |
| 깊이(Depth) | 10.5 미터 |
| 용량(Capacity) | 년간 90만톤 |
| 터미널 수(Number of Terminals) | 2 |

2) 산업무역항

쥬베일 킹파드 공업항 (King Fahad Industrial Port -Jubail)

| | |
|----------------------------|--------------|
| 정박지 수(Number of berths) | 23 |
| 깊이(Depth) | 28 미터 |
| 용량(Capacity) | 년간 103.8 백만톤 |
| 터미널 수(Number of Terminals) | 2 |

얀부 킹파드 공업항 (King Fahad Industrial Port -Yanbu)

| | |
|----------------------------|-------------|
| 정박지 수(Number of berths) | 23 |
| 깊이(Depth) | 32 미터 |
| 용량(Capacity) | 년간 80.9 백만톤 |
| 터미널 수(Number of Terminals) | 2 |

아. 공항

- 사우디에는 3개의 국제 공항과 23개의 국내 공항이 있으며, 국제 공항을 통한 연간 승객 수송은 2006년도 29,679천명, 23개 국내 공항을 통한 승객 수송은 7,964천명을 기록하였다.

항공 승객 수송 실적(1997-2006)

(단위: 천명)

| Total Passenger Traffic Kingdom-Wide Arrival + Departure for 1997-2006 | | | |
|--|-------|--------|--------|
| 연도 | 국내선 | 국제선 | 합계 |
| 1997 | 5,609 | 22,335 | 27,944 |
| 1998 | 5,661 | 22,364 | 28,025 |
| 1999 | 6,016 | 22,725 | 28,741 |
| 2000 | 6,150 | 23,382 | 29,532 |
| 2001 | 6,290 | 23,531 | 29,821 |
| 2002 | 6,631 | 24,439 | 31,070 |
| 2003 | 6,748 | 25,097 | 31,845 |
| 2004 | 7,246 | 27,015 | 34,261 |
| 2005 | 7,628 | 28,982 | 36,610 |
| 2006 | 7,964 | 29,679 | 37,643 |
| 2005-2006 증감률 % | 4.41 | 2.40 | 2.82 |

자료원: Ministry of Defense and Aviation, Saudi Arabia

- 사우디의 국내 및 국제공항을 통해 처리한 항공화물은 2006년도에 481,255톤을 기록하여 전년대비로는 4%가 감소하였다.

항공 화물 처리실적(1997-2006)

(단위: 톤)

| Total Cargo Traffic Kingdom-Wide : Arrival + Departure for 1997-2006 | | | |
|--|--------|---------|---------|
| 연도 | 국내공항 | 국제공항 | 합계 |
| 1997 | 29,449 | 427,313 | 456,762 |
| 1998 | 30,096 | 428,623 | 458,719 |
| 1999 | 30,685 | 439,488 | 470,173 |
| 2000 | 30,772 | 442,747 | 473,519 |
| 2001 | 32,525 | 413,984 | 446,509 |
| 2002 | 31,519 | 441,100 | 472,619 |
| 2003 | 29,283 | 432,231 | 461,514 |
| 2004 | 27,440 | 471,047 | 498,487 |
| 2005 | 28,538 | 472,786 | 501,324 |
| 2006 | 26,026 | 455,229 | 481,255 |
| 2005-2006 증감률 % | -8.8 | -3.71 | -4 |

자료원: Ministry of Defense and Aviation, Saudi Arabia

 제다국제공항: King Abdul Aziz International Airport(KAIA)

- 사우디 국제공항개발계획에 의거 1981년에 개관한 사우디 최초의 국제공항이다.
- 제다 북쪽 19km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105 평방킬로미터(부대시설 포함)임.
- 규모: 연간 1,500만명의 승객수송 처리능력
- 항공 화물 처리 능력: 37,458 평방미터 규모로 연간 20만 톤을 처리, 1회 7,500톤 처리

제다국제공항 화물처리실적

| Cargo & Mail Traffic at King Abdulaziz International Airport Arrival + Departure for 1995 – 2006 (metric tons) | | | | | |
|---|---------------------------|---------------|---------|------------------|--------------|
| Year | Scheduled & Non Scheduled | | | General Aviation | Grand Totals |
| | Domestic | International | Totals | | |
| 1995 | 42,292 | 130,951 | 173,243 | 1,076 | 174,319 |
| 1996 | 43,284 | 137,635 | 180,919 | 2,229 | 183,148 |
| 1997 | 49,826 | 149,758 | 199,584 | 2,458 | 202,042 |
| 1998 | 48,685 | 150,683 | 199,368 | 2,686 | 202,054 |
| 1999 | 47,621 | 155,781 | 203,402 | 2,258 | 205,660 |
| 2000 | 50,827 | 158,275 | 209,102 | 2,629 | 211,731 |
| 2001 | 49,229 | 143,473 | 192,702 | 2,042 | 194,744 |
| 2002 | 53,224 | 161,363 | 214,587 | 2,175 | 216,762 |
| 2003 | 54,476 | 149,004 | 203,480 | 2,327 | 205,807 |
| 2004 | 55,221 | 167,197 | 222,418 | 2,495 | 224,913 |
| 2005 | 54,483 | 166,861 | 221,344 | 2,656 | 224,000 |
| 2006 | 49,622 | 148,441 | 198,063 | 1,417 | 199,480 |
| % chg 2005–2006 | -8.92 | -11.04 | -10.52 | -46.65 | -10.95 |

자료원: Ministry of Defense and Aviation, Saudi Arabia

□ 리야드 국제공항: King Khalid International Airport(KKIA)

- 리야드 국제공항인 KKIA는 사우디 교통의 중심지인 수도 리야드 시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다. KKIA는 늘어나는 리야드 지역의 국제 및 국내 항공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되어 1983년에 개관하였다.
- 면적은 225평방 킬로미터로서 터미널, 사원, 관제탑 및 각각 4.2km의 2개의 활주로를 포함하고 있다.

리야드 국제 공항 화물처리실적

| Cargo & Mail Traffic at King Khaled International Airport Arrival + Departure for 1995 – 2006 (metric tons) | | | | | |
|--|---------------------------|---------------|---------|------------------|--------------|
| Year | Scheduled & Non Scheduled | | | General Aviation | Grand Totals |
| | Domestic | International | Totals | | |
| 1995 | 45,505 | 95,851 | 141,356 | 2,204 | 143,560 |
| 1996 | 47,014 | 96,123 | 143,137 | 2,374 | 145,511 |
| 1997 | 52,566 | 99,827 | 152,393 | 2,595 | 154,988 |
| 1998 | 50,606 | 111,296 | 161,902 | 2,389 | 164,291 |
| 1999 | 48,397 | 124,114 | 172,511 | 2,589 | 175,100 |
| 2000 | 49,385 | 121,289 | 170,674 | 2,449 | 173,123 |
| 2001 | 47,840 | 112,254 | 160,094 | 2,741 | 162,835 |
| 2002 | 50,424 | 117,226 | 167,650 | 2,782 | 170,432 |
| 2003 | 51,174 | 122,587 | 173,761 | 3,296 | 177,057 |
| 2004 | 51,871 | 141,929 | 193,800 | 3,480 | 197,280 |
| 2005 | 52,298 | 142,086 | 194,384 | 3,980 | 198,364 |
| 2006 | 47,447 | 143,840 | 191,287 | 4,081 | 195,368 |
| % chg 2005–2006 | -9.28 | 1.23 | -1.59 | 2.54 | -1.51 |

자료원: Ministry of Defense and Aviation, Saudi Arabia

담맘 국제공항: King Fahad International Airport (KFIA)

- 동부지역의 중심도시인 담맘에 위치한 국제공항으로 동부지역의 경제 및 문화적 발전과 인근 걸프 연안 국가와의 상호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1983년도에 착수하여 건설 되었다.
- 776평방 킬로미터의 면적으로 담맘 시 북서쪽 50km, 쿠웨이트 산업도시 남서쪽 7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 항공화물 터미널 면적은 39,500평방미터로 연간 94천 톤의 화물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화물처리 시스템이 자동화될 경우 처리능력은 연간 176천 톤으로 늘어날 계획이다.

담맘 국제공항 화물처리실적

| Cargo & Mail Traffic at King Fahd International Airport Arrival + Departure for 1995 – 2006 (metric tons) | | | | | |
|--|---------------------------|---------------|--------|------------------|--------------|
| Year | Scheduled & Non Scheduled | | | General Aviation | Grand Totals |
| | Domestic | International | Totals | | |
| 1995 | 13,238 | 46,393 | 59,631 | 1,758 | 61,389 |
| 1996 | 14,441 | 45,353 | 59,794 | 2,481 | 62,275 |
| 1997 | 16,427 | 51,996 | 68,423 | 1,860 | 70,283 |
| 1998 | 16,689 | 43,386 | 60,075 | 2,203 | 62,278 |
| 1999 | 15,399 | 41,569 | 56,968 | 1,760 | 58,728 |
| 2000 | 15,028 | 41,466 | 56,494 | 1,399 | 57,893 |
| 2001 | 15,693 | 39,395 | 55,088 | 1,317 | 56,405 |
| 2002 | 16,875 | 36,154 | 53,029 | 877 | 53,906 |
| 2003 | 16,480 | 32,154 | 48,634 | 733 | 49,367 |
| 2004 | 14,678 | 33,387 | 48,065 | 789 | 48,854 |
| 2005 | 14,341 | 35,292 | 49,633 | 789 | 50,422 |
| 2006 | 13,612 | 45,998 | 59,610 | 771 | 60,381 |
| % chg 2005–2006 | -5.08 | 30.34 | 20.10 | -2.28 | 19.75 |

자료원: Ministry of Defense and Aviation, Saudi Arabia

운송비용 및 소요기간

(단위: USD, 평균요금)

| 구간 | 40'컨테이너 | 20'컨테이너 | 평균소요기간 |
|-----------------|-------------|-------------|--------|
| 부산-리야드 Dry port | 2,425 | 1,395 | 40–50일 |
| 부산-젯다 Port | 2,125 | 1,195 | 35–40일 |
| 부산-담맘 Port | 1,925 | 1,150 | 30–35일 |
| 젯다-리야드 육상운임 | (대형트럭: 560) | (중형트럭: 450) | |
| 담맘-리야드 육상운임 | (대형트럭: 320) | (중형트럭: 270) | |

주요 운송회사 및 통관서비스 회사리스트

| 회사명 | 전화번호 | 홈페이지/이메일 |
|---|-------------|---|
| Al-Barak Shipping agencies Co., Ltd. | 01-206-5440 | www.albarak.com majed@ryd.albarak.com |
| ECU Line Saudi Arabia | 01-478-8849 | www.modelzafer.com.sa Alvin@modelzafer.com.sa |
| Emery Worldwide-Yusuf Bin Ahmed Kanoo | 01-477-2228 | www.janoosa.com Sabour.emery@ruh.kanoosa.com |
| Hual Middle East | 01-476-2756 | www.haulmiddleeast.com Hual.riyadh@haulmiddleeast.com |
| The National Shipping Co.of SaudiArabia (NSCSA) | 01-478-5454 | www.nsccsa.com.sa/ prmai@nsccsa.com.sa |
| P&O Nedlloyd | 01-476-8688 | www.zajil.net / ponlruh@zajil.net |
| United Arab Shipping agencies Co.(Saudia) | 01-478-6775 | www.uasac.com / uasacryd@uasac.com |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매력도

- 사우디의 투자 매력도는 제반 여건상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뛰어나다고 할 수 없으나 인구의 약 1/3 을 차지하고 있는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 확보, 각종 인센티브 혜택과 중동지역의 중심 국가로서의 지리적 이점 등을 들 수 있다.
- 사우디는 석유일변도의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하여 비 석유산업 발전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산업개발기금(SIDF: Saudi Industrial Development Fund, 74년 설립)을 설치, 제조업 및 기간산업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우디 기반공사(SABIC)는 특히 downstream 분야 제조업 발전을 위해 외국기업의 합작투자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 외국인 투자는 주재국 산업발전, 기술이전, 사우디 인력개발, 민간부문 활성화와 수출 기여 등에 기준을 두고 승인
 - 일정 투자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금면제, 투자자금 일부 무이자대출, 생산 원자재 및 설비의 면세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
 - 투자자의 자본금, 배당 수익금, 영업활동 경비의 송금 및 환전 등 외환 거래에 대한 제약은 없음.
 - 석유화학 관련 값싼 원료 확보가 용이하고, 중동, 유럽, 아프리카 시장에의 접근이 용이.
 - 한-사우디 양국의 투자협력 활성화를 위해 2002.4.4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어 2003.2.19부터 발효
 - 2007.3.24. 한-사우디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 영국 국방성에서 운영중인 British Offset 프로그램 활용가능
 - 1000 만 달러 무보증 차관
 - GCC 역내 무관세 접근 허용
 - 저가의 임차료 및 공공요금
 - 공공조달 우선권

나. 투자지로서의 장단점

장점

- 사우디는 석유의존적인 산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산업클러스터 육성 정책을 수립하여 1 단계로 자동차, 금속가공, 건설자재, 설비부문을 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리적으로 중동의 중심지역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자체 수요규모가 큰 시장으로서 현지에서의 제조업 투자 시 물류비용, 세제혜택 등의 장점이 있다.

단점

- 사우디는 외국인 투자를 원칙적으로 장려하지만 각종 혜택은 사우디 25% 지분 참여를 최소한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100% 외국인 투자는 드문 편이다. 또한, 법인 소득세는 비사우디 기업(합작회사 포함)에만 부과되며, 토지소유제한 및 유통사업 제한 등 외국투자자에 대한 내국인 대우는 아직 요원한 편이다.

- 특히 스폰서 제도 등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스폰서 제도: 외국인은 사우디 스폰서를 통해서, 스폰서의 명의로 은행거래, 비자 취득 및 각종영업 행위를 하게 되어 있어 스폰서와의 관계 악화 시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각종 불공정 관행 상존: 정부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 및 집행 시 국제관행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공사 대금 지급의 지연, 추가 공사경비 불인정 등은 상례화된 상태이며 발주처와의 법적 분쟁 시 이슬람법 및 관행을 들어 외국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음.
- 사우디인 의무고용제도(Saudization): 일정 수준 이상의 사우디인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제 3 국 인력에 비해 생산성이 낮고 임금이 높은 사우디인을 채용하게 되므로 업체의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고 있음.
- 불공평한 조세제도: 내국인은 기본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나(Zakat 라는 종교세 2.5%를 자진납부) 외국인자영업자나 외국기업(합작기업 포함)에게는 20%의 소득세부과

2. 외국기업 투자동향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1956년 제정된 외국인 투자법을 2000년 4월 전면 개정함과 함께 전담기관인 투자청(Saudi Arabian General Investment Authority: SAGIA)을 설립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투자국은 미국인데, 2001년 9.11테러 사건 영향에 따라 미국의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여 2002년과 2003년도 외국인투자유치실적은 극히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사우디 정부의 적극적인 테러방지 노력과 유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경기 활성화로 인해 2004년부터 외국인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5년도에는 전년대비 95%가 늘어난 235억불의 FDI 유치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사우디 투자청 설립 이후 2000년부터 2005년 말까지 투자유치 누계는 3,312건 260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고유가 행진은 향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으로 최대 산유국이자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막대한 오일머니 유입이 지속되면서 각종 투자 프로젝트가 발표되고, 외국자본 유입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대규모 플랜트 프로젝트 발주가 크게 확대되고, 발주방식도 일정부분 투자유치를 통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분간 외국인 투자는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우디의 외국인투자는 산업부문에 특히 집중되어 있는데, 2005년 말 FDI 누계 기준으로 산업부문이 70%, 서비스부문이 30%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의 WTO 가입 (2005. 12.11)에 따라 금융, 보험 등의 서비스 부문에서 외국인 지분한도가 60% 까지 확대 되면서 2006년부터는 서비스부문에서도 외국인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 실제 WTO 가입 이후 2006년부터 외국계 은행의 진출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추세에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유치현황

| 구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계 |
|-----------|---------|---------|---------|---------|--------|---------|--------|
| 프로젝트 건수 | 253 | 659 | 873 | 577 | 365 | 585 | 3,312 |
| 금액(백만SAR) | 7,578 | 29,428 | 10,880 | 3,814 | 15,600 | 30,400 | 97,700 |
| 금액(백만\$) | 2,020.8 | 7,847.6 | 2,901.4 | 1,017.1 | 4,160 | 8,106.7 | 26,053 |

자료원: 사우디 투자청 SAGIA

주: 2005년통계는 SAGIA 발표 잠정치이며, 2007.8월 현재 입수 가능한 최신 통계임

한편, UNCTAD자료에 의하면, 사우디투자청 통계와 다소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2006년도 FDI유치금액은 사상 최대인 182억 9300만 달러로 전년대비 51.2%가 증가 하였다. 특히, 2005년도에는 전년대비 6배가 넘는 121억 달러를 유치한 바 있어 최근 2년 간 연속 100억 달러 이상의 높은 FDI유입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말 기준 FDI 누계는 518억불이며, 유출을 제외한 투자수지는 466억불에 달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외국인 투자수지

(단위: 백만USD)

| 구 분 | 1990-2000 (연 평균)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 당해 년도 | 유입 | 245 | 453 | 778 | 1,942 | 12,097 |
| | 유출 | 73 | 143 | 83 | 709 | 1,183 |
| | 수지 | 172 | 310 | 695 | 1,233 | 10,914 |
| 누계 | 유입 | 17,577 | 18,718 | 19,496 | 21,438 | 33,535 |
| | 유출 | 2,578 | 2,483 | 2,566 | 3,275 | 4,458 |
| | 수지 | 14,999 | 16,235 | 16,930 | 18,163 | 29,0977 |
| 46,617 | | | | | | |

자료원: UNCTAD/ 주: 2007. 12월 현재 입수 가능한 최신 통계임

2005년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총액은 전년도의 41억 6천만 달러 대비 95%가 증가한 81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국별로는 일본이 23억 달러를 투자하여 전체 FDI의 28%를 차지하여 1위를 기록하였고, 다음으로 U.A.E, 바레인, 미국 순으로 투자금액이 높았다. 2005년도 말 누계기준으로는 △ 1위 미국 94억 2천만불, △ 2위 일본 45억 8천만 불, △ 3위 UAE 31억 1천만 불, △ 4위 네덜란드 13억 불, △ 5위 쿠웨이트 8억 4천만 불을 기록 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 사우디 직접투자금액 누계는 1천 2백만 불로 순위는 26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투자금액은 전체 FDI의 0.05%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2005년도 일본의 대 사우디 투자는 전년도까지의 투자 총액과 같은 수준인 23억 달러를 투자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대 사우디 진출 전략이 수출 위주에서 투자를 병행한 진출 전략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사우디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단순 수출보다는 장기적 인 안목에서의 시장 확보를 위해 투자를 동반한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향후 우리기업 의 진출전략 수립 시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사우디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 누계: 2005년 말 기준

| 순위 | 국별 | 프로젝트수 | FDI(백만SAR) | FDI(백만\$) |
|----|------|-------|------------|-----------|
| 1 | 미국 | 265 | 35,341 | 9,424 |
| 2 | 일본 | 35 | 17,154 | 4,575 |
| 3 | UAE | 85 | 11,677 | 3,114 |
| 4 | 네덜란드 | 48 | 4,870 | 1,299 |
| 5 | 쿠웨이트 | 101 | 3,162 | 843 |
| 6 | 영국 | 128 | 2,291 | 611 |
| 7 | 바레인 | 72 | 2,280 | 608 |
| 8 | 요르단 | 349 | 2,211 | 589 |
| 9 | 대만 | 5 | 1,407 | 375 |
| 10 | 프랑스 | 79 | 1,366 | 364 |
| 11 | 시리아 | 336 | 1,314 | 350 |
| 12 | 레바논 | 242 | 1,287 | 343 |
| 13 | 스위스 | 46 | 1,195 | 319 |
| 14 | 이태리 | 34 | 1,137 | 303 |
| 15 | 독일 | 90 | 1,057 | 282 |
| 26 | 한국 | 17 | 44 | 12 |
| 기타 | | 1,380 | 9,907 | 2,642 |
| 계 | | 3,312 | 97,700 | 26,053 |

자료원: 사우디 투자청 SAGIA / 주 : 2007. 12월 현재 입수 가능한 최신 통계임

주요 외국투자기업: 2006년말 기준

| | |
|--|--|
| ○ ABB Automation Co Ltd | ○ Gillette Middle East |
| ○ ABB Contracting Co Ltd | ○ Habitat Furniture & Co Ltd |
| ○ ABB Eastern Region | ○ Heath Lambert (Saudi Arabia) |
| ○ Accenture Saudi Arabia | ○ Hilton International |
| ○ Advanced Electronics Co(AEC) | ○ Hitachi-Nichimen JV |
| ○ Advanced Telecom Co | ○ IKEA |
| ○ Air France | ○ KPMG Saudi Arabia |
| ○ ALSTOM Saudi Arabia | ○ LG Electronics Inc |
| ○ Amex(SA)Limited[AMERICAN EXPRESS] | ○ Lockheed Martin Middle East Services |
| ○ AXA Insurance | ○ Logica CMG (Saudi Arabia) |
| ○ BAE Systems | ○ Microsoft Arabia |
| ○ Baker & McKenzie | ○ Mitsubishi Corporation |
| ○ BMW Dabbab Street Service Centre | ○ Mitsui & Co Ltd Saudi Arabia Branch |
| ○ BMW-Mohamed Yousuf Naghi Motors | ○ Mobil Saudi Arabia Inc |
| ○ BP Solar Arabia, British Airways plc | ○ Motorola Inc |
| ○ BT Al-Saudia, Bureau Veritas | ○ Nissan Motor Company |
| ○ Chrysler-UnitedMotors Company (UMC) | ○ Olympic Airways |
| ○ The Coca-Cola Bottling Company of Saudi Arabia | ○ P&O Nedlloyd |
| ○ Colgate-Palmolive Arabia (Al Olayan) | ○ Reuters Saudia LTD |
| ○ Corus UK Ltd (Damman Branch) | ○ Rolls-Royce International Limited |
| ○ Deloitte & Touche Saba & Co | ○ Rolls-Royce International Turbines |
| ○ Delta Electrical Systems Ltd | ○ Shell Overseas Services Ltd |
| ○ Delta Group Ltd | ○ Siemens Ltd |
| ○ Diners Club Saudi Arabia | ○ Skanska Saudi Arabia |
| ○ Electrolux Saudi Services Ltd | ○ Tetra Pak Central & Eastern Region |
| ○ Emirates Airlines | ○ Tetra Pak Saudi Arabia |
| ○ Ericsson | ○ Toshiba Corp Jeddah Office (Overseas Office) |
| ○ Ernst & Young Saudi Arabia | ○ Toys 'R' Us |
| ○ Fluor Arabia Ltd | ○ Unilever Arabia |
| | ○ Zurich Life Insurance Co Ltd |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투자현황 및 주요특징

- 한국의 대 사우디 투자는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에 따라 1980년대 중반까지 매우 활성화되었으나, 중동 건설 붐이 사라진 80년대 후반부터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고유가에 따른 경기활성화 영향으로 2006년에 크게 증가하였다.
- 수출입은행 통계에 의하면, 2007년 9월 기준 한국의 對 사우디 투자(투자기준)는 총 149건 672만 42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최근 한국의 对사우디 직접투자현황(투자실행기준)

| 구 분 | | 2000년까지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9 |
|-----------------|------|-----------|---------|---------|---------|---------|---------|---------|---------|
| 신고건수 (건) | 당해년도 | 2.4(평균) | 3 | 2 | 0 | 0 | 2 | 12 | 15 |
| | 누계 | 86 | 89 | 91 | 91 | 91 | 93 | 105 | 120 |
| 신고금액 (US\$천) | 당해년도 | 3,713(평균) | 305 | 1,466 | 0 | 0 | 267 | 10,770 | 13,643 |
| | 누계 | 100,260 | 100,565 | 102,031 | 102,031 | 102,031 | 102,298 | 113,068 | 126,711 |
| 투자건수 (건) | 당해년도 | 1.9(평균) | 3 | 2 | 0 | 0 | 2 | 11 | 13 |
| | 누계 | 118 | 121 | 123 | 123 | 123 | 125 | 136 | 149 |
| 투자금액 (US\$천) | 당해년도 | 2,104(평균) | 240 | 1,466 | 0 | 0 | 267 | 6,516 | 1,918 |
| | 누계 | 56,835 | 57,075 | 58,541 | 58,541 | 58,541 | 58,808 | 65,324 | 67,242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사우디 투자청(SAGIA)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사우디의 대 한국 투자유치는 17건 (제조업 5, 서비스업 12건), 1165만 달러를 기록하여 한국통계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으나 보다 현실에 가까운 기록이다.
- 사우디 기업과의 합작투자는 8건(제조업 3, 서비스업 5건), 579만 달러로 평균 37.35%의 투자지분을 확보하고 있고, 단독투자는 7건(모두 서비스업), 533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사우디 이외의 국가와 합작 투자한 경우는 2건(제조업), 53만 달러를 기록

한국의 대 사우디 투자 현황 (2005년말 기준)

| 구분 | 구분 | 프로젝트건수 | 투자금액 | | 합작(단독)투자 금액(비율) | | | | | | | | |
|----------|----------|--------|--------|--------|-----------------|--------|-------|--------|--------|-------|--------|--------|-------|
| | | | | | 사우디 | | | 한국 | | | 기타국가 | | |
| | | | 백만 SAR | 백만 USD | 백만 SAR | 백만 USD | 비율 % | 백만 SAR | 백만 USD | 비율 % | 백만 SAR | 백만 USD | 비율 % |
| 사우디 합작 | Industry | 3 | 46.6 | 12.43 | 26.78 | 7.14 | 57.47 | 16.07 | 4.29 | 34.80 | 3.75 | 1.0 | 8.05 |
| | Service | 5 | 11.5 | 3.07 | 5.46 | 1.46 | 47.48 | 5.63 | 1.50 | 48.96 | 0.40 | 0.11 | 3.56 |
| | Total | 8 | 58.1 | 15.50 | 32.24 | 8.60 | 55.51 | 21.70 | 5.79 | 37.35 | 4.15 | 15.56 | 7.14 |
| 단독/ 외국합작 | Industry | 2 | 10 | | | | | 2 | 0.53 | 20.00 | 8 | 2.13 | 80.0 |
| | Service | 7 | 20 | | | | | 20 | 5.33 | 100 | 0 | 0 | 0.0 |
| | Total | 9 | 30 | | | | | 22 | 5.87 | 73.33 | 8 | 2.13 | 26.67 |
| 계 | Industry | 5 | 56.6 | 15.09 | 26.78 | 7.14 | 47.31 | 18.07 | 4.82 | 31.93 | 11.75 | 3.13 | 20.76 |
| | Service | 12 | 31.5 | 8.40 | 5.46 | 1.46 | 17.33 | 25.63 | 6.83 | 81.37 | 0.41 | 0.11 | 1.30 |
| | Total | 17 | 88.1 | 23.49 | 32.24 | 8.60 | 36.61 | 43.70 | 11.65 | 49.60 | 12.15 | 3.24 | 13.81 |

자료원: 사우디 투자청 SAGIA

- 한국의 대 사우디 투자는 오일 붐 시대에 연계된 투자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 한국의 대 사우디 투자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70년대 오일 붐에 따른 충동 건설 붐에 맞추어 투자진출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유가하락세와 함께 투자도 급격히 감소
 - 제2의 고유가 시대에 맞이한 이후 2006년도에 투자가 크게 증가
- 프로젝트 이행 중심의 투자진출이 대부분이다.
 - 현지화 전략을 통한 수출확대를 위한 진출은 부재하나 2006년도 LG전자의 에어컨 합작 공장 투자진출은 현지화 전략을 통한 시장 확대를 위한 것으로 고무적인 것이다.

나. 10대 한국투자기업 현황

| 투자 연도 | 한국투자 업체명 | 현지법인명 | 업종 | 품목 | 투자액 (\$천) | 투자 비율(%) |
|-------|----------|---|-----|------------|-----------|----------|
| 2006 | LG전자 | LG – Shaker Co. Ltd. | 제조업 | 에어컨 | 4,853 | 49 |
| 1979 | 현대건설(주) | Hyundai MEED(Middle East Engineering & Development) Co. | 건설업 | 건설, 플랜트 | 2,667 | 49 |
| 1981 | GS건설(주) | GS Construction Arabia Co. | 건설업 | 건설, 플랜트 | 2,133 | 49 |
| 1974 | 대림산업 | Daelim Saudi Arabia Co. Ltd. | 건설업 | 건설, 플랜트 | 1,333 | 50 |
| 2003 | (주)제일엔테크 | Cheil Chemical Plant Co. | 제조업 | 하수처리용약제 | 933 | 50 |
| 2000 | 삼성엔지니어링 | Samsung Saudi Arabia Ltd. | 건설업 | 석유화학 플랜트 | 800 | 100 |
| 2006 | 한화건설 | Hanwha Saudi Contracting Co. | 건설업 | 석유화학 플랜트 | 660 | 95 |
| 2005 | 두산중공업 | Branch office of Doosa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Co. | 건설업 | 담수플랜트 | 533 | 100 |
| 2002 | 태창전업(주) | Taechang Electric Construction Co., Ltd. | 건설업 | 전기공사, 통신공사 | 533 | 100 |
| 2005 | 삼흥정보통신 | Shamhung Information Comm Co. Ltd. | 통신업 | 기타전기통신업 | 353 | 100 |

자료원: 수출입은행, 무역관실 사증합

다. 업종별 투자현황

- 업종별 對 사우디 투자는 투자금액 기준 건설업종이 3,703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의 55%를 차지하였으며, 제조업은 37.4%인 2516만 달러의 투자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 사우디는 오일 봄과 함께 건설 분야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진출도 건설 업종에 집중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업종별 투자현황(2007.9. 누계기준)

(단위: 건, US\$천)

| 업종 | 신고건수 | 신고금액 | 투자건수 | 투자금액 |
|--------------------|------|---------|------|--------|
| 계 | 120 | 126,711 | 149 | 67,242 |
| 농업 및 임업 | 1 | 145 | 1 | 145 |
| 제조업 | 30 | 64,017 | 67 | 25,155 |
| 건설업 | 61 | 56,305 | 57 | 37,029 |
| 도매 및 소매업 | 7 | 1,596 | 6 | 1,416 |
| 운수업 | 2 | 947 | 2 | 947 |
| 통신업 | 6 | 628 | 6 | 628 |
| 사업서비스업 | 4 | 509 | 3 | 309 |
|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9 | 2,564 | 7 | 1,613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전체의 37.4% 비중으로 건설업 다음으로 많은 실적을 기록하였는데, 석유화학업종이 제조업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투자현황(2007.9. 누계기준)

(단위: 건, US\$천)

| 업종중분류 | 신고건수 | 신규법인수 | 신고금액 | 투자건수 | 투자금액 |
|-------------------------|------|-------|--------|------|--------|
| Total | 30 | 18 | 64,017 | 67 | 25,155 |
| 음·식료품제조업 | 4 | 3 | 620 | 2 | 369 |
|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 13 | 5 | 28,487 | 58 | 14,258 |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1 | 1 | 15,000 | 0 | 0 |
| 제1차금속산업 | 3 | 2 | 4,699 | 3 | 3,456 |
|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 4 | 3 | 8,073 | 0 | 0 |
|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 3 | 2 | 4,918 | 2 | 4,853 |
| 가구및기타제품제조업 | 1 | 1 | 1,520 | 1 | 1,520 |
| 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 | 1 | 1 | 700 | 1 | 700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외국인 투자법 개요

외국인투자법 전면개정, 투자환경 개선

- 사우디는 1956년 최초 제정된 「외국인투자법」을 1962년과 1979년에 개정한 이후, WTO 가입 준비를 위하여 2000년 4월 9일 전면 개정하였으며, 개정 법률에 의거 2000년 4월 '사우디 투자청'을 설립하고 투자허가 및 유치활동 조직을 일원화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2002년 6월 24일에는 시행규정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 지원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혜택, 인센티브, 보증 등에 있어서 내국인 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약속하고 있다. 종전에는 국가발전계획에 부합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외국인투자를 허가하였으나, 투자 금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개방하였으며, 단독투자의 경우에도 보조금 성격의 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고, 이익과 자본의 자유송금을 보장하였으며, 투자허가 절차를 또한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법인세 인하, 최소투자금액 한도 철폐 등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 한편, 외국인투자법 제3조에 의거 최고 경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자청에서 매년 외국인투자 금지 업종을 발표하고 있는데, 원유생산부문, 군사부문, 유통부문, 수송부문과 이슬람 정서를 침해하는 부문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 2007년 3월 사우디최고경제회의(SEC)는 그동안 금지하였던 유통, 도소매등 서비스 업종 등 일부 분야를 개방하였다. 새로이 개방된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유통서비스, 도매 및 소매서비스(의약소매서비스, 개인제약서비스 포함), Commercial Agencies
 - 영화필름 및 비디오 유통업
 - 통신서비스(전 분야)
 - 도시간 열차여객 수송업, 항공수송업, 위성송신 서비스

- 외국인투자 장려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공업부문과 농업 개발 부문에서는 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적극 장려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구법과 신법의 주요 차이점

| 구 분 | 구 법 | 신 법 |
|-----------------|---|---|
| 외국인투자 허가기관 | 공업전력부 외국인투자 사무국 | 사우디 투자청(신설) : the Saudi General Investment Authority (SAGIA) |
| 투자가 서비스 및 규제기관 | 여러 정부부처 분산 | 투자청 투자가서비스센터 (9개 정부부처 담당자 파견) |
| 외국인투자 개방분야 | 국가개발계획하의 개발프로젝트로서 외국의 전문 기술이전이 수반 되고 외국 투자담당기관이 실용성이 있는 것으로 승인한 프로젝트 | 투자금지업종(Negative list)를 제외한 전 분야 |
| 투자허가결정기간 | 명시되지 아니함 | 최대 30일 |
| 1개 이상 허가취득 가능여부 | 제한됨, 같은 활동을 해야 함 | 외국인투자가는 여러 분야에서 1개 이상의 허가 취득가능 |
| 외국인투자형태 | 100%외국인투자보다는 합작투자 선호 | 100% 단독투자 및 합작투자 모두 가능 |
| 인센티브 | 외국자분은 단지 제조 산업에만 자본 투자 가능. 사우디 지분의 비중은 25% 이상 이어야 함 | 외국인투자프로젝트는 국내프로젝트에 적용 되는 모든 인센티브 및 특권을 향유 |
| 투자보장 | 명시되지 아니함. 1957년 이후 투자금 몰수된 사례는 없음 | 외국인투자가는 자본매각대금 또는 이익금의 국외 이전 권리 보유, 외국인투자가와 관련된 투자는 법원 결정 없이 몰수되지 아니함, |
| 부동산 소유 | 외국인투자가의 부동산 소유는 금지됨 | 외국인투자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 (개인주택포함)을 소유할 수 있음. 또한, 토지에 대해 일정조건(30 백만 SAR 이상 투자, 5년내 개발, 지역제한 등)하에 외국인투자를 허용 |
| 벌칙조항 | 일정 기간내 위반사항을 바로 잡도록 공업전력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투자가에 대해 허가취소 또는 인센티브 거부가능. 투자는 30일내 상소 가능 | 벌칙에 대한 청원은 투자가가 직접 소청위원회에 제출 해야 하며, 가능한 벌칙은 다음과 같음 -외국인투자가에 제공된인센티브 취소 -50 만 SAR 이내 벌금부과 -법규위반 교정 통보 받은 후에도 계속 위반할 경우 투자허가 취소, |
| 면세 | 사우디 지분 25%인 경우 공업 및 농업프로젝트는 10년간 세금면제, 기타프로젝트는 5년간 면세, 소득세 최고 45% | 소득세 20%로 인하, 손실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 |
| 스폰서쉽 | 외국인투자가는 사우디 국민을 스폰서로 두어야 함 | 외국인투자가 스폰서 제도 폐지, 외국인투자가와 외국인 직원은 허가 받은 투자프로젝트에 의해 스폰서를 받음 |

나. 투자 장려 분야

- 사우디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외국의 선진 기술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제조업 분야의 투자 유치가 최대 목표라 할 수 있다.
- 2006년 12월 사우디 정부는 산업구조 다변화를 통한 석유산업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한 조치로 자동차, 금속가공, 건설자재, 설비 등 4대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동 분야가 정부가 장려하는 투자유치 분야이다.

다. 투자제한분야

- 보험
 - 외국 보험 회사의 진출 및 직접 영업허용
 - 상업적인 국내 보험 회사(주식회사, 조합, 법인 또는 외국합작)의 설립을 허용하되, 외국인의 지분은 60%까지 허용
 - 현존 외국보험회사들에게 3년 내 사우디 기업 또는 외국기업 지사로의 전환을 허용
- 금융
 - 국내법인, 주식회사 또는 국제은행의 지점형태의 상업은행 설립을 허용
 - 금융분야 합작기업의 외국인 자산보유한도를 60%까지 확대
 - 반면, 금융서비스는 상업은행만 허용하며, 자산관리와 자문서비스는 비 상업 금융 기관에게도 허용함
- 통신
 - 가입 후 3년 이내 통신분야 외국지분비율을 70%까지 확대하며, 아는 기초통신서비스 및 부가가치 통신서비스에 모두 적용
 - 공공통신서비스는 주식회사만이 가능
- 유통분야
 - 국내에서 상품유통분야에서의 일부 규제를 유지하되, 3년간 이행기를 지나 단계적으로 규제를 철폐

라. 투자금지분야: Negative List

- The Supreme Economic council (SEC)이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금지한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제조업분야
 - 석유탐사, 생산 (광산업분야(국제산업코드 5115+883)에 관련된 서비스는 제외)
 - 군사장비, 기기 및 유니폼 제조
 - 민간 폭발물 제조
- 서비스분야
 - 군사부문 케이터링
 - 시큐리티 및 탐정 서비스
 - 메카 및 메디나지역 부동산 투자
 - 성지순례(Hajj and Umrah) 관련, 관광안내 및 가이드 서비스
 - 국내고용사무소를 포함한 신규모집 및 고용서비스
 - 부동산 브로커
 - 시청각 및 미디어 서비스
 - 인쇄 및 출판
 - * 단, Pre-printing service(88442), Printing presses(88442), Drawing and calligraphy (87501), Photography(875),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ing Studios(96114), Foreign Media Offices and Correspondents(962), Promotion and Advertising(871),

Public Relations(86506), Publication(8442), Press Services(88442), Production, selling and renting of computer software(88), Media consultancies and studies (853), Typing and Xeroxing(87505 + 87904), Motion picture and video tape distribution service(96113)는 예외적으로 허용

- 육로 수송 서비스(단, 도시간 철도여객수송서비스 제외)
- 조산원, 간호원, 물리치료사, 진료보조원 서비스
- 어업
- 혈액은행, 독극물센터 및 검역소

※ 2007.3.25.부로 영화 비디오테이프 유통서비스, 의약소매 및 개인약국 업을 포함한 도소매 유통서비스, 상업대리업, 통신서비스, 위성송수신서비스, 도시간열차 승객 수송서비스 및 항공운송서비스 분야가 금지분야에서 제외되어 외국인투자가 허용됨

마. 투자인센티브

1) 세제인센티브 이외

- 사우디 정부가 요망하는 투자 요건을 갖춘 경우 아래 인센티브 수혜가 가능하다(사우디 자본 25% 지분 참여가 최소한의 요건).
 - tax holiday: 영업활동 시작 후 5-10년간 세금 면제(동 기간 후에는 기업 이윤의 최고 45%까지 세금 부과), 사우디 측 지분 25%이상 기업에는 10년간 법인세 면제
 - 플랜트 합작투자 시 사우디 산업개발 자금(SAUDI INDUSTRIAL DEV. FUND, SIDF)융자 혜택 (총 자본금의 50%까지 장기. 저리융자, 15년 상환)
 - 산업단지 염가 입주 지원(US\$ 0.26/m²)
 - 전기, 물, 연료 등 공공요금 할인
 - 관세 면세: 생산 원자재 및 설비 면세 통관
 - 수출 시 각종 혜택: 50% 항만 사용료 감액, 10일간 창고보관료 면제 등 (단, 전력, 운송 등 국가안보 관련 분야 및 주요 공공시설 관리, 그리고 전략산업인 원유 탐사 및 upstream 분야에는 외국인투자 제한)
 - 합작투자기업 생산 제품에 대하여 일정조건 하에 동종 수입상품에 20% 보호관세 부과
 - 사우디 측 합작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정부프로젝트 발주특혜 및 조달 시 우선 구매
- 투자인센티브 지원과 관련, 면세기간 경과 후 고율의 법인세 부과: 10년의 면세기간 이 지나면 외국자본 지분에 대해 최대 20%까지의 법인세 부과

2) 지역 인센티브

- 산업 도시(공단)에 입주할 경우 공장부지, 전력, 수도료 등에 특별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리야드 외곽지역에 2개, 담맘에 2개 그리고 제다, 까심, 아사, 마카에 각 1개의 산업 공단을 조성. 산업공단에는 각종 산업시설이 정비되어 있으며 입주기업은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기존 산업공단의 포화로 메디나, 아시르, 하-아일, 타부크, 알-자우프, 지잔 등지에 새 단지를 조성 중이다.

3) 금융 인센티브

- SIDF(Saudi Industrial Development Fund)에서 금융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 'SIDF는 1974년 설립이래 1997년까지 총 1962건, 15억8천만SR의 금융지원
 - 'SIDF 는 1987년부터 독립 채산제로 운영
- 면허가 있는 회사는 모두 융자신청이 가능하며 외국합작회사도 융자신청 가능. 융자 신청 시 근로자의 고용 및 훈련계획, 건설기법, 기본 설비, 가격 등을 상세히 제출해야 한다.
- SIDF로부터 융자를 받을 경우 상환기간은 최대 15년이나 실제로는 평균 9.5년 정도. 이자는 연 2% 정도이다.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외국기업 진출형태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외국인 투자가가 설립할 수 있는 투자 형태는 다음과 같다.

- 유한 책임 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합작 투자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2~50 인 사이의 주주와 1 명 이상의 책임자(managers)에 의해 대표되고 운영되며 이사회가 없음
 - 반드시 회계사를 두어야 하며, 감사위원회를 설립해야 함.
 - 초소 투자금액은 외국인투자법시행령 제 6 조에 의해 정해 짐
- 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s)
 - 몇 명의 개인 또는 기업으로 구성된 회사임
 - 사업의 경영은 무한 책임 사원이 하고, 유한 책임 사원은 자본을 제공하여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
- 지사(Branch Offices)
 - 필요한 허가를 득하여 100% 외국인소유 사우디 지사로 등록가능
 - 지사는 정부계약 또는 민간부문에서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영업할 수 있으며, 정부 입찰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지사 등록 절차는 유한 책임 회사 등록과 같음
- 상업 대리인(Commercial Agencies)
 - 상업 에이전시 법과 시행령에서 무역(trading) 활동에 대해 사우디 국민과 사우디 기업에게만 허용하고 있음
 - 무역 활동은 수입과 재판매 상품의 국내 구매를 포함
 - 따라서, 외국기업이 무역활동에 종사코자 할 경우에는 사우디 상업 에이전트나 디스트리뷰터를 지정하고, 에이전트 계약을 상공부 등록소에 등록해야만 함
 - 에이전트는 에이전트 또는 디스트리뷰터로서 활동 가능한 사우디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대표자는 사우디인만 가능

1) 법인

장점

- 플랜트 합작 투자 시 사우디 응자 혜택 (50%, 20년 상환, 연리0.4%)
- 외국인 투자 우대 조치
 - 사우디 측 지분 25% 이상인 외국인 투자 기업은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 (제조업 및 농업 분야의 경우 10년)
 - 제조업 또는 농업 분야의 합작 투자 시 사우디 산업 개발 기금(SIDF)이나 사우디 농업 은행으로부터 저리의 응자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사우디 내 합작 투자 기업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동종의 수입상품에 대해 고율 (20%) 의 관세가 부과된다.
 - 투자용 기계류 및 부품, 원자재 등 도입 시 수입관세 면제
 - 공업단지 입주알선 및 저렴한 공단 임차료, 전기, 수도료 제공
 - 사우디인 피고용자의 훈련비용 정부에서 지원
 - 사우디 측 합작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모든 사우디 정부발주 프로젝트 참여시 특혜 부여 및 정부의 모든 관수물자 구매 시 우선구매

단점

- 사우디 측 지분이 50%이상인 합작투자를 우선 허용
-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불허
- 외국인은 무역업, 도. 소매업 등 상거래 활동은 불가

2) 지사(지점)

- 영업 활동이 가능한 외국기업의 지사(지점)는 사우디 회사법에 의거 설립이 불가능하며, 사우디인(기업)이 지사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 다만, 사우디 경제개발에 필수적인 제조업 및 계약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거 외국인 투자 위원회에서 지사 설치를 허가한다.
-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은 사우디인 스폰서를 선정하여 스폰서의 고용인 형태로 직원을 파견하여 지사를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3) 연락사무소

- 사우디 회사법에 의거 외국기업의 지사는 연락사무소(LIASION OFFICE) 및 기술서비스 사무소 (technical and scientific services office)만 허용되는데 그 활동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일반 상사, 제조업 등 일반 무역관련 지사 설치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 연락사무소: 정부 부문과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외국회사들은 사우디 내에서의 자신들의 활동을 관리하고 본사와의 연락관계를 원활히 유지하기 위한 활동의 범위 내에서 연락 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다(현실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정부 부문 공사를 수주한 건설 회사만 해당).

-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사무소: 사우디 내에 상업 에이전트를 갖고 있는 외국회사가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는데 활동 범위는 자사의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이나 자사가 지정한 상업에이전트(동 에이전트는 법 상 등록의무가 있음)에 대한 과학, 기술 및 자문서비스에 국한함과 아울러 회계감사 및 사우디인 고용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나. 설립 절차

1) 법인설립절차

-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설립 이전에 제조업/서비스/프로젝트설립을 투자청(SAGIA)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제조업 설립절차
 - 설립신청서를 투자청에 제출(공장 위치, 설립 자본금, 생산 품목, 생산 규모 등의 내용 기재)
 - 만약 사우디 투자청이 제조업 설립 건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기업 설립 신청자에게 별도 허가신청 양식을 배부하며 투자가는 신청서에다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한 뒤 다시 신청서를 신청자의 ID 사본과 함께 사우디 투자 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별도의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외국인 자본과 합작으로 제조업을 설립할 경우는 최초의 합작계약서 사본을 신청서류에 첨부하며 외자투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것은 외국인 합작파트너가 해당 제조업 분야와 생산 예정인 제품의 마케팅 분야에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함이다
- 법인 설립 절차
 - 투자가는 투자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외국인 투자법이 아닌 사우디 회사법에 근거하여 영업등록 혹은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다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만약 이미 법인화된 기업인 경우는 투자허가증 사본과 함께 법인조건 변경신청서를 투자허가 날짜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상공부에 제출해야 한다.
 - 투자가는 또한 상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업등기소(Commercial Registration Offices)로부터 영업등록법령에 따라 기존 영업등록을 갱신하거나 신규 영업등록을 해서 사업등록증을 취득해야 한다.
 - 영업등기소는 사우디 주요도시나 중소도시에도 설립되어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투자가는 투자허가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프로젝트 추진을 이행치 못했을 때는 투자허가증이 취소될 수도 있다.

2) 지사(지점) 및 연락사무소 설립절차

- 먼저 스폰서를 선정해야 한다. 외국인은 사우디 내에서의 일체의 부동산 소유가 금지되어 있으며, 현지활동도 스폰서의 고용인이라는 신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 스폰서의 초청장을 발급받아 입국한 후 사무실 임차 및 집기 구입, 전화가입 등 활동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스폰서 명의하에 해야 하며, 노동허가 비자를 취득한 후 체류에 필요한 신분증(이카마)를 신청발급 받는다.
- 이카마가 나온 후에야 은행계좌 개설이나 운전면허증 취득 등이 가능하다.
- 현지 직원은 사우디 인 보다는 제3국인을 많이 채용하고 있다.

- 사우디 회사법에 따르면, 개인 기업이든 일반 사업체든 모두 상공부 등록국이나 주요 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상공부 사무소에 영업 등록을 필히 해야 한다. 외국인 기업의 사우디측 파트너나 외국인 기업의 지사는 영업등록 신청 한달 전에 외자투자 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한편, 사우디 어느 지역에 신규지사를 언제 설치할 것 인지와 최초의 사업 보고서의 변경을 요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영업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외국인 기업의 영업 에이전시 등록 에이전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에이전트가 사우디 국적인 기업이어야 한다. 이 회사의 파트너와 관리자는 모두 사우디 국적인 이어야 한다. 영업 에이전시 등록신청 제출마감시간은 에이전시(대리권)가 효력을 발생 하였던 시점을 기준으로 3 개월이다. 즉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시점으로부터 3 개월까지는 관계당국에 영업 에이전시 등록을 필히 해야 한다.
- 외국인 기업의 서비스 에이전시 등록: 회사법에 따르면 사우디 국적인 파트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 계약자는 사우디 국적의 서비스 에이전트(Saudi services agent)를 임명해야 한다. 이 사우디 국적인 에이전트는 영업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현재 고려 중인 계약이 컨설턴시인 경우는 계약자와 동일한 성격의 컨설팅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권리를 현지 국적인 에이전트가 갖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사우디 국적인 에이전트는 10 개 이상의 계약기업의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사우디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기업은 프로젝트 완료와 함께 종료되는 임시영업 허가 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 외국인 기업의 지사: 사우디 경제개발에 필수적인 제조업 및 계약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기업은 사우디 내 지사설치 허가권 취득 신청을 외자투자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다. 허가권을 취득하자마자 외국기업은 상공부영업등록국에 영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 과학기술 연구소: 등록된 사우디 국적인 에이전트를 통해 사우디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외국인 기업은 상공부에 과학기술연구소 설치를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제품의 이용에 특수한 지식이나 사전주의가 필요할 때와 유통업자나 소비자, 에이전트들에게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주로 이뤄지고 있다.

다. 합작투자 절차

1) 합작투자신청

- 외국인 합작투자 신청 및 승인관련 주무부서는 사우디 투자청(SAUDI ARABIAN INVESTMENT AUTHORITY)이며, 합작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기업은 사우디 합작 파트너와 협의, 투자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투자승인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영업등록은 상공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2) 제조업분야 합작투자 시 제출서류

- 사우디 파트너와의 합작투자 계약서
- 합작투자신청서(아랍어 및 영문)
- 합작할 외국업체 이사회의 합작투자 결의서
- 투자자본 내역
- 사업타당성보고서 (제품, 생산, 기계설비 등의 설명, 생산개시일 포함)
- 상표권 및 특허권이 제품생산과 관련될 경우 등 권리 사용허가 승인서
- 제출서류 신청인이 합작투자 당사자가 아닌 경우는 위임장 첨부

- 외국합작기업의 모국 내 사업자등록증(아랍어로 번역)
- 생산할 제품에 대한 외국합작기업의 생산경력 증빙서류
- 합작할 외국업체의 3개년간 재무제표 및 연차보고서
- 합작할 외국 및 사우디 업체의 주소
- 합작할 사우디 업체의 영업등록증 사본
- 사우디 내 유사한 합작투자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외국합작기업의 확인서
- 인쇄업 및 관련업은 공보처의 예비승인서 첨부
- 원유프로젝트 경우는 사우디 원유·광물기구인 PERTROMIN(General Petroleum and Minerals Organization)의 예비 승인서가 필요
- 최저자본금 (외국인 투자법)
 - 농업설비 : SR 25백만
 - 제조설비 : SR 5백만
 - 기타 프로젝트 : SR 2백만

3) 산업분야의 합작 프로젝트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 파트너 모두의 서명이 첨부된 합작계약서
- 제조업 투자프로젝트 설립을 위한 투자허가 신청서 사본
- 대 사우디 프로젝트 추진을 승인하는 외국인 기업의 이사회 결의서 사본
- 아랍어로 된 프로젝트 타당성 검토서(제조 품목과 기계류 카탈로그 첨부)
- 상표권이나 특허권이 사용될 경우는 산업재산권의 사용을 허가하는 인증확인서
- 외국인 기업의 본국 내 영업활동을 허가하는 사업자 등록 확인증
- 제시된 프로젝트의 생산품과 유사한 상품의 생산경험 서류
- 외국인 파트너가 개인일 경우는 다음 서류가 추가된다.
 - 외국인 파트너의 학력 및 경력(이력서)을 아랍어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외자투자 위원회는 건 별로 별도 심사할 수 있다.
 - 외국인 파트너가 사우디 내 거주인일 경우는 여권 및 거주허가증
- 제시된 프로젝트의 생산품과 유사한 상품의 생산경험서류(생산품개시일이 명기되어야 함)
- 프로젝트 참가 외국인 기업의 제조업 경험은 없으나 모회사가 제조업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된다.
 - 외국인 파트너와 모회사의 관계를 나타내는 인증된 확인서
 - 본국 내 모회사 사업자등록 확인증(영업등록 개시일 표기)
 - 모회사의 제시된 프로젝트 생산품과 유사한 품목의 생산경험 서류
 - 제시된 프로젝트에 대한 모회사의 기술지원 확인증
 - 최근 3년간 모회사의 회계기록 및 연말 정산보고서
- 최근 3년간 외국인 파트너의 회계기록 및 연말 정산보고서
- 통신 및 서신이 가능한 사우디 및 외국인 파트너의 고정 주소 및 연락처 (국명, 도시 명, 주소, 전화, 팩스 등)
- 사우디 국적인 파트너가 기업일 경우 영업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개인일 경우는 주민등록증 사본
- 외국인 파트너나 그의 계열사(자회사)가 제시된 프로젝트 활동과 동일한 사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나 지분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증명서.
- 프로젝트 소유주는 기업이 설립되고 독립된 주소지를 가졌을 경우 해당 주소를 공업 전력부에 제출해야 한다.
- 프린팅 하우스나 광고프로젝트의 경우 공보부(Minstry of Information)의 예비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일 프로젝트의 경우는 석유 광물부 장관의 예비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4) 운송 분야 합작 프로젝트 시 제출 서류

- 사우디 국적인과 외국인 기업간에 체결된 합작계약서 (모든 파트너들의 서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 육상 및 해상 프로젝트 설립을 위한 투자 신청양식을 아랍어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파트너 중 어느 한 명이 비아랍인일 경우 영어로 된 양식 추가작성)
- 모든 서류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
- 서류신청 제출자가 파트너 중의 하나가 아닐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겠다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 외국인 파트너의 본국이나 사우디의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우디 영내 외에서 수행하였던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 증명서에는 프로젝트 계약금액, 해당고객, 프로젝트 완료날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우디 내 투자, 지분참여 등을 승인하는 외국인 기업 이사회 결의서. 합작일 경우는 결의서에 사우디 국적인 파트너의 성명과 외국인 파트너의 국적 및 성명이 동시에 명기되어야 한다.
- 모국 내 외국인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등록증은 아랍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 최근 3년간 외국인 파트너 기업의 최종 회계기록 및 연말 사업결과보고서
- 사우디 내 프로젝트 설립을 위한 교통부 장관 혹은 차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해상운송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선박의 제조 및 수리날짜, 무게 등 관련 정보가 포함된 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 기타 다른 사항은 제조업 프로젝트와 동일하다.

5) 서비스 및 수주계약 프로젝트 시 제출 서류

- 합작 계약서
- 아랍어로 된 투자허가 신청서
- 은행업의 경우 사우디 통화기구(Saudi Arabian Monetary Agency)로부터 예비승인이 있어야 한다.
- 클리닉과 병원 프로젝트의 경우 보건부 장관의 예비승인이 필요하다.
- 석유탐사, 광구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석유광물부 장관의 예비승인이 필요하다.
- 온천, 우물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농수산부 장관의 예비승인이 필요하다.
- 합작이 유지보수, 실험연구, 기타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인 경우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장비 및 가격리스트가 필요하다.
- 기타 다른 사항은 제조업 프로젝트의 경우와 동일하다.

라. 공장설립절차

1) 제조업 설립

- 제조업 설립을 위한 허가권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허용되고 있다.
 - 사우디 산업보호 및 장려법 : 사우디 국적인(100%국적인 지분)이 제조업을 설립할 때
 - 외국인 투자유치법: 외국인 직접투자나 합작에 의한 제조업 설립
- 외국인 직접투자, 국적인 투자, 합작투자 형태로 설립되는 모든 제조업 프로젝트(토지와 빌딩가치를 제외한 자본금 규모가 267천 달러 이상 기업에 한함)는 모두 사우디 투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조업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투자는 설립신청서를 사우디 투자청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공장위치, 설립자본금, 생산품목, 생산규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만약 사우디 투자청이 제조업 설립 건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기업 설립 신청자에게 별도 허가신청 양식을 배부하며 투자는 신청서에다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한 뒤 다시 신청서를 신청자의 ID 사본과 함께 사우디 투자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별도의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외국인 자본과 합작으로 제조업을 설립할 경우는 최초의 합작계약서 사본을 신청서류에 첨부하며 외자투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것은 외국인 합작 파트너가 해당 제조업 분야와 생산 예정인 제품의 마케팅 분야에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함이다.

2) 영업 등록

- 사우디 회사법에 따르면, 개인기업이든 일반사업체든 모두 상무부 등록국이나 주요 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상무부 사무소에 영업등록을 필히해야 한다. 외국인 기업의 사우디측 파트너나 외국인 기업의 지사는 영업등록 신청 한 달 전에 외자투자 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한편, 사우디 어느 지역에 신규 지사를 언제 설치할 것인지와 최초의 사업보고서의 변경을 요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영업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외국인 기업의 영업 에이전시 등록
 - 에이전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에이전트가 사우디 국적인 기업이어야 한다. 이 회사의 파트너와 관리자는 모두 사우디 국적인 이어야 한다. 영업 에이전시 등록신청 제출마감시간은 에이전시(대리권)가 효력을 발생하였던 시점을 기준으로 3 개월이다. 즉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시점으로부터 3 개월까지는 관계당국에 영업 에이전시 등록을 필히 해야 한다.
 - 외국인 기업의 서비스 에이전시 등록
 - 회사법에 따르면 사우디 국적인 파트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 계약자는 사우디 국적의 서비스 에이전트(Saudi services agent)를 임명해야 한다. 이 사우디 국적인 에이전트는 영업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현재 고려중인 계약이 컨설턴시인 경우는 계약자와 동일한 성격의 컨설팅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권리를 현지 국적인 에이전트가 갖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사우디 국적인 에이전트는 10 개 이상의 계약기업의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사우디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기업은 프로젝트 완료와 함께 종료되는 임시영업 허가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 외국인 기업의 지사
 - 사우디 경제개발에 필수적인 제조업 및 계약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기업은 사우디 내 지사설치 허가권 취득 신청을 외자투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허가권을 취득하자 마자 외국기업은 상무부 영업 등록국에 영업등록을 마쳐야 한다.
 - 과학기술 연구소
 - 등록된 사우디 국적인 에이전트를 통해 사우디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외국인 기업은 상무부에 과학기술연구소 설치를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제품의 이용에 특수한 지식이나 사전 주의가 필요할 때와 유통업자나 소비자, 에이전트들에게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주로 이뤄지고 있다.

마. 연락기관 (담당부서)

- 외국인 합작투자 신청 및 승인관련 주무부서는 사우디 투자청(SAGIA, SAUDI ARABIAN INVESTMENT AUTHORITY)이다. 합작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 기업은 사우디 합작 파트너와 협의, 투자관련 신청서류를 동 사우디 투자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투자신청 및 허가와 관련, 실무절차는 투자청의 감독하에 투자서비스 센터(Investor Service Center)에서 수행한다.

| |
|---|
| ○ 투자서비스센터(Investor Service Center : ISC) |
| - 투자청의 산하 사무소로서 2000년 하반기에 첫 사무소가 수도인 리야드에 설립되었고, 2001년에 제다(Jeddah)와 담맘(Dammam)에 추가로 설립되었음. 이 사무소들이 정식 투자 신청서 양식을 배포하고, 모든 면허와 허가 업무를 수행함. 투자가 투자신청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할 허가나 승인들을 담당하는 정부 모든 부서들의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음. |
| -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직원은 투자신청이 승인되면 상업등기서류를 발급 |
| - 내무부의 여권국(General Directorate of Passports)과 고용관리국(General Administration for Recruitment), 노동사회부의 노동실(Labor Office) 직원은 투자신청이 사우디인 고용의무조건 충족을 확인한 후 노동허가서와 거주허가서를 발급 |
| - 재무부의 자카트 소득국(Zakat and Income Department) 직원은 회계와 세무보고 준비가 되어있음을 확인. |
| - 사우디 산업개발기금(Saudi Industrial Development Fund: SIDF)의 직원은 개발 프로젝트인 경우 동 기금의 지원 가능성은 확인. |

- 사우디 투자청: Saudi Arabian General Investment authority (SAGIA)
 - 주소: P.O.Box 1267, Riyadh 11431, Kingdom of Saudi Arabia
 - 전화: +966-1-448-4533
 - 팩스: +966-1-447-3037
 - 웹사이트: www.sagia.org.sa
- 투자청은 2000년 4월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에 의거 설립된 국가투자 유치기관으로서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 투자가 및 잠재투자가에 대한 각종 지원
 - 투자유치활동
 - 투자유치환경 개선 및 각종 투자유치 정책수립 및 시행
 - 투자지원센터(Investor Service Center) 운영
 - * 수도인 Riyadh를 비롯해 Jeddah, Dammam, Jubail, Yanbu 및 Madinah 등 주요 도시에 투자가 원스톱 서비스센터인 투자지원센터를 지역 상공 회의소 및 주 정부와 협력 하에 운영

지역별 투자지원센터

| Riyadh: | Jeddah: |
|-----------------------------|-----------------------------|
| P. O. Box 1267 Riyadh 11431 | P. O. Box 1001 Jeddah 21431 |
| Tel: (966) 1-447-0031 | Tel: (966) 2-657-1580 |
| Fax: (966) 1-447-3697 | Fax: (966) 2-657-2097 |
| Dammam: | Al-Medinah: |
| P. O. Box 1234 Dammam 31431 | P. O. Box 443 Al-Medinah |
| Tel: (966) 3-858-1110 | Tel: (966) 4-838-9032 |
| Fax: (966) 3-858-8177 | Fax: (966) 4-838-8916 |

□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 Al Rajhi Trading Establishment
 - Address : P.O.Box 1274 Dammam 31431 Saudi Arabia
 - Tel : +966-3-8346675
 - Fax : +966-3-8336093
 - Website : www.alrajhitrading.com.sa
 - 투자금융서비스를 하고 있는 국영기관으로 사우디내 60개 이상의 지점 운영

- Aggad Investment Company (Aico)
 - Address : P.O.Box 2256 Riyadh 11451, Kingdom of Saudi Arabia
 - Tel : +966-1-476-7911
 - Fax : +966-1-476-7895
 - Website : www.aico.com.sa
 - 금융, 제조, 프로젝트 및 유통분야 투자 서비스기업

6. 투자입지여건

가. 특별 경제 구역

- 사우디는 특별경제구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주요도시별로 산업단지 또는 공단을 설치하여 다양한 입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사우디는 그 동안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단계별 공단개발도 병행추진 하였기 때문에 중부 사막지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 지역에 공단이 산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신규공장은 이러한 산업공단 내에 설립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사우디는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의 기본 틀 내에서 산업다변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산업단지(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있으며, 산업도시 (단지)는 현재 상공부 산하에 7 개 도시에 14 개 공단이 있으며, 왕실위원회 산하에 쥬베일과 얀부 등 2 개의 대규모 산업단지가 운영 중에 있다.
- 또한, 지식 기반 산업의 발전을 위해 2001 년도에 사우디 산업 기술단지 공단(Saudi Organization for Industrial Estates and Technology Zone: SOIETZ)이 설립되어 350 만 평방미터의 담맘기술단지를 건설 중에 있으며, 2007 년도에 입주를 시작하였다.

상공부 산하 주요산업단지 리스트

| 공단 소재지 | 설립년도 | 공단 규모(천S/M) | 주소 | 팩스 |
|----------|------|-------------|----------------|---------|
| 리야드(1공단) | 1970 | 451 | 42151, 리야드 | 4460779 |
| 리야드(2공단) | 1975 | 12,000 | 43393, 리야드 | 4985082 |
| 제다 | 1969 | 8,256 | 3784, 제다 | 6364712 |
| 담맘(1공단) | 1970 | 1,418 | 2058, 담맘 | 8572509 |
| 담맘(2공단) | 1975 | 6,700 | 7520, 담맘 | 8425558 |
| Qassim | 1980 | 1,155 | 2158, Buraidah | 3245371 |
| Makkah | 1984 | 760 | 3522, Makkah | 5204927 |

□ 왕립위원회 산하 쥬베일 및 얀부 산업도시

- 쥬베일 및 얀부 산업도시를 위한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 for Jubail and Yanbu: RCJY)가 1975.9.21. 설립되어 양 산업도시 개발, 운영 중에 있다.
- 쥬베일 산업도시(Jubail Industrial City)
 - 사우디 동부지역에 소재한 대표적 석유화학중심 산업도시로 공단지역, 거주지역, 공항 지역, 피크닉 존, Al-Batwah 섬 등 5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 공단지역(약 8 천 헥타르)은 19 개 주요공장이 SABIC 의 감독하에 철강, 알미늄, 플라스틱 및 비료 등을 생산하고 있다.
 - 한편, 2005 년 제 2 쥬베일 산업도시개발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현재의 공단지역 서쪽 3km 떨어진 곳에 2 배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제 2 도시는 4 단계에 걸쳐 약 60 억 달러의 투자가 예상되며, 인프라에만 38 억 달러가 투자될 전망이다.
 - 제 2 도시는 2007 년에 인프라건설이 완성되고, 2009 년에 생산이 개시될 전망인데, 최초 9 개 공장은 전체 6,200 헥타르 중 1,900 헥타르에 건설된다.
- 얀부 산업도시(Yanbu Industrial City)
 - 사우디 서부 홍해연안의 제다 북쪽에 소재한 산업도시로 약 185 km² 규모이며, 얀부 상업항 보유하고 있다.
 - 정유공장(3 개), 석유화학플랜트, 관련 중소산업이 소재하고 있다.

나. 산업단지(클러스터) 육성 계획

- 사우디 상공부는 UNIDO 와 공동으로 “2020 년 산업발전 비전”과 이에 대한 전략을 준비 중에 있는데, 동 전략중의 하나는 “사우디 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다변화를 위한 전략”으로서 전 산업분야를 통합하여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동 전략수립을 위해 석유광물부 장관을 위원장(경제기획부, 상공부 등 정부기관 및 관련 유관기관이 참여)으로 하는 산업클러스터 개발위원회가 설립되어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수립 중이며, 2006.11. 산업클러스터 개발위원회는 1 차로 자동차 (Automotive), 건설(Construction), 기계설비(appliance), 포장(Packaging) 산업을 산업클러스터로 선정 하였다.
- 상공부 계획에 의하면, 현재 14 개 산업단지를 중장기적으로 24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 홍해 연안의 얀부산업도시에 2019 년까지 왕실위원회가 32 억 달러를 투자하고, 민간 부문에서 400 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여 66 평방 킬로미터 규모의 제 2 얀부 산업 도시를 개발할 계획이며, 동부지역의 쥬베일 산업도시에도 역시 정부가 560 억 달러를 투자하고, 민간부문에서 640 억 달러를 유치하여 제 2 쥬베일 산업도시를 개발할 계획이다.

다. 지역별 투자 여건

리야드(중부 수도권)

| 항 목 | 조 사 품 목(기준) | 가 격(USD) | 참 고 사 항 |
|----------------------------|----------------------------------|---------------------------------|---|
| 1. 임금 | | | |
| 1.1 사무직(일반) | 월급여(대출초임) | 1,900 | 현지 아랍인 기준 * 제 3 국인은\$1,500 수준 |
| 1.2 사무직(비서) | 월급여(학력불문 초임) | 900 | 남성 기준 |
| 1.3 사무직(중간관리자) | 월급여, 한국기준 과장급 | 3,000 | 현지 아랍인 기준 |
| 1.4 생산직(일반) | 월급여(초임) | 550 | |
| 1.5 생산직(중견) | 월급여, 엔지니어급, | 3,500 | 현지 아랍인 기준 |
| 1.6 상여금 | 연간 % | - | 관련 규정 부재 |
| 1.7 추가근무수당 | 평일, 휴일 % | 1.5%(평일) 3%(휴일) | |
| 1.8 사회보장부담금 | 월급여대비 %, 연간 % (고용자부담, 피고용자부담) | 월급여의 20% 고용자 11%/ 피고용자 9% | 외국인은 2% |
| 1.9 법정최저임금 | 월급여, 시간당(계약직경우) | - | 최저임금 규정 부재 |
| 1.10 법정퇴직금 | | 우한 참조 | 5 년↓:월급여×50%×근무기간 6 년↑:월급여×100%×근무기간 |
| 1.11 명목임금상승률(%) | 입수 가능한 최근 3 개년 자료 | - | 자료없음 |
| 2. 노무환경 | | | |
| 2.1 주당 법정근무시간 | | 40 시간 | 8 시간 X 5 일 |
| 2.2 출산휴가일수 | 연간 | 10 주(무급) | 산전 4 주/ 산후 6 주 |
| 2.3 연간국경일수 | 평균 | 1 일 | 라마단/하지 휴가 미산입 |
| 2.4 토요휴무제 | 실시여부 | 실시 | 목, 금요일 |
| 2.5 법적 노동조합 설립 필요성 | 필수, 권장, 필요없음 등으로 구분 | 필요없음 | 노동조합은 법으로 금지 |
| 2.6 노동쟁의 냉각기간일수 | | - | 노동쟁의는 법으로 금지 |
| 3. 공장설립환경및공공요금 | | | |
| 3.1 법정최저자본금 | | | |
| 3.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 | 20,000 | |
| 3.3 공업단지매입가(m^2) | 한국기업진출이 유망한 공업단지 내 부지 | 66 ~ 80 | 2nd Industrial City |
| 3.4 공업단지임차료(m^2) | 월, 한국기업진출이 유망한 공업단지 내 부지 | 0.02 | 2nd Industrial City 25 년간 임차, 임차료 월 선불 |
| 3.5 사무실임차료(m^2) | 월 | 20 | King Fahd Highway. 중급수준 |
| 3.6 산업용전기요금(1kWh) | 월 기본요금, 추가요금 | 0.032/kwh | |
| 3.7 산업용가스요금($1m^3$) | 월 기본요금, 추가요금 | 0.75 | 1,000,000 BTU 기준 |
| 3.8 산업용난방요금($1m^3$) | 월 기본요금, 추가요금 | N/A | 전기사용 |
| 3.9 산업용수도요금 (공업용수, 1m3) | | 0.18 | |
| 3.10 하수처리비($1m^3$) | | 1.6 | |
| 4. 조세 및 금융환경 | | | |
| 4.1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 휴일 | 투자진출시 조세 면제 여부와 그 기간 | 5 년 10 년 | 기타 부문 공업 및 농업개발부문 |
| 4.2 외국기업 법인세 (유효세율) | | 20% | |

| | | | |
|--|---|-----------------------|---|
| 4.3 외국인 개인소득세 | | 0% | 개인소득세 부재 |
| 4.4 외투기업세금감면 혜택 | | - | |
| 4.5 해외송금세 | | - | 은행 송금 서비스료 有 |
| 4.6 부가가치세 | | 0% | |
| 4.7 법인 은행대출금리 (1년) | | 6~7%(연) | 변동/담보조건. 신용도에 따라 |
| 5. 통신환경 | | | |
| 5.1 전화개통비 | 1회선 / 가입비, 장치비, 설치비 등 기타비용 | 80 | |
| 5.2 전화사용료 | 월 기본요금, 3분 (시내, 시외평상시간) | 8 | 기본요금 8\$ |
| 5.3 공중전화(시내) | 3분(평상시간) | - | |
| 5.4 국제전화(현지-서울) | 3분(평상시간) | 0.85/min | 서울 0.85\$/1분 |
| 5.5 휴대전화개통비 | 가입비 | 13.33 | |
| 5.6 휴대전화사용료 | 월 표준기본요금, 1분 (평상시간) | 9.33/0.1066 | 기본 9.33\$/ 분당요금 0.1066\$ |
| 5.7 인터넷개통비 | 가입비, 장치비, 설치비 등 기타비용 | 361 | 서비스 제공사별로 상이 |
| 5.8 인터넷사용료 | 월 기본요금, 표준속도 | 906.42 | 512kbps(AD 니) |
| 5.9 국내우편 | 일반편지, 1통(2~3페이지) | 1.2 | |
| 5.10 국제우편(현지-서울) | 일반편지, 1통, 10g 이하 | 1.5 | |
| 5.11 특급우편(현지-서울) | DHL, 1개, 1kg 이하 | 35 | |
| 6. 물류비 | | | |
| 6.1 컨테이너 내륙운송비 | FEU 기준 (FEU:40 피트 컨테이너) – 공단에서 인근항까지 | 375 | 담막 항 |
| 6.2 해상운송비 | FEU 기준 (FEU:40 피트 컨테이너) – 항구에서 상하이항, LA 항 | 5,000 | LA 항 |
| 7. 자동차 및 교통환경 | | | |
| 7.1 자동차(2000cc) 구입가 | 한국산 중형 기준, 오토기어(A/T), 에어컨 | 15,000 | 현대 소나타(2,400cc) |
| 7.2 일반휘발유(1L) | | 0.12/0.16 | 2종의 휘발유 |
| 7.3 경유(1L) | | | |
| 7.4 자동차등록비(2000cc) | | 93.3 | 현대 소나타(2,400cc) |
| 7.5 자동차보험료(2000cc) | 1년계약, 신형차, 종합보험, 신규가입차 | 517 | 현대 소나타(2,400cc) |
| 7.6 지하철(기본요금) | | N/A | 지하철 부재 |
| 7.7 시내버스기본요금) | | 0.53 | 외국인 이용은 어려움 |
| 7.8 택시(기본) | 기본요금 | 1.33 | 시간거리 병산제 시행 유 |
| 7.9 택시(추가) | 추가요금(1Km 당) | 0.426/km 0.186/min | |
| 8. 주택환경 및 공공요금 | | | |
| 8.1 [임차]중급아파트 (150m ² /월) | 침실 3개 이하, Semi-furnished | 3,000 | 외국인 전용단지 기준 |
| 8.2 [임차]중급단독주택 (150m ² /월) | 대지 500m ² 미만 및 침실 4개미만 Semi-furnished | 4,000 | 외국인 전용단지 기준 |
| 8.3 중개수수료 (월 임차료의 %) | | 135 ~ 270 | 매매가에 따라 변동 |
| 8.4 임차보증금 (월 임차료의 %) | | - | |
| 8.5 가정용전기요금 (1kWh) | 월 기본요금, 추가요금 | 0.013/kwh | ~ 2000kw-0.013 \$ 2001~3000kw-0.026 \$ 3001~4000kw-0.032 \$ |

| 9. 의료 보험 | | | |
|---|--------------------------------------|----------|--|
| 9.1 의료보험료 | 4인가족, Full Cover, 치과제외 | 2,076(년) | - 사우디인의 경우 피고용자 : 453\$ 부인 - 716\$ 자녀 - 453\$ - 외국인의 경우 피고용자 - 407\$ 부인 - 612% 자녀 - 407\$ |
| 9.2 병원진료비 |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 53.3 | |
| 9.3 병원진료비 | 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 5.3 | |
| 10. 교육환경 | | | |
| 10.1 해당 도시내 외국인 학교수 | | 10 여개 | |
| 10.2 American School (입학비, 기부금, 수업료) | 초등 1년간 | 14,133 | 입학금 1,600\$ 수업료 12,533\$ |
| | 중등 1년간 | 13,066 | 수업료 13,066\$ |
| | 고등 1년간 | 13,547 | 수업료 13,547\$ |
| 10.3 한국인 학교 (입학비, 기부금, 수업료) | 초등 1년간 | 1,760 | 수업료 1,760\$ |
| | 중등 1년간 | N/A | 중등 과정 없음 |
| | 고등 1년간 | N/A | 고등 과정 없음 |
| 10.4 현지인 학교 (입학비, 기부금, 수업료) | 초등 1년간 | N/A | 무슬림만 입학 허용 |
| | 중등 1년간 | N/A | 무슬림만 입학 허용 |
| | 고등 1년간 | N/A | 무슬림만 입학 허용 |
| 11. 레저, 오락 | | | |
| 11.1 골프장 그린피 | 비회원 18홀 1라운드 선진국(중급), 후진국(중상급) | 107 | |
| 11.2 골프장 회원권 | 매매가능 18홀 선진국(중급), 후진국(중상급) | 3,733 | 비매매/연회비 |
| 12. 호텔 | | | |
| 12.1 특급호텔(정상) - 5성급 | 싱글 1박 | 278 | Radisson SAS 호텔 기준 |
| | 트윈 1박 | 314 | Radisson SAS 호텔 기준 |
| 12.1 특급호텔(할인) - 5성급 | 싱글 1박 | 242 | Radisson SAS 호텔 기준 |
| | 트윈 1박 | 278 | Radisson SAS 호텔 기준 |
| 12.3 중급호텔(정상) - 3성급 | 싱글 1박 | 174 | Riyadh Palace 호텔 기준 |
| | 트윈 1박 | 214 | Riyadh Palace 호텔 기준 |
| 12.3 중급호텔(할인) - 3성급 | 싱글 1박 | 94 | Riyadh Palace 호텔 기준 |
| | 트윈 1박 | 122 | Riyadh Palace 호텔 기준 |

달맘 (동부지역)

| 항 목 | 조 사 품 목(기준) | 가 격(USD) | 참 고 사 항 |
|--------------------------------|----------------------------------|---------------------------------|--|
| 1. 임금 | | | |
| 1.1 사무직(일반) | 월급여(대출초임) | 1,900 | 현지 아랍인 기준 *제 3국인은 \$1,500 수준 |
| 1.2 사무직(비서) | 월급여(학력불문 초임) | 900 | 남성 기준 |
| 1.3 사무직(중간관리자) | 월급여, 한국기준 과장급 | 3,000 | 현지 아랍인 기준 |
| 1.4 생산직(일반) | 월급여(초임) | 550 | |
| 1.5 생산직(중견) | 월급여, 엔지니어급, | 3,500 | 현지 아랍인 기준 |
| 1.6 상여금 | 연간 % | - | 관련 규정 부재 |
| 1.7 추가근무수당 | 평일, 휴일 % | 1.5%(평일) 3%(휴일) | |
| 1.8 사회보장부담금 | 월급여대비 %, 연간 % (고용자부담, 피고용자부담) | 월급여의 20% 고용자 11%/ 피고용자 9% | 외국인은 2% |
| 1.9 법정최저임금 | 월급여, 시간당 (계약직 경우) | - | 최저임금 규정 부재 |
| 1.10 법정퇴직금 | | 우한 참조 | 5년↓:월급여×50%×근무기간 6년↑:월급여×100%×근무기간 |
| 1.11 명목임금상승률(%) | 입수 가능한 최근 3개년 자료 | - | 자료없음 |
| 2. 노무환경 | | | |
| 2.1 주당 법정근무시간 | | 40 시간 | 8 시간 X 5 일 |
| 2.2 출산휴가일수 | 연간 | 10 주(무급) | 산전 4주/ 산후 6주 |
| 2.3 연간국경일수 | 평균 | 1 일 | 라마단/하지 휴가 미산입 |
| 2.4 토요휴무제 | 실시여부 | 실시 | 목, 금요일 |
| 2.5 법적 노동조합 설립 필요성 | 필수, 권장, 필요없음 등으로 구분 | 필요없음 | 노동조합은 법으로 금지 |
| 2.6 노동쟁의 냉각기간일수 | | - | 노동쟁의는 법으로 금지 |
| 3. 공장설립환경및공공요금 | | | |
| 3.1 법정최저자본금 | | | |
| 3.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 | 20,000 | |
| 3.3 공업단지매입가(m^2) | 한국기업진출이 유망한 공업단지 내 부지 | | |
| 3.4 공업단지임차료(m^2) | 월, 한국기업진출이 유망한 공업단지 내 부지 | 0.02 | Dammam 2nd Industrial City 25년간 임차, 임차료 월 선불 |
| 3.5 사무실임차료(m^2) | 월 | 18 | |
| 3.6 산업용전기요금(1kWh) | 월 기본요금, 추가요금 | 0.032/kwh | |
| 3.7 산업용가스요금($1m^3$) | 월 기본요금, 추가요금 | 0.75 | 1,000,000 BTU 기준 |
| 3.8 산업용난방요금($1m^3$) | 월 기본요금, 추가요금 | N/A | 전기사용 |
| 3.9 산업용수도요금(공업용 수, $1m^3$) | | 0.18 | |
| 3.10 하수처리비($1m^3$) | | 1.6 | |
| 4. 조세 및 금융환경 | | | |
| 4.1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휴일 | 투자진출시 조세 면제 여부와 그 기간 | 5년 10년 | 기타 부문 공업 및 농업개발 부문 |
| 4.2 외국기업 법인세 (유효세율) | | 20% | 수익의 20%, 현지기업은 2.5% |
| 4.3 외국인 개인소득세 | | 0% | 개인소득세 부재 |
| 4.4 외투기업세금감면 혜택 | | - | |

| | | | |
|--|---|-----------------------|--|
| 4.5 해외송금세 | | - | 은행 송금 서비스료 有 |
| 4.6 부가가치세 | | 0% | |
| 4.7 법인 은행대출금리 (1년) | | 6~7%(연) | 변동/담보조건.신용도에 따라 |
| 5. 통신환경 | | | |
| 5.1 전화개통비 | 1회선 / 가입비, 장치비, 설치비 등 기타비용 | 80 | |
| 5.2 전화사용료 | 월 기본요금, 3분 (시내, 시외평상시간) | 8 | 기본요금 8\$ |
| 5.3 공중전화(시내) | 3분(평상시간) | - | |
| 5.4 국제전화(현지 - 서울) | 3분(평상시간) | 0.85/min | 서울 0.85\$/1분 |
| 5.5 휴대전화개통비 | 가입비 | 13.33 | |
| 5.6 휴대전화사용료 | 월 표준기본요금, 1분 (평상시간) | 9.33/0.1066 | 기본 9.33\$/ 분당요금 0.1066\$ |
| 5.7 인터넷개통비 | 가입비, 장치비, 설치비 등 기타비용 | 361 | 서비스 제공사별로 상이 |
| 5.8 인터넷사용료 | 월 기본요금, 표준속도 | 906.42 | 512kbps(AD 니) |
| 5.9 국내우편 | 일반편지, 1통(2~3페이지) | 1.2 | |
| 5.10 국제우편(현지-서울) | 일반편지, 1통, 10g 이하 | 1.5 | |
| 5.11 특급우편(현지-서울) | DHL, 1개, 1kg 이하 | 35 | |
| 6. 물류비 | | | |
| 6.1 컨테이너 내륙운송비 | FEU 기준 (FEU:40 피트 컨테이너) – 공단에서 인근항까지 | 375 | 담함 항 |
| 6.2 해상운송비 | FEU 기준 (FEU:40 피트 컨테이너) – 항구에서 상하이항, LA 항 | 5,000 | LA 항 |
| 7. 자동차 및 교통환경 | | | |
| 7.1 자동차(2000cc)구입가 | 한국산 중형 기준, 오토기어(A/T), 에어컨 | 15,000 | 현대 소나타(2,400cc) |
| 7.2 일반휘발유(1L) | | 0.12/0.16 | 2종의 휘발유 |
| 7.3 경유(1L) | | | |
| 7.4 자동차등록비(2000cc) | | 93.3 | 현대 소나타(2,400cc) |
| 7.5 자동차보험료(2000cc) | 1년계약, 신형차, 종합보험, 신규가입차 | 517 | 현대 소나타(2,400cc) |
| 7.6 지하철(기본요금) | | N/A | 지하철 부재 |
| 7.7 시내버스기본요금) | | 0.53 | 외국인 이용은 어려움 |
| 7.8 택시(기본) | 기본요금 | 1.33 | 시간거리 병산제 시행 유 |
| 7.9 택시(추가) | 추가요금(1Km 당) | 0.426/km 0.186/min | |
| 8. 주택환경 및 공공요금 | | | |
| 8.1 [임차]중급아파트 (150m ² /월) | 침실 3개 이하, Semi-furnished | 2,000 | 외국인 전용단지 기준 |
| 8.2 [임차]중급단독주택 (150m ² /월) | 대지 500m ² 미만 및 침실 4개미만 Semi-furnished | 2,900 | 외국인 전용단지 기준 |
| 8.3 중개수수료 (월 임차료의 %) | | 135 ~ 270 | 매매가에 따라 변동 |
| 8.4 임차보증금 (월 임차료의 %) | | N/A | |
| 8.5 가정용전기요금 (1kWh) | 월 기본요금, 추가요금 | 0.013/kwh | ~ 2000kw-0.013\$ 2001~3000kw-0.026\$ 3001~4000kw-0.032\$ |
| 9. 의료·보험 | | | |

| | | | |
|---|---------------------------------------|----------|---|
| 9.1 의료보험료 | 4 인 가족, Full Cover, 치과 제외 | 2,076(년) | - 사우디인의 경우 피고용자: 453\$ 부인: 716\$ 자녀: 453\$ - 외국인의 경우 피고용자: 407\$ 부인: 612\$ 자녀: 407\$ |
| 9.2 병원진료비 |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 53.3 | |
| 9.3 병원진료비 | 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 5.3 | |
| 10. 교육환경 | | | |
| 10.1 해당 도시내 외국인 학교수 | | 약 3 개 | |
| 10.2 American School (입학비, 기부금, 수업료) | 초등 1년간 | 3,550 | Int'l School 기준 |
| | 중등 1년간 | 3,745 | Int'l School 기준 |
| | 고등 1년간 | 5,090 | Int'l School 기준 |
| 10.3 한국인 학교 (입학비, 기부금, 수업료) | 초등 1년간 | N/A | |
| | 중등 1년간 | N/A | |
| | 고등 1년간 | N/A | |
| 10.4 현지인 학교 (입학비, 기부금, 수업료) | 초등 1년간 | N/A | 무슬림만 입학 허용 |
| | 중등 1년간 | N/A | 무슬림만 입학 허용 |
| | 고등 1년간 | N/A | 무슬림만 입학 허용 |
| 11. 레저. 오락 | | | |
| 11.1 골프장 그린피 | 비회원 18홀 1 라운드 선진국(중급), 후진국(중상급) | | 골프장 부재 |
| 11.2 골프장 회원권 | 매매가능 18홀 선진국(중급), 후진국(중상급) | | |
| 12. 호텔 | | | |
| 12.1 특급호텔(정상) - 5 성급 | 싱글 1 박 | 225 | Sheraton 호텔 기준 |
| | 트윈 1 박 | 271 | Sheraton 호텔 기준 |
| 12.1 특급호텔(할인) - 5 성급 | 싱글 1 박 | 185 | Sheraton 호텔 기준 |
| | 트윈 1 박 | 230 | Sheraton 호텔 기준 |
| 12.3 중급호텔(정상) - 3 성급 | 싱글 1 박 | 106 | Dammam Palace 호텔 기준 |
| | 트윈 1 박 | 139 | Dammam Palace 호텔 기준 |
| 12.3 중급호텔(할인) - 3 성급 | 싱글 1 박 | 67 | Dammam Palace 호텔 기준 |
| | 트윈 1 박 | 80 | Dammam Palace 호텔 기준 |

7. 노무관리

가. 개요

- 사우디 인구는 2005년 기준 23.1 백만명(자국인 16.85 백만명, 외국인 6.3 백만명)으로 매년 2.5~3%의 높은 인구증가율을 기록 중이며, 청년층 인구비율이 높아지면서 신규 노동수요는 계속 증가하지만 일자리 공급은 적어 실업률은 계속 증가추세이다.
 - 인구 증가율: 2.6%(2004~2005), 10.8%(2000~2005)
 - 청년층 인구비중(2005년): 15세 미만 45.1%(사우디인 49.8%), 20세 미만 55.4%(사우디인 61.4%)
 - 실업률: 정부발표 실업률은 2005년 6.9%, 2004년 7.0%이나 실제 실업률은 15%이상인 것으로 추정
- 사우디인의 경우 고교와 대학 졸업자들의 기술 수준과 의욕이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노동인력의 상당 부분이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
 - 민간 부문 노동 인력 총 5,362 천명 중 사우디인은 11%인 591 천 명에 불과하여 사우디 인의 민간 부문 근로 의욕이 크게 낮은 편임.

나. 사우디인 의무 고용제(Saudization)

- 사우디는 1970년대 경제개발 초기단계부터 숙련 노동자 부족으로 외국 인력에 크게 의존하여 왔는데, 사우디인의 실업률 증가와 청년층 인구확대 등에 따라 외국 인력을 사우디 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기업의 사우디인 고용의무제(Saudization)를 도입하였다.
- 기업의 고용인구중 사우디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Saudization 비율을 1999년 44.2%에서 매년 5%씩 증가하여 2004년 53.2%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청년 실업의 지속적 증가 추세에 따라 2005년 9월 노동법 개정을 통해 사우디인 의무고용 비율을 75%로 확대함. 다만, 사우디 인력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직종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006년 4월 노동부장관은 제빵 업종, 여성 재봉사, 남성 재단사, 목수, 알루미늄 공장, 기계 및 자동차 공장, 세탁소, 농장, 농업 및 가축 사육장, 트럭운송, 주유소, 약국, 안경점 등에서의 사우디 인 고용의무 비율을 30%에서 10%로 하향 조정키로 발표하였으며, 현재 건설업종은 10%임
- 사우디인 의무 고용제는 현지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노동법 개요

- 노동법은 1969년에 제정된 노동 노동자법(Labour and Workers Law)이 있으며, 동 법은 노동자와 고용주의 권리, 노동계약의 기본조건, 해고, 노동분쟁 해결절차 등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 2005.9.26.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보호, 근로조건 개선, 자국인 의무고용제(Saudization) 비율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이 각료회의(의장: 국왕) 의결을 거쳐 전면 개정되어 2006.4.23. 일자로 발효.
 -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 명문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문서로 작성
 -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련 제비용의 고용주 부담의무를 명문화
 - 여성근로자 종사 업종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제도 개선, 명예퇴직금 제도 신설, 턱아지원 등을 명문화
 - 휴가제도 개선: 5년 이상 장기근무자의 연간 유급 휴가일수를 21일에서 30일로 상향 조정하고, 병가일수를 90일에서 120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20일간의 무급휴가를 부여.
 - 장애인의 고용개선: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기업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의무고용비율도 전체근로자의 2%에서 4%로 상향 조정.
 - 퇴직금 산정 명확화: 퇴직금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
 - 고용사무소 설치규정 신설: 노동부로 하여금 고용사무소를 설치하여 구직자로부터 구직 등록, 기업체로부터 구인등록을 받아 취업알선을 유도하는 무료서비스를 제공.
 - Saudization 비율 상향 조정: 2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우디인 의무고용제(Saudization)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적용비율도 75%로 상향조정. 다만,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사우디인으로 대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이 비율을 낮추어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라. 노동조합

- 사우디는 이슬람교 율법인 샤리아에 의해 단체결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협회 등의 조직구성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1958년에 금지되었고 파업도 금지되어 있어 노조를 통한 쟁의, 단체교섭 등은 없으며 단지 노동부에서 취업자들의 권리보호 조치만을 취하고 있다.
- 그러나, 노동분규 해결을 위해 2002년 4월에 100명 이상의 사우디인을 고용한 기업에 노동분쟁 조정위원회(labor committee)를 조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마. 파트타임과 임시직

- 임시고용에 대한 노동 관계 법규는 없으나 임시 고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임시 고용한 경우에도 정식 고용과 같이 해석한다.
- 파트타임 일로 외국인에게 노동비자가 주어지지 않는다.
- 노동비자를 받게 해 준 스폰서 업체가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이다.

바. 외국인의 고용

- 사우디 정부는 사우디 인구의 증가와 공공 부문의 증가 인력 흡수 제약에 따라 가능한 한 사우디 인력을 많이 채용하도록 장려(Saudization)하면서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신청 시에 사우디인의 직업 훈련에 대한 계획서를 반드시 첨부도록 하고 있다.

- 사우디 정부는 과거 사우디인 의무고용제(Saudization)를 준수하지 못해도 크게 제재를 가하지 않았으나, 자국인 실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둘 정책을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
 -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벌금 부과, 신규 외국노동력 도입 시 노동허가 갱신에 제약
 - 노동부 직원이 파견 나가있는 사우디 투자청은 투자허가 시 사우디 인화를 중요한 요소로 간주함
 - 사우디인 고용비율이 높으면 사우디 개발 기금(SIDF)으로부터의 차입에도 유리
- 외국인 고용제한 직종(노동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직종)
 - 인사관리자, 재무관리자, 경매인, 통관인, 메신저, 경비원, 현금출납원 등 13 개 직종
 - 화물하역, 보험 관련 모든 일자리는 기존 노동허가의 갱신 불허
- 다음 직업에 대한 노동허가 갱신기간이 통상 1년이다.
 - 일반 관리자, 사무원, 경리, 전화 교환원, 창고 관리원, 구매 담당자, 타이피스트, 모든 관리직, 리셉셔니스트 등 14 개 직종

사. 임금 수준

- 공무원의 경우 외국인의 취업이 금지되어 있음. 공공부문 고용은 경력과 자격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며, 민간부문 임금은 시장에서 결정되지만, 사우디가 사회적, 종교적 제한이 있어 외국인 임금은 높은 수준이다

사우디 직종별 월평균 임금현황 : 2005년 기준

(단위: SAR)

| 직업 | 사우디인 | 외국인 |
|------|--------|--------|
| 행정직 | 11,751 | 10,201 |
| 기술직 | 7,343 | 3,814 |
| 사무직 | 4,671 | 2,912 |
| 판매직 | 3,724 | 1,758 |
| 생산직 | 4,147 | 1,225 |
| 서비스직 | 3,054 | 985 |

자료원: EIU. (주) 1 SAR = US\$ 0.267

- 현 압둘라 국왕의 취임(2005년 8월 1일) 직후, 15년 간 동결되었던 공무원 급여를 2005년 10월 4일 부로 15% 일괄 인상하였다.

사우디 공무원 최저 임금 현황

(단위 : SAR)

| 구 분 | 등급 | 최저 월급여 | 등급 | 최저 월급여 |
|-----------|------|--------|------|--------|
| 일반공무원 | 1 | 2,530 | 15 | 22,500 |
| 서기 | 31 | 1,732 | 33 | 3,812 |
| 교육공무원 | 1 | 7,157 | 6 | 13,237 |
| 법무공무원 | 전속판사 | 8,970 | 법원장 | 26,945 |
| 대학교수 | 조교 | 8,300 | 교수 | 20,460 |
| 검찰 및 조사기관 | 부관 | 6,415 | 부기관장 | 28,750 |
| 의료기관 | 의사보조 | 5,827 | 컨설턴트 | 17,980 |

자료원 : Ministry of Civil Service, (주) 1 SAR = US\$ 0.267

아. 퇴직금

- 퇴직금지급은 노동법에서 다음과 같이 의무적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다.
 - 1년 미만 근무 시: 없음.
 - 1년 이상 5년 이하 근무 시: 월 급여의 1/2 X 근무년수
 - 5년 이상 근무 시: 5년까지는 월 급여의 1/2 x 5년, 6년째부터는 연 1개월 치 월급 지급

자. 휴가 제도

- 유급휴가: 1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시 연 15일, 5년 이상 근무 시 연 30일의 유급휴가 실시.
- 병가: 최초 1개월은 임금의 100%, 2개월~3개월은 임금의 3/4를 각각 지급하며, 연속 3개월까지, 비연속은 연간 120일간 유급 병가를 인정.
- 기타: 본인의 결혼 시 3일, 자녀출생, 배우자 혹은 본인의 직계존속 사망 시 1일의 휴가.
- 휴가수당: 일정한 금액은 없으며 고용계약서상에 언급될 경우에 지원.

차.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기타 복지혜택

- 연간 상여금은 임의이지만 라마단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 외국인 숙련 노동자에 대한 복지는 보통 주택, 학교, 연간 휴가 항공권, 휴양여행 등을 포함한다.
- 고위직의 외국인피용자가 받는 복지는 기본 임금의 80~100%에 달하며, 고용 계약에 사우디 정부가 피용자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고용주가 해당 세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흔하다
-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는 숙박과 자국-사우디간의 교통비를 필요로 한다.

카. 노동 시간

- 노동시간은 노동 법규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8시간이며, 라마단 기간에는 1일 6시간, 1주 36시간이 상한임.
- 금요일은 휴무이고, 목요일은 반나절만 일함.
- 정부기관은 목요일과 금요일 전일을 휴무
- 초과근무수당은 정규수당의 1.5배

타. 해고

- 고용주는 3개월의 수습 기간에 임의로 해고할 수 있으며, 3개월 후 해고에는 적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고용계약 기간 중의 해고는 노동자가 노동사무소에 항의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 시의 고용종료는 문제가 없다.
- 고용기간이 확정된 고용계약의 해지는 노동자의 과오나 노동자의 노동사무소(Labor Office)에 대한 통지에 의해서 가능. 고용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고용계약의 해지는 월급 노동자의 경우 30 일의 사전통지, 기타 노동자의 경우 15 일의 사전통지가 필요하다
- 고용계약이 종료된 노동자는 퇴직급여를 받게 됨. 통상 고용주는 노동자를 채용장소로 되돌려 보낼 책임이 있다.

파. 사회보장제도

- 1969년에 제정된 사회보험법(Social Insurance Act)은 직업병, 산업재해 및 연금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반사회보험조합(GOSI : General Organization for Social Insurance)을 설립하였다.
- 2002년 8월에 보건부(Health Ministry)는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을 의무화하는 건강보험 제도(Co-operative Health Insurance Scheme)를 발표하였다.

하. 사회보장보험

- 사회보장보험은 산업 재해와 연금 부문으로 나뉘며 19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이 의무적으로 출연하여 운영도록 하고 있다.
 - 연금은 사우디인에게만 적용되며,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2001년 3월부터 산재+연금 출연 비율을 15%로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하여 18%로 올리고 고용주와 피용자가 동일하게 분담도록 함

사회보장세율

| 피고용자 | 비위험 직종 | | 위험 직종 | |
|--------------|--------|--------|-------|--------|
| | 고용자부담 | 피고용자부담 | 고용자부담 | 피고용자부담 |
| 사우디인 (산재+연금) | 8% | 5% | 10% | 5% |
| 비사우디인(산재) | 2% | - | 2% | - |

- 산재보험 수혜범위
 - 직업병 혹은 단순 사고 시: 100% 의료비
 - 사고로 인한 근무 불가 시
 - 1주 내: 100% 임금 지불
 - 1주 후-12주: 75% 임금 지불
 - 12주 후-52주: 50% 임금 지불
 - 사고로 인한 신체 불구 시(상해 정도에 따라 상이)
 - 오른손 불구 시: 사망 시 지급액의 35%
 - 원손 불구 시: " 25%
 - 양손 불구 시: " 80%
 - 시력 상실 시: " 100%

- 사고로 인한 사망 시
 - 숙련공: 27,000 리yal
 - 미숙련공: 18,000 리yal
 - 견습공: 12,000 리yal
- 종교에 따른 보상 폭 다름 (이슬람교도>기독교도>불교도>무종교)

□ 의료 보험

- 의료 보험은 사회 보험으로서의 강제 보험은 아니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노동법 제 144 조)
- 외국인근로자 의료보험 제도
 - 적용 대상: 사우디내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와 부양가족, 다만 정부 기관에 고용된 자는 제외
 - 적용단계
 - 1 단계 (2006.6. – 2007.5): 500 인 이상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
 - 2 단계 (2007.6. – 2008.5): 100 인 – 500 인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
 - 3 단계 (2008.6. –): 100 인 미만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 및 가정부 등 사고용인
- 사우디인에 대한 의료보험제도
 - 사우디 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료 보험이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나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료 보험이 의무화되고, 보건부 산하 정부관리 병원이 민간 병원으로 전환 되는 2008년 하반기 이후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
 - 사우디 인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로 의료 보험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사우디 정부는 국가공동기금(National Cooperative Fund)을 조정,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

8. 조세제도

가. 법인세

1) 개요

-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인 출자법인은 법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전액 내국인 출자기업 및 합작기업의 사우디 지분 해당은 자카트(Zakat)만을 납부한다.
 - Zakat : 이슬람교회법에 의거한 일종의 종교세로 재산 및 소득에 부과되는 직접세임.
- 사우디아라비아 국민과 GCC 회원국민에게 부과되며, 별도의 개인소득세는 없다.
- 현재까지는 외국인합작기업은 용역업과 건설업은 5년, 제조업과 농업은 10년간 면세. 면세는 향후 폐지될 것이며 대신 신규 프로젝트의 초기 손실이 이연되어 그 뒤의 과세 대상 이익에서 공제 처리하게 하는 세법 개정이 있을 예정이다.
- 외국인투자자 세율은 이전 30%에서 2004년에 20%로 인하하였다.
- 납세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임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며, 동 증명서가 있어야 비자발급, 외국인고용 또는 계약 입찰이 가능하다.

- 그러나 통상 계약액의 10%인 계약액 최종 지급분 수령에는 세금 완납증명서가 필요한데, 이 증명서는 자카트 소득세국이 납세신고를 검토하여 세금정산이 완결되어야 발급된다.
- 조세체계는 limited-liability company나 joint-stock company에 대한 투자에 유리함. 이 형태의 회사들은 사우디 내 어디서나 지사 설립이 가능하고 세금 신고도 지사들이 한 법인에 속하면 통합해서 단일신고만 하면 된다.
- limited-liability company 형태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면세의 수혜대상이지만 외국기업의 지사는 면세대상이 아님. 본사의 비용 할당이나 관리비는 세공제 대상이 아니며 납세신고의 지사 비용들은 가끔 세무당국의 검사를 받는다.
-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세금을 회피하지 않는 경향이며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은 매출액의 15%인 이익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한다.

2) 법인세율

- 외국인 합작기업의 외국인지분은 사우디 내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 비 GCC국가 및 joint-stock company에 대한 투자자의 세율은 20%. 단, 석유부문은 85%, 가스부문은 35%이다.
- 과세는 이익이 유보되든 배당되든 연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 합작투자기업의 사우디인 투자자 또는 GCC 회원국 투자자는 고정자산에 투자되지 않은 자본금에 대해 2.5%의 고정율로 Zakat를 부담한다. 그러나 그 이외의 투자자는 소득세의 적용을 받는다.
- Zakat 납부대상에는 자본금, 순이익, 유보이익, 일반적립금(특정 부채와 무관하고 12개월 이상 유지되는 것)이 포함되며, 고정자산은 Zakat 의 과세대상에서 공제된다.
- Zakat 납부대상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이익 중 사우디 투자자 지분에 대하여 2.5%의 Zakat가 가 적용됨.
- 납입세액을 축소하는 방편으로 기업들은 빈번한 재등록으로 자본금을 축소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기업확장을 위해서 감자를 하지 않고 증자시키는 경향이 많다.

3) 과세소득

- 과세소득은 총 수익이 대상으로 사우디 내의 사업에 관계가 있는 시설의 이용이나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수입은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 수익은 완공기준이 아니라 공정진행기준으로 인식된다.
- 사우디 내 자산 매각에서 발생한 이익은 신고해야 하나 다만 해외자산매각 이익은 통상 신고하지 않는다.

- 해외소득은 해외 활동이 사우디 내 활동과 같은 시기에 같은 법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면 과세 대상이며, 현실적으로 과세가 어렵긴 하지만 사우디 거주자인 외국법인의 해외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이다.
- 외국법인이 사우디 내에서 현지 대리인을 통해 영업할 경우 해외에서 사우디 내의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면 공급계약이 사우디 내의 서비스(플랜트의 경우 설치 등)를 수반할 경우 과세대상이다.
 - 공급계약에 사우디 내 서비스를 적시하고 그 가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가액이 과세 소득임. 서비스의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각 종류의 서비스에 대해 각각 계약액의 10%가 서비스 가액으로 의제 적용됨.
 - 공급계약이 사우디 내 서비스를 수반하지 않으면 물품공급이 사우디 내에서 이루어 지더라도 비과세임.
 - 물품 공급부분과 사우디 내 서비스 부분을 별도의 계약으로 분리하면 물품 공급부분을 과세대상에서 뺄 수 있을 것임.
- 법인세 과세 공제대상은 사우디 내에서 발생한 모든 영업비용 즉, 급여, 서비스요금, 임차료, 감가상각비, 외국투자자에 대한 이자, 외국 기술과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대한 지불, 회사간 수수료 등이다. 단, 외국투자자에 대한 이자는 15%의 의제이익에 대해 과세된다.
- 배당금지급은 공제되지 않는다.
 -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은 원천 과세되지 않고 개인소득세의 형태로 사후에 과세됨
- 합작기업의 로열티 지급은 전액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며, 로열티 지급 시에 로열티 지급 기업은 법인세를 원천 징수하여 Zakat/ 소득세국 (Department of Zakat and Income Tax: DZIT)에 신고해야 한다.
- 납부 세금은 사우디 내외지급을 막론하고 공제되지 않는다.
 - 사우디의 limited-liability company가 외국에서 영업하면서 세금을 낸 경우 그 세금에 대해 과세대상 공제를 신청할 수는 있음.
 - 증빙이 없는 비용, 계약액의 5%를 넘는 대리인수수료, 회사 영업과 무관한 비용, 일반 적립금, 본사 관리비용 할당 등은 공제되지 않음.

4) 감가상각

-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감가상각이 인정된다.

| Group No. | 내 역 | 감가상각율 |
|-----------|---|-------|
| 1. | Fixed Buildings. | 5 % |
| 2. | Industrial and agricultural movable buildings. | 10 % |
| 3. | Factories, machines, engines, hardware and software (computer software) and equipment, including passenger cars, and cargo vehicles. | 25 % |
| 4. | Expenses for geological surveying, drilling, exploration, and other preliminary work to exploit and develop natural resources and their fields. | 20 % |
| 5. | All other tangible and intangible depreciable assets. | 10 % |

5) 납세 기일

- 과세대상자가 세무당국에 서양력(Gregorian Calendar)에 따라 납부한다는 의사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이슬람력(Hegira)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과세는 발생한 수익을 대상으로 하는 발생주의를 따른다
- 납세신고는 회계년도 말 후 2.5 개월 내에 이루어짐. 신고는 6개월 연장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연장신청 시 잠정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잠정세금이 최종 정산 세액에 10%이상 미달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6) 자본세(capital tax)

- 자본세는 없으며, Zakat 가 자본세 성격임.

7) 자본이익의 처리

- 사우디 내에서 팔린 자산의 자산이익은 총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 사우디 외에서 발생한 자산이익은 일반적으로 신고되지 않음.
- 사우디 합작회사의 지분을 매각한 외국법인은 지분매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Zakat/소득세국의 계산식: 자본이익 = 합작회사의 3년간 평균이익/매출액x 납입자본금
- 추가로 지분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 중 높은 것을 근거로 정산
- 면세기간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음. 즉 면세는 합작기업의 외국인투자자 지분 해당 이익에 적용되는 것이지 본사가 획득한 지분매각 이익에는 적용되지 않음.

8) 배당 과세

- 외국 주주의 배당금은 원천 과세되지 않고, 외국주주 지분의 순이익에 대한 30%의 세금은 지급 배당금에서 공제된다.

9) 이자에 대한 세금

- 없음.

10) 로열티와 수수료에 대한 세금

- 외국 기업(보험사 포함)으로서 사우디 내에서 별도로 기장하지 않고 DZIT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은 사우디 내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소득의 15%라는 정상 법인 세율로 의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컨설턴트 수수료나 경영서비스 수수료는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한다.
- 외국기업에 하청을 주는 사우디 기업은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한다.

- 원천징수 대상 외국기업은 원천 징수되는 세금을 발주자가 모두 부담하게 하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키거나 적어도 원천 징수된 세금이 실제로 세무 당국에 납부되었다는 증빙을 요구하게 된다.
- DZIT는 사우디 기업이 외국주주나 제 3 자에게 계약에 의해 지급하는 것을 예의 주시하고 전액을 과세대상인 이익의 배당으로 간주하기도 함. 이 위험을 피하려면 계약 하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되 '면허', '로얄티', '특허', '상표권' 등의 용어를 피해야 할 것임.
- 특수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지급되는 기술용역 수수료는 15%의 이익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우디 기업의 회계 년도 종료 후 2.5 개월 이내에 원천 징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DZIT는 세금연체에 25%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세대상 수입을 누락하면 25%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11) 이중과세방지협정

- 사우디 합작기업의 모든 세금 부담이 외국 파트너에게 떨어지지만 미국 국세청은 합작 기업의 외국파트너 지분 비율에 따라서만 조세를 감면한다.
- 1992년 내각 결의로 재무 국가 경제부 주관으로 미국, 일본, 캐나다, 터키, 중국, 아르헨티나, 독일, 기타 EU 국가, 그리스와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나, 추진은 지지부진하다.
- 미국과는 2000년 초에 항공사와 해운회사의 활동에 국한하여 협정을 맺었으며, 이에 따르면 두 나라의 해당 업종 회사들의 국제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상대방 국가의 과세로부터 면제되고 있다.

12) 기업간 비용

- 기술, 엔지니어링, 연구 등의 비용은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였고, 고정자산 가치의 증가나 재고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낳지 않으며, 현지에서 과세대상 이익을 낸는데에 쓰인 것이라면 비과세 대상임; 이 비용은 사우디 계약과 관련하여 일하는 기술인력의 급여나 여비 등 직접비용에 국한된다.
- 일반간접비용의 지급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13) 지역경영회사

- 외국공급자의 물품을 공급하는 현지 공급자를 지원하는 기술서비스 또는 과학서비스 사무소처럼 상업활동 면허가 없는 지역사무소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 사무소의 국외 소득이나 국외본사로부터 지원되는 자금은 비과세 대상이다.
 - 매출세, 판매세, 종량세: 판매세, 소비세, 인지세가 없음
 - 기타조세: 일부 법적 서류에는 명목적인 세금이 붙음.

- * 고용주는 급여와 특정 복지혜택을 기준으로 하는 사회보험료를 사우디 근로자의 경우 8%, 비 사우디 근로자의 경우 2%를 납부하여야 함.
- * 2001년 3월, 사회보험일반기구(General Organization for Social Insurance)는 출연금을 단계적으로 3년에 걸쳐 18%로 올리기 시작하였음.
- * 고용주와 근로자는 출연금을 동등하게 부담.

나. 개인소득세

1) 개요

- 사우디에서 영업하는 사우디인과 GCC 회원국민은 이슬람법에 따라 재산 및 소득에 대하여 2.5%의 Zakat 을 납부하여야 한다.
- 개인고용에 의한 외국인의 개인소득은 1975년 이래 비과세이지만 이들 비 사우디인, 비 GCC 회원국민이 자영업에서 버는 소득은 과세대상이다.

2) 거주

- 외국인 근로자는 사우디 내의 거주기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개인 급여에 대해 비과세이지만 외국인 자영업자가 자영업에서 버는 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3) 과세대상 소득

- 사우디인은 자본(판매용이 아닌 자산은 제외)과 자본소득, 가축, 작물, 사업, 산업, 작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 이익, 상업활동과 금융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자산과 금전적 재산 수입, 배당에 대해 zakat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조업이나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zakat 납부자는 적절한 회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른 자들은 인정과세 대상이다.

4) 개인소득세율

- 누진세율로 다음과 같음

개인소득세율 : 2006년

(단위 : SR)

| 소득 | 소득세 |
|-----------------|-------------------------|
| 0 – 16,000 | 소득 * 5% |
| 16,001 – 36,000 | 800 + (소득-16,000)*10% |
| 36,001 – 66,000 | 2,800 + (소득-36,000)*20% |
| 66,001 이상 | 8,800 + (소득-66,000)*30% |

-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비과세이나, 외국인자영업자는 소득세 법에 적용됨.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외환 관리 개관

- 1966년 은행 관리법에 따라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사우디 통화청(Saudi Arabian Monetary Agency: SAMA)을 설립, 사우디 리얄화의 환율관리 및 통화관리를 전담케 하고 있다.
- 자동변동환율을 채택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거의 고정환율에 가깝도록 환율안정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사우디 리얄(SR)은 IMF의 특별인출권(SDR)에 연계되어 있으며 1달러 당 3.75 SR에서 수년간 안정되고 있다.
- 개인 재산권을 존중하는 이슬람법에 의거, 이스라엘과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불문하고 자금의 국외이동, 외환보유, 반입, 반출에 관한 규제는 없으며 외화계정 개설이 자유롭고 무역 외 지급과 자본거래에 대한 제한도 없다.
- 다만, 중앙은행인 통화청은 상업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회사가 국내 은행에 개설한 외화 당자계좌를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 은행은 사우디 화폐의 반출을 통화청으로 보고해야 한다.
- 중앙은행(통화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제은행 활동
 - 국내은행이 채권을 해외에서 발행하는 경우
 - 국내은행이 국내외에서 리얄화 표시 신디게이트 론을 주선하고 외국은행을 참가시키는 경우
 - 국내은행이 해외에서 리얄화 표시 신디게이트 론에 참가하거나 비거주자를 위한 외국통화 표시 신디게이트 론에 참가하는 경우
 - 역외은행이 사우디 내에서 리얄화 표시 신디게이트 론에 참가하는 경우

나. 자본의 유입과 송금

- 투자기업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상업등기 전에 국내은행에 예치되어야 하며, 현지 공인회계사가 필수자본금의 유지여부를 매년 감시한다.
- 갑자나 회사의 청산은 투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고 세금 미납이 없다는 증빙서를 제출하면 투자자본의 본국 송금에는 제한이 없다

다. 이익 송금

- 기업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이익 배당의 송금에 대한 규제는 없다

라. 차입금 반입과 상환

- 해외 차입 시 제한이나 제출할 서류도 없으며, 해외차입금 원리금 지급은 제한이 없다.

마. 로열티와 수수료 송금

- 제한은 없으나 세금문제가 수반된다

바. 무역대금 지급

- 제한이 없음

사. 결제방식

- 무역대금 결제방식: L/C, T/T, 기타에 의한 개략적인 구성비중을 살펴 보면 L/C와 비L/C(T/T, D/P 등) 비중은 50:50 정도이다. 사우디와 거래국가의 관행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L/C와 T/T가 90% 이상인 반면, 구미선진국가는 D/P 또는 D/A가 50% 이상을 보이고 있다.
- 사우디 은행이 발급한 신용장에 대해 제3국 은행이 사우디 은행의 신뢰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나 서로 다른 공휴일 시스템과 종교 휴일 등의 관계로 AT SIGHT의미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고, 사우디 은행의 신속치 못한 업무처리로 수일씩 지급 지연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 현지주재 아국상사 및 아국의 경쟁국인 일본, 대만 기업이 일상적으로 수용하는 무역 대금 결제방식은 일반 상업거래(COMMERCIAL BASE) 시 L/C가(T/T포함) 보통이며 외상 거래를 기피하고 있으나, 유럽 국가들의 경우 D/P,D/A 등 외상 거래를 기피하지 않는다. 국가별 외환관리법 및 거래품목에 따라 연불수출 등의 방식이 선호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 소비재 거래의 경우에는 L/C(T/T포함)가 대부분이다.

아. 은행신용도

- 제3국 은행의 보증요청 필요성이 전혀 없을 정도로 현지 은행 L/C에 대한 신뢰도는 문제가 없으며 약간의 수수료만 필요하다. 사우디 은행은 모두 주식회사(유한책임) 형태로서 사기업이며 국가가 지불을 보증하는 곳은 국립은행뿐이다.
- 사우디 은행의 대부분은 영국, 미국, 화란, 프랑스 등과의 합작회사의 형태로서 아국 지상사나 외국회사들이 사우디업체와 거래에 있어서 은행의 신용도 자체를 문제 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자. 현지 자금조달 방법(대출)

- 단기금융
 - 예금의 대부분이 당좌계좌이어서 은행여신은 단기금융이 대부분이다. 상업은행들의 당좌대월이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으로서 금융비용이 저렴하고 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 외국인 회사가 상업은행의 당좌대월을 이용하려면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필수적이며, 팩토링은 허용되나 잘 이용되지 않고 있다.

- 중장기금융
 - 중장기 금융은 정부금융기관인 사우디산업개발기금(Saudi Industrial Development Fund: SIDF)과 공공투자기금(Public Investment Fund: PIF)이 주로 담당하여 왔는데, 2000년 4 월의 외국인투자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지분이 100%인 기업도 SIDF 자금을 최초 투자비용의 50%까지 차입할 수 있다. 현재 SIDF는 재원을 자체 조달하고 있다.
 - SIDF 외에 4 개 정부금융기관(부동산개발기금, 사우디농업은행, 사우디신용은행, PIF)가 여신을 공여하지만 외국기업에의 여신은 취급하지 않고 있다.
 - 외국은행이 사우디아라비아 법인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는 없다. 사우디 은행이 Riyal貨 표시 신디케이트론에 외국금융기관을 참여시키려면 중앙은행인 SAMA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대부분 승인이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대형 신디케이트 론에는 외국은행들이 참여하고 있다.
 - 일부 은행들은 고객을 위해 금리스왑도 하고 있다.

- 리스
 - 리스가 이슬람금융방식인 이자라(Ijara) 계약으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자라는 금융기관이 새 공장이나 자본재를 소유하게 되고 기업은 그 자산을 운영하면서 은행에 임차료를 내는, 리스계약과 동일한 것으로서, 모든 은행과 대형 소매상들이 취급하고 있는데 특히 이슬람금융기관들이 많이 다루고 있다.
 - 일본 오릭스와 사우디 인베스트먼트 뱅크(Saudi Investment Bank), 세계은행의 IFC가 합작출자한 사우디오릭스리스회사(Saudi Orix Leasing Company: SOLC)가 2000년 초에 설립되어 사우디 중앙은행의 지침에 따라 주로 경공업 방면의 중소기업에 중기 리스를 제공하고 있다.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 특성

가. 소비자 특성

- 소비자 계층이 다양함으로 인해 고가품, 저가품 시장이 공히 존재하며 각각 수요 기반을 달리하고 있다. 종류층 이상 사우디 인들은 고급 브랜드의 제품을 선호하는 반면에 전 인구의 1/3 이상인 외국인 노동자 및 사우디 저소득층은 저가품을 찾고 있다.
- 이러한 현상은 사치품, 전자제품 등 일반상품뿐 아니라 기계 및 공구, 각종 산업용 자재에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사우디는 가격시장으로서의 성향이 강하므로 가격경쟁력 강화가 진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 아울러 순수 사우디인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9%, 인구의 70%이상이 30세 이하에 분포 되어 있어 향후 이들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 비즈니스 성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 한국상품 인지도

- 전반적인 한국상품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 한국상품은 품질 면에서 유럽, 미국, 일본과 비교해서 같거나 약간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격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특히, 삼성, 현대, LG, 대우 등 우리 대기업의 기업인지도가 높아 이들 제품이 한국상품 전체의 인지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2002년 월드컵 등으로 한국에 대한 인지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으며, IT, 자동차, 조선 분야 선진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 한국상품이 도전해 직면해 있는 국가는 중국으로서, 중국은 최근 품질향상이 크게 개선되고 저렴한 생산원가를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중국이 사우디 수입시장에서 급격히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다. 유통 채널

- 일반적인 상품의 유통채널은 ① 제조업자→에이전트(수입업자)→유통업자→소매업자→소비자의 경로나 ② 제조업자→유통업자→소매업자→소비자 또는 ③ 제조업자→에이전트(수입업자)→유통업자→소매업자→소비자 등 유통구조가 다양하다.
- 외국업체의 경우 현지에 직접 법인설립이 불가능하고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의 ①과 ③의 유통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경우 통상 여러 국가, 여러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동일 제품의 경우에도 여러 브랜드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유통경로도 유통업자마다 상이한 실정이어서 일률적인 유통구조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
- 아국기업에 적합한 유통채널은 외국업체가 직접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유통업에 참여하는 것은 현지 법에 의해 불가능하여 현지의 수입 에이전트나 지역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는데, 에이전트 선정이 제품의 경쟁력 확보 이상으로 중요한 실정이다.
 - 에이전트의 형태와 업무, 권한의 범위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에이전트의 능력에 따라 수출실적이 크게 좌우될 수 있으므로 대도시에 소재하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확보 하고 있는 에이전트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 에이전트 계약은 사우디 상공부뿐만 아니라 지역상공회의소에 등록되어야 하는데, 에이전트를 교체할 경우에는 기존 에이전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에이전트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유망상품

| 품목명(MTI 코드) | 추천 사유 | 경쟁국 |
|------------------|---|---------------------|
| 건설중장비(7251) | - 대규모 건설공사 및 신도시 건설로 중장비의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 일본, 미국 |
| 합성수지(2140) | - 주재국 수요증가 - 경쟁국대비 가격 및 품질 우위 | 대만, 중국 |
| 열연강판(6132) | - 건설, 플랜트, 프로젝트 발주증가에 따라 철강제품 수요 크게 증가 | 일본, 미국, 중국 |
| 변압기(8421) | - 플랜트, 프로젝트 발주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특히, 수전력 담수 프로젝트) | 일본, EU, 미국 |
| 배전및제어기(8423) | - 플랜트, 프로젝트 발주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특히, 수전력 담수 프로젝트) | 일본, EU, 미국 |
| 타이어튜브(3204) | - 주재국 자동차수요 폭발적 증가 및 한국산 자동차 수출확대로 타이어 수요증대 | 일본, 중국 |
| 발전기(8411) | - 플랜트, 프로젝트 발주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 | 일본, 미국, 독일 |
| 밸브(8070) | - 플랜트, 프로젝트 발주확대에 따른 관련 기자재 수요증가 | 일본, 독일, 중국 |
| 원동기(7111) | - 기계 플랜트, 프로젝트 발주확대에 따른 관련 기자재 수요증가 | 일본, 독일, 미국 |
| 고무플라스틱가공기계(7215) | - 경기 활성화에 따른 기계류 수요증가 | 독일, 일본, 이태리 |
| 엘리베이터(7451) | - 건축경기 활성화에 따른 수요증가 | 일본, 미국 |
| 의료용전자기기(8147) | - 의료예산확대와 병원의 현대화 작업으로 의료기기에 대한 신규수요 발생 |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
| 전선(8500) | - 기계 플랜트, 프로젝트 발주확대에 따른 관련 기자재 수요증가 | EU, 일본, 미국 |
| IT, 보안기기 | - IT 산업 발전단계에 따라 관련 장비 수요 증대 - 건설경기활성화 및 보안기기 수요증가 | EU, 일본, 미국 |

2. 물가정보

| □ 도시 :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 | | - 환율 : US\$1 = SR3.75 | | |
|----------------------|--|--------|-----------------------|-------------------------|-------|
| 번호 | 항목 | US\$ | 번호 | 항목 | US\$ |
| | <u>1. 의복</u> | | | <u>2. 식료품</u> | |
| 1.1 | 남성 양복(1벌, 순모 100%) | 328 | 2.1 | 쇠고기(1KG, 안심) | 2.13 |
| 1.2 | 넥타이(1개, 실크 100%) | 72 | 2.2 | 돼지고기(1KG 구이용) | 없음 |
| 1.3 | 와이셔츠 (1벌, 면 100%, 긴팔, 흰색, 현지 브랜드) | 31.2 | 2.3 | 닭고기(1KG, 생닭) | 3.2 |
| 1.4 | 양말(1켤레, 면 100%, 현지 산) | 7.5 | 2.4 | 쌀(1KG, Short Grain) | 1.3 |
| 1.5 | 코트(1벌, 롱코트, 추동) | 880 | 2.5 | 밀가루(1KG) | 0.53 |
| 1.6 | 스팅킹(1켤레, 밴드타입, 현지 브랜드) | 2.3 | 2.6 | 설탕(1KG, 백설탕) | 0.48 |
| 1.7 | 청바지(Levi's) | 105 | 2.7 | 계란(10개) | 1.06 |
| | | | 2.8 | 감자(1KG, 현지 산) | 0.46 |
| | | | 2.9 | 미네랄워터(1.5ℓ, Evian 1Pet) | 1.72 |
| | <u>3. 한국식품</u> | | | <u>4. 기호식품</u> | |
| 3.1 | 고추장(1Kg) | 25 | 4.1 | 햄버거(1개) | 2.4 |
| 3.2 | 된장(1Kg) | 16 | 4.2 | 피자(1판) | 11 |
| 3.3 | 라면(1개) | 2.5 | 4.3 | 코카콜라(1캔, 250ml) | 0.26 |
| 3.4 | 설렁탕류(1인분, 설렁탕, 곰탕 등) | 8 | 4.4 | 맥주(수입산, 1캔, 355ml) | 없음 |
| 3.5 | 불고기(1인분, 200g) | 8 | 4.5 | 담배(수입산, 1갑) | 1.46 |
| 3.6 | 삼겹살(1인분, 200g) | 없음 | 4.6 | 위스키(1병, 750ml) | 없음 |
| 3.7 | 김치찌개(1인분) | 8 | 4.7 | 커피(1병, 175g) | 8.8 |
| | <u>5. 주택(150㎡)</u> | | | <u>6. 가전제품</u> | |
| 5.1 | [임차] 중급 아파트(침실 3개 미만, Semi-furnished) - 현지 인기준 | 1,000 | 6.1 | TV(29인치, 칼라, 범용) | 125.3 |
| 5.2 | [임차] 중급 단독주택 - 현지 인기준 (대지 500㎡ 및 침실 4개 미만) | 1,500 | 6.2 | VTR(6헤드, 범용) | 48 |
| 5.3 |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 3~5% | 6.3 | DVDPlayer(범용, 비디오 콤보) | 106.6 |
| 5.4 |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 20~30% | 6.4 | 전자레인지 | 130.4 |
| | | | 6.5 | 냉장고(500L급, 가정용) | 312 |
| | | | 6.6 | 에어컨(400W급, 가정용) | 400 |
| | <u>7. 잡화</u> | | | <u>8. 사무용품</u> | |
| 7.1 | 구두(1켤레, 소가죽) | 180 | 8.1 | 복사용지(1권, 250매, A4) | 2.5 |
| 7.2 | 치약(150g, 1개) | 0.92 | 8.2 | 볼펜(12개) | 3.5 |
| 7.3 | 칫솔(1개) | 2.65 | 8.3 | 연필(12개, HB 사무용품) | 1.6 |
| 7.4 | 면도기(1세트) | 7.98 | 8.4 | 공CD(1통, 12개입, 700MB) | 12 |
| 7.5 | 건전지(1세트, 1.5V AA) | 3.2 | 8.5 | 휴대폰(범용형) | 80 |
| 7.6 | 화장지(1통, 300매) | 0.53 | 8.6 | 휴대폰 사용료(1개월, 기본) | 17.5 |
| 7.7 | 비누(1개) | 0.56 | 8.7 | 인터넷 가설비(1회 최초, 1회 설치) | 무료 |
| | | | 8.8 | 인터넷 사용료(1개월, 기본) | 33.3 |
| | <u>9. 자동차</u> | | | <u>10. 대중교통</u> | |
| 9.1 | 자동차(2000cc, 기본, A/T) | 13,867 | 10.1 | 지하철(1구간) | 없음 |
| 9.2 | 엔진 오일(1L) | 2.6 | 10.2 | 시내 버스(1구간) | 0.53 |
| 9.3 | 휘발류(1L) | 0.24 | 10.3 | 택시(기본 요금) | 1.3 |
| 9.4 | 자동차 등록비(2,000cc) | 80 | 10.4 | 택시(추가 요금/Km) | 0.8 |
| 9.5 | 자동차 보험료(2,000cc, 1년, 신규 종합 보험) | 97 | | | |

| | <u>11. 공공서비스</u> | | <u>12. 교육</u> | |
|-------|-----------------------------------|---------|--------------------------------|--------|
| 11.1 | 전화개통비(1회선,가입비,장치비 포함) | 70 | 12.1 외국인학교(주재국내외국인학교 수) | 20개교 |
| 11.2 |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 8 | 12.2 외국인학교(등록금,AmericanSchool) | 133 |
| 11.3 | 전화사용료(3분, 시내평상) | 0.04 |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 1,733 |
| 11.4 | 공중전화(3분, 시내평상) | 0.08 |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 11,910 |
| 11.5 | 국제전화(현지-서울, 3분, 평상) | 2.8 | 12.5 외국인학교(수업료,중등,1년간) | 12,320 |
| 11.6 | 국내우편(일반편지,1통, 2~3페이지) | 0.26 |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 13,537 |
| 11.7 | 국제우편(일반편지,1통,10g이하,현지-서울) | 29.3 | <u>13. 레저·오락</u> | |
| 11.8 | 특급우편(DHL, 1개, 1Kg 이하, 현지-서울) | 107 | 13.1 골프장그린피(비회원,18홀,1라운드) | 107 |
| 11.9 | 전기요금(1KW/h, 가정용) | 0.013 | 13.2 골프장회원권(18홀,매매불가,연회비) | 3,733 |
| 11.10 | 수도요금(1㎥, 가정용) | 6.6 | 13.3 골프공(1타) | 60 |
| 11.11 | 가스요금(1㎥, 가정용) | 0.26 | 13.4 골프채(Callaway,드라이버1개) | 500 |
| | | |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 18 |
| | | | 13.6 영화관람료1회(개봉관,성인최신) | 없음 |
| | <u>14. 의료·약품</u> | | <u>15. 신문·방송·잡지</u> | |
| 14.1 | 의료보험료 (4인가족,Full Cover, 치과제외) | 2,000 | 15.1 현지신문(1개월,현지유력지) | 16 |
| 14.2 |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내과초진) | 27 | 15.2 한국신문(1개월) | 없음 |
| 14.3 |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내과초진) | 13.5 | 15.3 케이블TV(1개월,기본시청료) | 48 |
| 14.4 | 치과(스켈링,1회) | 26.7 | 15.4 잡지(1부,Time 혹은 Newsweek) | 4.8 |
| 14.5 | 약품(해열제,아스피린,10정) | 0.6 | | |
| | <u>16. 호텔</u> | | <u>17. 임금</u> | |
| 16.1 | 특급호텔(정상요금,싱글1박,시내중심지) | 227 | 17.1 사무실직원(월급여,대졸초임) | 1,750 |
| 16.2 | 특급호텔(할인요금,싱글1박,시내중심지) | 158 | 17.2 사무실비서(월급여,학력불문) | 800 |
| 16.3 | 중급호텔(정상요금,싱글1박,시내중심지) | 133 | <u>18. 노동여건</u> | |
| 16.4 | 중급호텔(할인요금,싱글1박,시내중심지) | 78 | 18.1 법정최저임금(월급여) | – |
| 16.5 | 조식(특급호텔,Continental Breakfast) | 12 | 18.2 상여금(월급여대비%,연간) | – |
| 16.6 | 조식(중급호텔,Continental Breakfast) | 8 | 18.3 사회보장부담금(월급여대비%,연간) | – |
| | <u>19. 사업여건</u> | | <u>18.4 법정휴가일수(연간)</u> | 15일 |
| 19.1 | 법정최저자금 | 133,689 |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 45일 |
| 19.2 |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 400 | 18.6 연간국경일 | 1일 |
| 19.3 | 외국인업체 세제혜택(법인세) | 20 | 18.7 토요휴무(실시여부) | 실시 |
| 19.4 | 외국인업체 세제혜택(개인소득세) | – | 18.8 노동쟁의시 냉각기간일수 | |
| | ※13.6 영화관 없음 | | | |
| | ※18.1,2,3 노동법상 관련 사항 부재 | | | |
| | ※18.6 사우디 왕국 건설일 | | | |
| | ※18.8 노동쟁의 법적 금지 | | | |
| | ※18.9 1일/8시간 기준 (라마단기간 1일/6시간) | | | |
| | ※19.4 개인소득세 부재 | | | |

자료원: 리야드 무역관 실사(2007년12월 중)

주: 항목 내에 가격 범위가 넓게 분포되어 있으나 중간 정도의 가격 기준임.

3. 바이어 발굴

가. 기관, 협회 등 단체 디렉토리 활용

- 사우디아라비아는 산업 품목별 기관이 있으나, 이는 정부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관련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는 없다.
- 기업 등록 및 관리업무는 지역별 상공회의소가 관장하고 있으며, 지역별 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하는 디렉토리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또한, 상공부에서 Saudi Arabia Industry Directory 를 발간하고 있어 동 디렉토리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나. 사우디 지역별 상공회의소

- Council of Saudi Chambers of Commerce & Industry
 - Riyadh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Building
 - P.O.Box 16683, Riyadh 11474
 - Tel. : +966-1-405-3200/405-7502
 - Fax: : +966-1-402-4747
- Abh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P.O.Box 72 ABHA
 - Tel: +966-7-227-1818
 - Fax: +966-7-227-1919
- AlAhs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P.O.Box 1519 Al-Ahsa 31932
 - Tel: +966-3-582-0458
 - Fax: +966-3-587-5274
- Al Bahah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P.O.Box 311 Al Bahah
 - Tel: +966-7-725-4116
 - Fax: +966-7-725-0042
- Arar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P.O.Box 440 ARAR
 - Tel: +966-4-662-6544
 - Fax: +966-4-662-4581
- Bishah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Branch)
 - P.O.Box 491, Bishah
 - Tel: +966-7-622-5544/622-5524
 - Fax: +966-7-622-1511

- Damm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P.O.Box 719 Dammam 31421
 - Tel: +966-3-857-1111
 - Fax: +966-3-857-0607
- Hafr Albate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Branch)
 - P.O. Box 984 Hafr Albaten 31421
 - Tel: +966-3-722-0986
 - Fax: +966-3-722-0976
- Hai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Branch)
 - P.O.Box 1292 Hail
 - Tel: +966-6-532-1060/532-1064
 - Fax: +966-6-532-4644
- Al-Jawf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P.O.Box 585 Sakaka, Al Jawf
 - Tel: +966-4-624-9488/624-9060
 - Fax: +966-4-624-0108
- Jeddah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King Khalid St., Ghurfa Bldg.
 - P.O.Box 9549 Jeddah 21423
 - Tel: +966-2-642-3535/647-1100
 - Fax: +966-2-651-7373
- Jiz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P.O.Box 201, Jizan
 - Tel: +966-7-317-1519
- Al-Majma`ah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P.O.Box 165 Al-Majma`ah 11952
 - Tel: +966-6-432-1571;432-0268
 - Fax: +966-6-432-2655
- Makkah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Al Ghazzah St.
 - P.O.Box 1086 Makkah
 - Tel: +966-2-574-4020/574-5773
 - Fax: +966-2-574-1200
- Medin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P.O.Box 443 Airport Rd., Medina
 - Tel: +966-4-822-1590/822-5380

- Najr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P.O.Box 1138, Najran
 - Tel: +966-7-522-3738
 - Fax: +966-7-522-3926

- Qasee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On Intersection Al Wehdah St. and Alamarah St.
 - P.O.Box 444, Buraidah, Qaseem
 - Tel: +966-6-323-6104;323-5436
 - Fax: +966-6-324-7542

- Riyadh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Dhabab St.P.O.Box 596 Riyadh 11421
 - Tel: +966-1-404-0044/404-0300/404-2700
 - Fax: +966-1-401-1103

- Tabuk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P.O.Box 567 Tabuk
 - Tel: +966-4-422-2736/422-0464
 - Fax: +966-4-422-7378

- Taif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Al Saddad St. (Wadi Widj)
 - P.O.Box 1005 Taif
 - Tel: +966-2-736-4624;736-3025
 - Fax: +966-2-738-0040

- Yanbu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ing Abdul Aziz St.
 - P.O.Box 58 Yanbu
 - Tel: +966-4-322-4257;322-4258
 - Fax: +966-4-322-6800

다. 전시회 활용

□ 전시회 참가 및 참관

-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중의 하나가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이다. 전시회 참가는 내방하는 바이어를 쉽게 접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참여업체와의 정보 교환 및 시장동향 파악을 통하여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 전시회 직접 참가가 어려울 경우에는 참관을 통해 참여업체 또는 내방하는 바이어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므로 바이어 발굴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 전시회 직접 참가 또는 참관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시회 디렉토리를 활용하면,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다.

- 사우디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관한 정보는 다음 전시장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입수할 수 있다.

- Riyadh Exhibition Center.
 - P.O.Box.56010, Riyadh 11554, Kingdom of Saudi Arabia.
 - Tel. : +966-1-454 1448
 - Fax. : +966-1-454 4846
 - E-mail: info@recexpo.com
 - Web site: <http://www.recexpo.com>

- Jeddah Exhibition Center.
 - P.O.Box.40740, Jeddah 21511, Kingdom of Saudi Arabia.
 - Tel. : +966-2-654 6384
 - Fax. : +966-2-654 6853
 - E-mail : acejedxpos@zajil.net
 - Web site : <http://www.acexpo.com>

- Dhahran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 P.O.Box.7519, Dammam 31472, Kingdom of Saudi Arabia.
 - Tel. : +966-3-859-1888
 - Fax. : +966-3-859-0212 / 0203
 - E-mail: info@dhahram-expo.com
 - Website: <http://www.dhah-expo.com>

라.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사우디는 인터넷이 다른 국가에 비해 발전속도가 느리며, 인터넷은 정보 검색보다는 이메일을 교환하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에는 한계가 있다.

- 많은 기업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보 업데이팅, 영문정보제공 등의 부문에서는 미흡한 실정이며, 충분한 정보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 그러나, 사우디의 IT 산업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작업이 보다 수월해지고 정보 입수량도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작업을 꾸준히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 주요 기업정보검색 온라인사이트
 - www.arabdatanet.com : 중동지역 비즈니스 기업정보
 - www.saudicommerce.com : 사우디 전자상거래 사이트, 기업정보 검색
 - www.saudi-online.com : 사우디 일반뉴스, 비즈니스가이드, 기업정보
 - www.ameinfo.com : 중동지역 비즈니스, 산업뉴스, 기업 디렉토리, 국가정보
 - www.ksayellowpages.com : 사우디 전화번호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비즈니스에티켓

1) 복장

- 사우디 남성의 경우 ‘토브’라고 불리는 흰색 전통 복장, 여성은 ‘아바야’라고 불리는 검은색 전통 복장을 착용한다. 현지 외국인은 남성의 경우 반바지 외에는 복장에 제한이 없으며 여성은 아바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 사우디 인은 상대의 복장으로 사회적 지위 등을 구별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 할 때는 정장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정장은 남색 등 어두운 색 위주로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성이 화려한 색의 의복을 착용하는 것은 현지인의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2) 인사

- 남성은 악수를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사법이다. 친밀도에 따라 가벼운 포옹도 가능한데 비즈니스 관계로 만난 바이어라면 친밀도에 관계없이 악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고 왼손을 가슴에 대는 경우가 있는데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현지인들끼리는 포옹과 함께 가볍게 키스를 하는 경우가 흔하며 코에 키스를 하는 경우도 있다.

3) 선물

- 현지 바이어에게 선물을 할 경우, 유의할 점은 없다. 다만 현지 바이어는 비즈니스와 개인적인 친분을 별개로 간주하기 때문에 선물 전달의 효과는 미미하다. 아울러 뇌물을 이슬람에서 금기시되어 있기 때문에 첫 방문부터 선물을 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특별한 기회가 될 때 작은 선물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현지인 선물로 적당한 것은 인삼 제품(인삼차, 인삼 젤편, 인삼 농축액 등), 한국전통 문양이 들어간 수공예품 등이 적당하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높은 현지인이 많고, 일부 다처제로 인하여 정력증진용 제품에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4) 약속

- 현지인은 시간 약속에 대한 관념이 부족하여 흔히 약속시간을 어긴다. 특히 1시간 이상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약속 자체를 잊기도 한다. 이에 현지인과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팅 약속을 정하면 자주 연락을 하여 약속을 지키도록 유도해야 한다.
- 반면 사우디인은 비즈니스 관련 약속을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현지인은 겉보기에는 어수룩해 보이지만 매사 치밀하며 계약서 작성은 비롯하여 문서 관리를 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큰 손해를 입히기도 한다.

- 한편 사우디에서는 ‘알라의 뜻’이라는 아랍어인 ‘인샬라’를 비즈니스에서 흔히 사용한다. 인샬라는 긍정도 부정도 아니고 모든 것이 알라의 뜻이라는 종교적 신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를 긍정적인 반응으로 수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5) 식사

- 사우디 현지를 방문하여 바이어에게 식사에 초대받았을 경우 세 번 이상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사우디 문화에는 손님을 초대했을 경우, 극진이 대접하는 것이 예의 이자 미덕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비즈니스 목적으로 만난 바이어의 경우, 외국인의 입맛에 맞는 식당으로 초대를 하여 식사 대접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특별히 유의할 부분은 없으며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면 된다. 식사시에도 상대방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물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 사우디인의 전통 음식은 양고기와 쌀로 조리된 ‘만디’가 일반적으로, 양이 많고 바닥에 앉아서 맨손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통 식당에 초대를 받았을 경우, 주의할 점은 사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오른손만으로 식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디는 양이 많으므로 남기더라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양고기 냄새가 다소 나더라도 맛있게 식사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이다.
- 사우디인은 ‘사이’라고 불리는 흡차와 노란색 박하 향기의 차를 즐겨 마시며 손님 접대 시 아랍커피 ‘까흐와’와 함께 차를 권유하는 것이 상례이다. 차를 권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친밀감의 표시이므로 가급적 거절하지 말도록 하자.
- 사우디 인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식사에 함께할 경우는 메뉴 선정에 신경을 써야 한다. 사우디 인을 포함한 무슬림은 개, 돼지, 맹수류, 맹금류, 파충류와 이슬람식으로 도살되지 않은 고기, 죽은 짐승의 고기와 피, 내장 등을 먹지 않는다. 또한 음주도 금하고 있어 술을 권하는 것도 예의에 맞지 않는다. 이에 가장 적절한 메뉴는 닭고기와 생선류 등이다. 한국문화에 관심이 높은 사우디 인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향을 사전에 떠보고 한국의 전통 음식을 대접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직하다.

나. 문화적 금기사항

- 이슬람사회의 모든 규범의 근원은 코란이며, 코란을 바탕으로 한 샤리아법과 이슬람의 계율이 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교의 종주국으로서 무슬림의 다섯 가지 의무를 포함한 이슬람의 계율을 사회규범으로 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엄격히 지키고 있다.
- 사우디는 전역에 걸쳐 간음과 매춘 행위, 음주, 돼지고기 판매, 이자놀이 등을 금하고 있으며, 무슬림 외의 타 종교 전교 관련행위 및 신앙생활을 해치는 가무나 요란한 음악 등을 금하고 있다. 특히 간통죄는 처형(미혼자는 태형 후 추방), 음주죄는 태형으로 엄하게 다스려지며 외국인도 예외가 없다.
- 금식기간(라마단) 중에 외국인은 아랍인 앞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거나, 흡연하는 등의 행동을 자제해야 하며, 기타 아랍인들의 종교 생활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금식기간 중에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거나 음료를 마실 경우 현지 무슬림에게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식기간 중에는 호텔의 Room Service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 사우디는 부부 이외의 남녀간의 교제나 서로 어울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남녀간의 내외를 엄격하게 지켜 여자 가족에 대한 안부나 관심도 허용되지 않으며 여성의 사진을 찍거나 말을 거는 등의 행동은 삼가야 한다. 현지의 모든 식당은 남성 독신자석과 가족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일부 대형 백화점 등은 남성의 단독 입장을 금하고 있다.
- 외국인은 이슬람교, 아랍인, 왕정에 대한 비판을 삼가야 한다. 현지 무슬림과 친분을 쌓았다고 해도 이슬람교나 기타 현지 문화, 정부제도 등에 대하여 비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옷차림은 남자라도 무릎을 드러내는 반바지 등 노출이 심한 복장을 금해야 하며, 여성들은 손목과 발목 이상을 외부에 노출시켜서는 안되고 외간 남자들 앞에서 얼굴을 노출시킨다던지 말을 걸지 않는 것이 좋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종교 경찰(무따와)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끝으로 현지는 하루 5회 예배 시간(쌀라)이 있다. 이 시간 동안에는 모든 소매점 및 음식점 등이 영업을 중단한다. 예배 중인 군중 주위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흡연하는 행위, 기도하는 방향 앞을 가로지르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상담/계약체결 시 유의할 점

1) 사우디는 대면상담이 주효하다.

- 서신을 통해서도 인콰이어리 수주 및 상담이 가능하지만 대면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무역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본자세이다. 이는 대면을 통한 대화, 설득이 몸에 배어있는 현지 비즈니스 문화 때문이다.
- 대면상담 시에는 전문적으로 제품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사후관리 정책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단순히 바이어의 이해도가 낮다고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품소개 후에는 가격상담을 바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귀국 후 팩스 등을 통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사우디인과의 대면 상담시 비즈니스 외적인 대화주제로는 축구 등 스포츠를 화제로 삼거나, 이슬람 관련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것도 좋다. 단, 이슬람을 혐담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 추가적으로 대면상담은 상대방의 인종파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아랍인과 파키스탄 등 제 3국인을 대하는 방법은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사우디는 사장이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사장이나 경영층은 아랍인, 실무자는 인도, 파키스탄인이 많다.

2) 사우디 바이어와의 무역상담 성공여부는 가격에서 결정된다.

- 사우디는 전 세계 상품이 각축을 벌이는 치열한 경쟁시장이자 완제품 수입시장으로 가격경쟁이 치열하다. 최근 현 압둘라 국왕이 중국과의 교역확대를 추진함으로써 중국 제품 유입이 확대되고 있어 섬유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제품의 시장이 잠식되고 있다.

- 일단 현지 바이어와의 가격협상 요령은 여유 있는 가격을 제시한 후 목표가격에 접근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유의할 점은 경쟁사가 동 기간 대에 저가로 견적을 제시할 경우 계약이 어렵게 된다. 이에 사우디 진출 희망 기업에게는 품질은 유지하되 불필요한 부분을 최소화하여 가격경쟁력을 갖추라고 조언하고 싶다.
- 바이어 상담진행 시 우수한 품질을 강조해보아도 결국 경쟁사 대비 고가일 경우 수출 계약은 어렵다. 현대자동차의 현지진출 사례를 검토해보면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다음의 그림과 같은 전략을 통하여 사우디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는데 가격의 중요성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현지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시기가 중요한 요소이다.

- 일반 소매품의 경우, 이슬람 최대 명절인 라마단이나 하지기간을 노려봄직하다. 라마단은 우리나라의 명절과 유사하여 전자제품, 가구 등을 교체하는 등 소비자의 구매활동이 활성화된 시기이다. 이에 수입업자들은 명절대목에 맞춰 통상 3~4개월 전부터 수입을 위한 거래를 개시한다.
- 이에 해당 시즌에 맞춰서 수입상과 접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라마단과 하지기간 중에는 현지 바이어와 연락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모든 거래는 반드시 해당 기간 전에 마무리 짓는 것이 필수이다.

4) 사우디에서는 각 도시의 시장특성을 파악하고 마케팅을 개시해야 한다.

- 사우디는 리야드, 까심, 타북 등 북부지역 시장(전체 시장의 30%), 제다, 메카, 메디나를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 시장(20%), 담맘, 주베일 등 동부지역 시장(15%)으로 대별된다. 각 도시의 시장은 거리상으로도 멀지만 시장별로 산업발달에 차이점이 있어 사우디 시장진출 전에 어느 도시부터 먼저 접근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 리야드의 경우는 인구가 제일 많고 행정수도라는 점에서 일단 다양한 품목의 수요가 있고, 제다의 경우는 소매제품과 자동차 관련 제품의 수요가 높고, 담맘은 오일·가스 플랜트 기자재, 건설 관련 시장이 크다. 만약 담묘 등 순례자를 대상으로 한 품목이라면 제다시장을 먼저 검토해야 하고, 기계 플랜트 관련 제품은 담맘을 중심으로 전시회를 참가하고 마케팅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현지진출을 위한 에이전트 계약은 필수지만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사우디는 자국시장과 자국민 보호를 위하여 외국의 국내 비즈니스 활동 및 공공부문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직접 공급 물품이 아닌 경우, 현지의 대규모 마케팅이 필요하거나 입찰참가가 필요한 경우는 현지 에이전트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이다.
- 에이전트 선별은 단순히 기업규모 등 외형적인 부분보다는 향후 전담할 담당자의 적극성, 마케팅 역량 등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해당 기업의 현지 시장에서의 평판도 중요한 검토 요소이다. 기존에 한국기업의 에이전트 경험이 있는 현지기업이라면 해당 한국기업을 접촉하여 현지기업의 적극성 및 현지 네트워크 역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독점 에이전트 계약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 거래 경험이 없이 독점권을 주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장기간 거래를 해보고 조심스럽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고로 일단 에이전트 계약을 하면 에이전트 변경이 극히 어려우며, 이전 에이전트로부터 동의서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에이전트 계약은 반드시 신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편 품목에 따라 브랜드를 다수 개발하여 브랜드별로 별도 에이전트를 발굴, 계약을 하여 시장진출을 꾀하는 방법도 있다. 최근 저가를 무기로 한 중국기업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격경쟁력이 있는 아국기업의 경우도 검토해볼 수 있다.

6) 사우디는 비정형화된 수입관행을 가지고 있다.

- 사우디는 대외 무역 거래, 외환 거래 등이 자유화되어 있어 신용장 거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에 현지 바이어는 통상적으로 최초 거래시에는 상호 신뢰 확보를 위해 일람 출금신용장을 이후에는 물량에 따라 송금방식을 선호한다. 거래금액이 클 경우에는 기한부신용장을 요구하기도 하나 특이하게 기한부 분납하여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길 희망하기도 한다(예. 6개월간 매달 3,000달러씩 송금).
- 현지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현지 바이어는 송금방식을 선호하며 선적전 50%, 선적시 30%, 도착 물품 확인후 20%로 분납, 송금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다. 사우디 인은 거래 상대를 잘 신뢰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 조금이라도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한편 현지 수입관세를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언더밸류 요구도 많은 편인데 이의 수용여부는 수출자의 몫이다.
- 단, 관세청 등에 적발되면 수출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결재 조건 관련 아국기업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은 다양한 결재조건을 수용하여 거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은행수수료가 추가로 소요되더라도 가급적 안전한 일람 출금부 신용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지 은행이 대부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신용장 개설 시 담보를 철저히 확보하기 때문이다.

7) 아랍상인과 거래를 시작하고 싶다면 인내심부터 길러야 한다.

- 우리나라를 통상 모든 업무처리를 급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우디 현지에서 생활하다 보면 무척 대조적으로 보인다. 사우디는 라마단 등 비즈니스가 정지되는 기간이 많아 비즈니스를 연결시키는 것이 어렵다. 또한 현지 공공기관 발주처의 경우 통상 벤더등록에만 2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여간한 인내 없이는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이다.
- 그럼에도 서두르지 않고 꾸준하게 업체를 접촉하고 설득하여 성약을 달성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이에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거래 성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낙담하거나 조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가. 시장 진출 애로 사항

1) 선적 전 검사제도 (수출품 강제적합성 인증검사제)

- 사우디는 1995년도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소비재 상품에 대해 사우디 표준청(SASO)에서 정한 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 확인하는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외국 수입제품의 경우에도 국제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동 인증제도는 매 선적 시마다 선적 전 검사 및 안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한국의 수출업체에게 비용과 절차 면에서 부담을 주고, 교역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동 제도는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소비재상품에 적용(2004년 8월 이전까지는 68개 품목군에 적용) 되므로 한국에만 차별적인 제도라 할 수 없으나,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입국비자발급 애로

- 사우디 외교부는 WTO 가입과 관련하여 비즈니스 방문의 경우에 사우디 입국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나,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비즈니스 방문의 경우 현지의 초청장 없이 상공회의소 등록증과 신청서만으로 24시간 내 발급도록 훈령이 전달된 바 있으나(2005.10.), 실제 이행되지 않고 있어 한국 비즈니스맨들의 사우디 입국 비자발급 시 불편사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 특히, 여성 사업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자발급을 거절하고 있으며, 사우디 외교부의 공식 초청 노트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입국을 불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에 여성기업인에게도 비자발급을 해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한편, 2007년9월 사우디최고경제회의(SEC)에서는 자국기업인 및 외국기업인의 지속적인 비자발급 개선요구에 따라 비즈니스방문 비자의 경우 재외공관 또는 공항 및 사우디 입국지점에서 초청장없이 1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키로 개선하고, 2007년 11월에는 사우디 국무회의에서 비자수수료를 SAR1,000(US\$267)로 결정하였는 바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례나 행정진행 처리관행에 비추어 실제 사례에 적용될 시기는 미지수이다.

3) 독특한 비즈니스 관행

- 사우디는 이슬람 종주국으로서 이슬람 정신이 사회전반에 걸쳐 지배하고 있어 한국인들의 비즈니스관행과 다른 부분이 존재하여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상담종이라도 기도시간이 되면 상담을 중단한다든가, 약속시간을 잘 지키지 않으며 모든 것이 신의 뜻(인살라)으로 돌리는 관습 등이 거래관계에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 또한, 아랍어 사용에 따른 의사소통상의 문제와 원거리에 따른 지리적 문제 등도 거래 관계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가격 중심의 시장으로서 오랫동안 거래 관계를 지속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상대가 나타나면 거래선을 쉽게 바꾸는 경향이 있어 지속적인 거래 관계 유지에 애로 사항으로 작용한다.

나. 투자진출 애로사항

- 사우디는 외국인 투자를 원칙적으로 장려하지만 각종 혜택은 사우디 25% 지분 참여를 최소한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100% 외국인 투자는 드문 편이다. 또한 tax holiday후 45%까지 부과되는 법인세는 비 사우디 기업(합작회사 포함)에만 부과되며, 토지 소유 및 유통사업도 사우디인과 GCC 국민들만이 할 수 있는 등 외국투자자에 대한 내국인 대우는 아직 요원한 편이며,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이 존재하고 있다.
- 스폰서 제도: 외국인은 사우디 스폰서를 통해서, 스폰서의 명의로 은행거래, 비자 취득 및 각종영업 행위를 하게 되어 있어 스폰서와의 관계 악화 시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각종 불공정 관행 상존: 정부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 및 집행 시 국제관행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사 대금 지급의 지연, 추가 공사경비 불인정 등은 상례화 된 상태이며 발주처와의 법적 분쟁 시 회교법 및 관행을 들어 외국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 자국인화 정책 (Saudization): 일정 수준 이상의 사우디인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제3국 인력에 비해 생산성이 낮고 임금이 높은 사우디인을 채용하게 되므로 업체의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고 있다.
- 불공평한 조세제도: 내국인은 기본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나(Zakat라는 종교세 2.5%를 자진납부) 외국인이나 외국기업(합작기업 포함)에게는 20%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 외국인력 비자발급: 제3국 인력에 대한 Block Visa 획득에 상당기간 소요되어, 국내업체들의 인력수급에 큰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 Block Visa: 사우디 정부에서 자국시장에 필요한 외국인력의 취업을 위해 해당 업체가 신청한 인원 중 일정 인원(쿼터)을 정해 인원수대로 일괄 발급하는 비자
- 외국인의 관청출입문제: 사우디 정부는 외국인의 관청 출입을 불허하고, 현지인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공사 책임자가 관련 공무원과의 업무 협의 시 현지인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경우 부정확한 의사전달 및 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진출성공사례 1: 두산중공업의 사우디 담수 시장 진출

- 1962년에 한국 중공업의 전신인 현대 양행으로 설립되어 2001년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두산중공업은 기초 산업소재인 주단조에서부터 원자력, 수화력 등 발전설비, 해수담수화 플랜트, 환경설비, 운반하역설비 등 플랜트설비 전문업체로서 사우디아라비아에는 1977년도에 진출하여 사우디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에 사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두산중공업은 1978년 사우디아라비아의 Farasan 담수화 공장을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Assir, Shoaiba, U.A.E.의 Jebel Ali 'E', Taweelah A2, Umm Al Nar, Fujairah, 쿠웨이트의 Az-Zour Project등의 대형담수설비건설을 일괄도급방식으로 건설하였으며,

쿠웨이트의 Sabiya I & II & III, 오만의 Sohar, 카타르의 Ras Laffan, 사우디아라비아의 Shuaibah Ph3 Project, 리비아의 Benghazi, Zawia를 일괄도급 방식으로 건설 중이다.

- 특히, 2002년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US\$ 8억 상당의 후자이라 발전 담수 플랜트를 수주하였고, 2005년 12월에 계약한 사우디 쇼아이바 3단계 담수공장 프로젝트는 US\$ 8억5천만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수주실적을 기록하였는데, 세계 최고의 담수부문 전문지인 Global Water Intelligence로부터 ‘올해의 담수 프로젝트’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세계 최대의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겸비하고 현지투자진출법인의 적극적인 수주활동 노력으로 현재, 두산중공업은 세계 제1위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 공급업체로서 90년 이후 MSF(다단계증발방식) 분야에서 25% 이상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 최근 2년간 사우디 Shuaibah IWPP MSF 및 RO를 제외하고, 대형 담수플랜트 수주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두산중공업은 기존의 중동지역 Major Player로서의 1위 업체의 위상 유지하고 있다.
- 향후 대형 IWPP가 Open Solution을 추구하는 점을 감안, 기존 Championship을 유지 하던 MSF 외에도 대형 RO 및 MED에 역량 집중 투입하여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그 사례로, 2007년 7월 대형 RO 플랜트인 Shuaibah IWP Exp. RO (33 MIGD)를 수주 하였으며, 최근에는 Kuwait에서 대형 RO 플랜트인 Shuweikh RO (30 MIGD) 계약 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
- 이는 두산중공업이 기존 MSF 기술로 쌓아 올린 명성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 M&A에 힘입어 신규 사업분야인 RO 및 MED에도 최 단기간 내에 대형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결과이다.

나. 진출성공사례 2: LG전자 에어컨 시장진출

- LG전자의 가정용 에어컨은 음이온 발생장치와 항균 및 탈취 장치를 장착하여 기존 사우디 시장에서 찾아 볼 수 없었던 신제품을 출시하였으며 아울러 연중, 하루 종일 사용해야 하는 현지 기후조건 및 생활조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하여 세계 에어컨시장의 테스트 마켓으로 불리는 사우디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 동제품 성공요인은 무엇보다도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부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즉 사우디는 기후조건으로 인해 연중 에어컨을 사용해야 하며 사회분위기는 매우 폐쇄적이어서 실내생활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많다는 점을 파악함과 아울러 소비자들의 건강친화적 제품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을 포착한 데 있다.
- 한편 이러한 시장의 수요를 제품개발로 연계하는데 성공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한 마케팅도 큰 몫을 차지하였다. 대대적인 광고(신문광고, 입간판 설치, 소비자 사은잔치 등), 고가전략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 구매동기 유발로 연결하는데 성공하였다.
- LG전자는 이와 같은 상품진출 성공을 바탕으로 중동지역의 진출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현지 에이전트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3천 5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현지 에어컨생산 공장을 설립을 위한 기공식을 2007년 3월에 가지고 2008년 초에 1단계 공장건설을 완료하여 본격적인 에어컨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 LG전자의 에어컨 합작투자 진출은 현지 시장수요를 바탕으로 한 제반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판단으로서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지역의 시장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한 성공적인 진출 전략이라 판단된다.

7. 이주정책 가이드

가. 신분증(이카마) 신청

- 외국인 신분증인 ‘이카마’는 모든 법을 행위는 물론 사소한 업무 처리에도 사본 제출을 요청 받으므로 현지 도착 즉시 신청, 발급 받아야 한다. 제출 서류는 이카마용 신체 검사서, 여권, 사진 2장, 고용주 레터 및 고용계약서 사본이며 소요기간은 8~9일이다.
- 가족 비자의 경우, 본인의 이카마 발급 후 5~6주가 소요되는데,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많으므로 현지 도착 후 자세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거주지

- 사우디는 종교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와하비파에 속하며, 이슬람 종주국이라는 자부심 덕으로 외국인의 사회 생활에 대한 통제가 매우 엄격한 나라이다. 때문에 외국인들은 주로 캠퍼운드 형태의 집단 주거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리야드에는 약 30여 개의 크고 작은 캠퍼운드가 있으며, 예산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나, 2005년부터 외국기업 진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캠퍼운드 주택공급이 절대부족하여 2007년에는 전년대비 약 30%이상의 임차료가 인상되었고, 임차료 인상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현지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나 일반 주택을 직접 임차할 수도 있으며 비용도 경제적이지만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모든 불편을 감수하여야 한다.
- 외국인들은 주택을 소유할 수가 없으며 임차만 가능하다. 임차 기간은 통상 1년 단위이고 임차료도 1년 분을 선불로 받고 있다.

다. 교육

- 리야드, 젯다 등 2개 지역에 학생 수가 각각 약 10~20명 수준인 한국 초등학교가 있어 초등 교육은 별 문제가 없으며 이 외에도 영미계 외국인 학교가 있다. 예전에는 담맘에도 한국 학교가 있었으나 학생 수가 줄어들어 폐쇄하였다.

한국 초등학교

| 학교명 | 전화 | 팩스 | 주소 |
|----------|---------------|---------------|----------------------------|
| 리야드 한국학교 | (01) 248-0612 | (01) 248-0639 | P.O.Box 88824 Riyadh 11672 |
| 제다 한국학교 | (02) 667-3704 | (02) 667-1990 | P.O.Box 4322 Jeddah 21491 |

- 중등학교 과정 이상은 외국인 학교에서만 수학이 가능하다. 영미계 학교의 경우, 그간 고등학교 과정이 없어서, 대부분의 비이슬람권 외국인은 본국이나 제3국에 유학을 보냈으나 1998년부터 사우디 교육부가 고등학교 과정(10~12학년)을 인가함에 따라서 기존 영미계 학교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설립하여 사우디 내에서 고등학교 과정도 마칠 수 있다.

- 영미계 학교 외에도 외국인 학교가 다수 있으나, 이들 학교는 사우디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교과 과정(이슬람 방식의 교과목 포함)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이슬람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에게는 다소간 어려움이 따른다.
- 연간 수업료는 American International School-Riyadh 의 경우 고등학생 기준으로 미\$ 15,000 정도이며 기타 외국인 학교는 이보다 약간 저렴하다.

주요 외국인, 외국어 학교

| 학교명 | 전화 | 팩스 |
|--|---------------|---------------|
| American International School – Riyadh | (01) 491-4270 | (01) 491-7101 |
| Manarat Boy School | (01) 454-2492 | . |
| Manarat Girl School | (01) 454-5998 | . |
| Nour Al-Maaref International School | (01) 465-7990 | . |
| Middle East International School | (01) 464-7251 | (01) 461-4515 |
| Saudi International School Multi Section | (01) 453-1686 | (01) 464-8203 |

라. 전화 신청

- 최근 사우디텔레콤의 민영화되고 통신 인프라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는 등의 노력으로 전화 사정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전화 신청 후 설치까지 수 개월이 소요 되기도 한다. 산업 공단 내에는 전화 설치의 어려움이 없다.
- 국제 전화 요금은 비싼 편으로서 사우디 호텔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할 경우 최고 분당 14 리얄(미화 5달러 정도)까지 지불해야 한다.

마. 정부 등록

- 별도의 정부 등록은 불요하며, 신분증(이카마) 신청 및 발급으로 정부 등록에 갈음한다.

바. 자동차 구입

- 사우디는 세계 각국의 자동차가 진출해 있어 메이커별, 모델별로 다양하게 선정할 수 있다. 부가세, 소비세 등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가격은 다른 국가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 현대자동차의 소나타를 풀 옵션으로 구매하는 경우 \$18,000 내외에 구입 가능하다.
- 자동차 구입은 해당 메이커의 딜러를 통해 구입하는데, 구입 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취득) 업무를 대행해 주며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 중고차의 경우에는 중고차 딜러를 통해서 구입하거나 직접 신문 광고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

사. 은행 계좌 개설

- 계좌 개설은 이카마(외국인 신분증)가 나온 후에야 가능하며 아무 은행이나 거래하기 편리한 곳을 선택하면 된다.
- 계좌 개설 시에는 스폰서의 계좌 개설 요청 서한이 있어야 하며, 미화 및 현지화 계좌 등의 개설은 수월한 편이다.

아. 병원

- 사우디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병원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으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병원은 외국인이 이용할 수 없다.
-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의료진 및 시설이 선진국 수준이나, 민간 병원의 경우는 수준이 떨어지는 편이다.
- 종합 병원 이외에 분야별로 전문 클리닉이 다수 있어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 의료 보험 제도가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정부운영병원
 - King Abdulaziz Medical city for National Guards
 - King Faisal Specialist Hospital & Research Center
 - King Khaled University Hospital
 - Riyadh Maternity & Children Hospital 등 다수
- 민간병원
 - Dallah Hospital
 - Al-Hammadi Hospital
 - National Hospital
 - Specialized Medical Center Hospital
 - Saudi-German Hospital 등 다수

자. 사서함 개설

- 우리나라와 같은 주소 개념이 없고 우편물 배달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사서함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 개인명의로 개설시 개설 비용은 350 리알이며, 3년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명의의 사서함 개설비용은 4,000리알 이상 필요하다.

차. 운전면허 취득

- 사우디는 국제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능 시험을 다시 보아야 한다.
- 우리나라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 학원에서 1개월 이상 수강을 해야 응시 가능하다.
- 단, 여성에게는 면허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며, 운전이 금지되어 있다.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1) 기후 특징

-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서부 흥해 연안의 예멘 접경 지역인 아시르 지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폭서와 비가 없는 기후로 특징되는 전형적인 사막성 기후를 갖고 있다.
-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심하며, 하루 중 일교차도 매우 심한 편으로서 겨울에는 해가 지고 나면 서늘한 느낌을 받는다.
- 사우디 전역을 대상으로 할 때 최저 기온은 섭씨 0도까지 내려가며 최고 기온은 50도 이상을 넘어 가기도 한다.
- 내륙 지방은 고온에 건조한 편이며 흥해 및 걸프 연안은 습도가 높은 편이다. 강우량은 비가 제일 많이 오는 제다의 경우에도 평균 연간 284mm에 불과하며 비가 적은 아라르는 연간 총 6.3mm에 불과하다.
- 해발 595m의 리야드는 아라비아 반도의 중동부에 위치한 사막 가운데의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로서 고온, 건조한 기후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해발 10m인 흥해 연안의 제다, 해발 20m인 걸프 연안의 다란 및 담맘은 고온 다습한 기후를 갖고 있다.

2) 복장

- 연중 8개월 이상이 한여름 날씨이므로 하복이면 무난하다. 기온이 떨어지는 1~2월에도 춘추복 정도이면 활동에 아무런 불편이 없다.
- 실내에서는 에어컨을 켜고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외에서도 태양열을 막기 위해서 반소매 복장보다는 긴 소매 셔츠가 바람직하다.
- 한낮 태양 광선이 강렬하므로 시력 보호를 위해 선글拉斯 휴대 및 착용이 필수적이다.

3) 주요 도시 기후

- 리야드는 아라비아 반도 중동부에 위치한 사막 도시로서 고온 건조한 기후 특성을 보이며, 흥해 연안의 젯다, 걸프 연안의 다란 및 담맘은 고온 다습한 기후를 갖고 있다.

□ 주요 도시의 기후표 (단위: 섭씨 도/일)

리야드

| 평균/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연평균 |
|------|------|------|------|------|------|------|------|------|------|------|------|------|------|
| 최고기온 | 19.4 | 24.1 | 26.7 | 31.9 | 39.9 | 42.6 | 44.9 | 44.5 | 40.3 | 35.2 | 26.8 | 24.3 | 33.4 |
| 최저기온 | 9.4 | 10.9 | 13.9 | 17.6 | 22.8 | 24.5 | 27.8 | 26.3 | 23.0 | 17.4 | 12.5 | 8.3 | 17.9 |
| 강우일수 | 12 | 5 | 18 | 19 | 2 | 0 | 0 | 0 | 0 | 0 | 5 | 0 | 61 |

셋 다

| 구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연평균 |
|------|------|------|------|------|------|------|------|------|------|------|------|------|------|
| 최고기온 | 29.3 | 31.0 | 31.4 | 34.5 | 38.5 | 36.7 | 39.0 | 38.6 | 38.4 | 36.9 | 31.8 | 31.0 | 34.8 |
| 최저기온 | 18.1 | 18.8 | 18.7 | 21.7 | 25.4 | 24.7 | 26.9 | 27.6 | 26.6 | 23.5 | 20.8 | 20.6 | 22.8 |
| 강우일수 | 1 | 0 | 0 | 2 | 2 | 1 | 0 | 0 | 0 | 0 | 23 | 1 | 28 |

다란(담맘)

| 구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연평균 |
|------|------|------|------|------|------|------|------|------|------|------|------|------|------|
| 최고기온 | 20.5 | 24.2 | 25.4 | 31.7 | 40.5 | 41.1 | 44.9 | 43.1 | 40.3 | 35.0 | 28.2 | 25.3 | 33.4 |
| 최저기온 | 11.7 | 13.3 | 16.4 | 19.8 | 25.0 | 27.4 | 29.3 | 29.4 | 26.5 | 22.0 | 16.7 | 12.9 | 20.9 |
| 강우일수 | 18 | 19 | 21 | 8 | 0 | 0 | 0 | 0 | 0 | 0 | 1 | 0 | 70 |

자료원: 사우디통계 연감

나. 시차/근무시간

1) 시 차

- 한국 표준시간보다 6시간 느림. (KST - 6)
- 세계 표준시간보다 3시간 빠름. (GMT + 3)
- 하절기에도 센터 타임을 실시하지 않는다.

2) 근무시간

- 관공서는 오전 7:30부터 오후 2:30까지(토-수요일)이며 목, 금요일은 휴무이다.
- 일반 상점이나 개인기업은 평일인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오전 8:30부터 오후 1시까지 오전 근무를 하고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오후 근무를 한다. 요즘은 IT 대기업 등 일부 대기업의 경우 09:00-17:00까지 1 SHIFT로 근무하기도 한다.
- 목요일은 관공서나 일부 기업은 휴무하지만 무역상 등 개인기업 일부는 오전 8:30부터 오후 1시까지 오전 근무를 한다.

기관별 근무 시간표

| 구분 | 토-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
| 관공서 | 07:30-14:30 | 휴무 | 휴무 |
| 개인기업 | 08:30-13:00/ 17:00-20:00 | 08:30-13:00 | 휴무 |

3) 회계연도

- 정부의 회계 연도는 그레고리력 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그러나 관공서의 급여는 이슬람력에 기준하여 지급한다. 이슬람력은 그레고리력보다 매년 11일이 짧아진다.

다. 주요 단위

1) 도량형

-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 도량형 규격을 적용하고 있다.

| | |
|----|--|
| 길이 | 미터법 사용(mm, cm, m, km) |
| 넓이 | 평방미터 사용(mm ² , cm ² , m ² , km ²) |
| 부피 | 입방미터 (mm ³ , cm ³ , m ³ , km ³) |
| 용량 | 리터 (ml, l, dl, kl) |
| 무게 | 그램 (mg, g, kg, ton) |

2) 전력

- 전압: 110V와 220V 동시 공급
- 주파수: 60Hz

라. 출입국/비자

1) 비자 종류 및 발급

- GCC 국적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사우디아라비아 입국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 하지 및 우무라(UMRA) 비자:** 이슬람 성지순례 비자로서 최우선적으로 발급되며, 성지 이외 지역으로의 방문이 제한된다.
- 관용 비자:** 관용여권 소지자에 한해 발급된다.
- 관광 비자:** 없음
- 상용 비자:** 방문비자와 취업비자가 있다.
 - 방문 비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SPONSOR가 있는 경우 상사 지점 및 건설업체 출장 시 3개월 간의 입국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취업 비자는 노동성으로부터 취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 내무성 조사 통제, 외무성의 경우 대사관에서 발급하는데 입국 후 체류허가증(이카마)을 받아야 한다.
 - 또한 유학, 연수 등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내 초청자에 의해 1개월 방문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 장기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국비자는 단수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SPONSOR를 통해 재입국 비자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 상담 차 방문 시에도 1 개월 정도의 여유를 두고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취업을 위한 비자를 신청 할 경우에는 AIDS 검사증이 필요하다.

□ 유의 사항

- 이스라엘 출입국 기록이 있을 경우 입국 비자 발급이 안되므로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 여성의 입국을 제한한다. 시장 개척단, 정부 대표단 일원인 경우 간혹 허용되기도 하나 이때도 해당자의 연령이 35세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 복잡한 절차나 조건을 제시하여 포기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 기자의 입국도 통제한다. 정부 대표 수행의 경우에는 입국을 허용하지만 그 외 사우디의 초청이 아닌 단순한 취재 목적의 입국은 사전에 사우디 당국의 허가 사항으로 되어 있다.
- 사우디는 2005.12.11. WTO 정식 가입 이전에 WTO 가입을 위한 조치 중의 하나로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5.9.20부터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비자발급 규정을 개정하였으나, 실제 시행은 잘 되지 않고 있다.

2) 비자취득 절차

상용 목적 (개별입국)

- 사우디인 스폰서의 초청장 발송 (1부는 주한 사우디 대사관, 1부는 방문자)
- 주한 사우디 대사관에 비자신청 및 발급
 - 비자획득에 필요한 전체 소요 기간은 약 3주~4주가 걸린다.
 - 2005.9.20.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초청장 없이도 연합상공회의소(한국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의 등록확인서를 첨부하면, 24시간 내 발급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실제 이행은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상용목적(시개단 등 단체)

- 무역관이 대 사우디 상공회의소에 비자발급 협조요청 공한 발송
- 사우디 상공회의소, 사우디 외무성에 비자발급 요청
- 주한 사우디 대사관 비자발급 허가 통보
- 비자 신청 및 비자 발급
- 통상 30일 전에 신청해야 함.

비자 발급처: 주한 사우디 대사관

- 주소: 종로구 신문로 2가 1-112 / 전화: 739-0631/5
- 휴일: 토, 일요일, 9.23일
- 비자신청: 10:30 ~ 12:30
- 비자발급: 14:30 ~ 16:30
- 소요시간: 24시간
 - 취업 및 파견근무는 별도의 절차에 의거 비자를 발급한다.

3) 출입국 수속 및 세관신고

출입국 카드 작성

- 사우디 도착 및 출발 시 출입국 카드를 작성하고 입국/출국 신고해야 한다.

- 입국신고 시 인적 사항 이외 스플서(초청자) 및 종교를 기재토록 되어 있는데, 종교란에 기독교, 불교 등 자신의 종교를 당당히 기입하는 것이 좋다(종교가 없는 사람은 동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세관신고

- 과세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 통관절차 이행
- 개인 소지품의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음
- 현금의 반출입은 신고가 불요함.
 - 그러나, 사우디 정부는 2007.6.2부터 육해공로로 사우디에 출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에 대해 현금(외화 포함) 및 보석 포함 귀중품의 가격이 여행자 1인당 60,000 리yal(미화 16,000 달러) 이상을 소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음

□ 반입금지(제한)품목

- 금지 품목: 마약, 술, 돼지고기, 음란서적 및 테이프, 이스라엘 관련자료, 이슬람 이외의 종교 서적
- 제한품목: 의약품의 경우 처방전 및 관련문서가 있어야 반입 가능

□ 출입국 시 유의사항

- 사우디 입국 시 휴대품 검색은 엄격하기로 유명한데 검색 시 가장 유심히 보는 것은 마약 및 무기 소지 여부이며 이외에 이슬람에서 금기시하는 반입 불허 품목은 세밀히 검색 한다. 마약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형, 주류를 반입하는 추방한다.
- 세일즈 출장 시 샘플은 통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훈란스러우나 일반적으로 금은 장신구, 시계 등 고가품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세 유예 후 전량 재반출이 거의 불가능하고 관세 납부 후 환급도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애로가 있다)
- 소지 외화에 대한 신고 의무는 없다.
- 제다 공항의 경우에는 공항 내 면세점이 있으나, 리야드 공항의 경우 공항 내 면세점은 없다.

□ 공항↔시내 교통편

- 리야드 및 젯다 모두 공항↔시내 구간 교통편은 택시(리무진이라 부른다) 이 외의 대중 교통수단은 없다
- 요금은 리야드의 경우 미터 요금을 적용치 않고 일반적으로 SR75(\$20) 정도이며, 협상에 따라 인하할 수 있으며, 젯다의 경우에는 미터요금과 협상요금이 병행되며, SR50 (\$15)- SR100 (\$27)정도이다.

주의할 점

- 여성의 입국은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주류 반입시 최초 방문자에게는 규정 미숙지 등을 이유로 압수 및 벌금 부과 후 입국이 허용되기도 하나 기본적으로는 추방 조치하므로 주류의 반입은 원천적으로 금해야한다.
- 종교상의 이유로 돼지고기 역시 반입이 금지되며, 돼지고기 성분이 포함된 식품이나 알코올이 포함된 식품의 경우에도 반입이 금지된다.
- 이슬람 이 외의 종교적인 인쇄물, 사진, 그림, 조각, 기타 유사한 물품 등도 반입 금지된다.

마. 환전

1) 화폐 단위: SAUDI RIYAL(SR)

- 지폐에는 500, 200, 100, 50, 20, 10, 5, 1 리얄권이 있다.
- 동전에는 50, 25, 10, 5 할랄라 (1리얄 = 100할랄라)이 있다.

2) 환율: US\$1 = SR3.745 (기준환율, 2006년 8월 현재)

- 환율은 미화에 고정되어 있어 십여년간 변하지 않았다.

3) 환전: 공항 및 호텔에서 쉽게 환전이 가능하다(USD<->SAR)

- 미화 환전의 경우 환전수수료는 별도로 징수하지 않으며, 환율을 다소 낮게 적용하나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다만,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환전할 경우에는 은행계좌가 있어야 하며, 은행계좌가 없을 경우 환전 사유를 제시하면 환전이 가능하다.
 - 그러나, 미화 이외의 화폐에 대한 환율은 다소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미화를 소지하고 오는 것이 유리하다.

바. 교통/통신

1) 우리나라와의 항공편

- 직항: 없음
- 제3국 경유

- 인천-두바이-리야드(젯다): 매일 취항
 - 왕복구간 모두 두바이에서 갈아타야 함
 - 인천-두바이간은 에미레이트 항공사가 매일 취항하고 있고, 대한항공이 주3회 취항, 두바이-리야드(젯다)간은 사우디 항공, 에미레이트 항공사가 매일 1-2 회씩 취항하고 있다.
 - 리야드(젯다)->두바이->인천 편도의 경우는 1박 없이 연결되고 있으나 인천->두바이->리야드(젯다) 편도의 경우는 두바이에서 13시간 이상 대기하여야 함.

- 인천-홍콩-리야드: 주 3회 (일, 수, 금)
 - 케세이퍼시픽항공(CX)이 운항하는데 왕복 구간 모두 홍콩에서 갈아타야 함.

취항 항공사 리스트

- 에미레이트항공 서울사무소:
 - 주소: 서울 중구 다동 111, 국제빌딩 6층
 - 전화: 779-6999,
 - 홈페이지: www.emirates.com/kotra/kr
- 케세이 퍼시픽 한국지사
 - 주소: 서울시 종구 정동 34-35 JP Morgan빌딩 5층,
 - 홈페이지: www.cathaypacific.com/kr
 - 이메일: sel#mkt@cathaypacific.com
 - 예약 문의: 02-3112-800, 요금 문의: 02-3112-787
- 사우디 항공(Saudi Arabian Airlines) 서울사무소
 - 주소: 서울 마포구 성산동 209-5 진영빌딩 301
 - 전화: (예약) 323-0011, 팩스(예약): 323-0017
 - 홈페이지: www.saudiairlines.com

저렴한 예약방법

- 항공권의 경우 조건이 많은 티켓을 구입할 경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예 : 변경, 환불 불가등). 인천-두바이-리야드간 에미레이트 항공을 이용할 경우 인천-홍콩-리야드간 케세이퍼시픽 항공을 이용할 경우보다 요금이 약간 싼 편이나 그 폭은 크지 않다.

선 편

- 한국 -사우디 간은 선적량에 따라 직행하기도 하나 물량이 적어 두바이를 경유하는 경우가 많는데 이 경우 환적은 하지 않는다.
- 이사 화물의 발송 등은 통상 1개월에서 1개월 반이 소요되며 담망항에서 리야드 도착 및 통관 등으로 10일 정도가 다시 소요된다.

2) 국내교통

항공편

- 사우디는 국토 면적이 넓어 항공편이 잘 발달되어 있는 편으로 국내 25개 공항이 있어 대부분은 공항을 이용한다.
- 리야드-제다 구간의 경우 왕복 요금은 약 SR600(\$160) 정도로 하루 수편이 운항되고 있다. 항공권은 예약이 필요하나, 좌석이 있을 경우에는 공항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 버스

-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버스도 있으나 배차 간격도 길고 노선이 다양치 못하여 이용도는 극히 낮다.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안전하게 탑승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표를 구매하여야 한다.
- 시내버스의 경우 리야드 시내에는 25인승 중형 버스가 각 노선별로 운행되고 있으나 배차 간격이 길고, 시내의 극히 일부 구간에서만 운행되어 대중 교통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주로 저소득층의 제3국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요금은 2 리얄(약 50센트)을 받고 있다.

□ 철도

- 철도는 리야드-담맘 간 노선이 유일하게 운행되고 있으나, 운행회수도 적고 시간도 약 8시간 정도 소요되어 대부분 화물운송 및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수단으로서는 적당치 않다.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안전하게 탑승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표를 구매하여야 한다.

□ 택시

- 택시요금은 비교적 저렴한 편이며 택시 수가 많아 이용이 용이하다.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거리가 먼 관계로 SR. 75 정도이며 리야드 시내에서의 근거리는 SR.20, 외곽의 원거리는 SR.40 정도면 갈 수 있다. 통상 리야드에서는 택시 요금을 미리 정하고 타는데 이 가격이 미터기 요금보다 낮아 흥정하여 타는 요령이 필요하다.

3) 주의할 점

- 항공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출발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출발시간 변경 등을 탑승객에게 사전에 예고하지 않기 때문에 공항출발 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국내 이동 시에는 철도나 고속버스보다는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 시내에서는 택시이외 공공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택시의 경우에는 탑승 전 행선지를 말하여 사전에 가격을 협상하는 것이 좋다.

4) 특사운송회사

특사운송회사 리스트

| 특송운송회사 | 전화번호 | 홈페이지/이메일 |
|--|---|--|
| Aramex | 01-275-9000 | www.aramex.com |
| ArtEx | 01-243-4415/4416 | www.artex.com.sa |
| EIRAD/UPS | 01-462-6655/273-4430 | www.ups.com |
| HatEx (Hattan Express) | 01-479-0111 | |
| Saudi Land Transport C.- Mubarrad Express | 01-479-1113 | www.mubarrad.com.sa info@mubarrad.com.sa |
| SMSA Federal Express | 01-463-3999/462-0522/464-2555/472-0031/404-2737 | |
| Snas/DHLWorldwide Express | 01-462-1919/4652255/4056003/2411470 | www.dhsa.com |
| TNT Express Worldwide | 01-461-1444 | www.tnt.com |

□ 특사배달요금

- 회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리야드->서울 기본요금이 SR300 (USD80)정도이며, 우체국 EMS의 경우는 SR130 (USD 35)이다.
- 특사배달의 경우는 수요자까지 방문하여 Pick-up하나, EMS의 경우는 송달 모두 우체국을 방문하여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5) 국내전화 거는 방법

- 국내전화 거는 방법은 한국과 유사한데, 동일 지역내 전화를 걸 경우에는 지역번호 없이 전화번호만 누르며, 시외전화를 할 경우에는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번호를 눌러야 된다.
 - 예: 리야드에서 리야드 시내전화: 111-1111
 - 리야드에서 제다로 시외전화: 02(제다 지역번호) - 111-1111
- 주요지역 지역번호
 - 리야드: 01
 - 젯다, 메카: 02
 - 담맘: 03
 - 메디나, 바다: 04
- 전화요금은 리야드 시내의 경우 분당 5 할랄라(15원 정도)

6) 국제전화 거는 방법

- 사우디의 국가번호는 966이며, 지역번호는 리야드의 경우 1, 젯다의 경우 2번이다.
- 한국에서 리야드로 통화할 경우: 001(또는 002) - 966 - 1 - 403-6469 (무역관번호)
- 사우디에서 한국으로 통화할 경우: 0082-2-3460-7114 (KOTRA 서울 본사)
- 한국으로 전화할 경우 호텔에서는 분당 2-3달러로 매우 비싸나 일반 사무실이나 주택에서는 분당 1달러에 가능하다.

7) 인터넷 사용환경

- 사우디는 통신 기반 시설 인프라가 양호치 않아 인터넷 환경은 한국이나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환경이다.
- 사우디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정보 획득보다는 이메일이나 뉴스 검색 등의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향후에는 정보획득 수단으로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 최근 IM 속도의 ADSL이 서비스되고 있으나, 요금이 매우 비싸 수요자가 많지 않은 편으며, 대부분 일반인 가정에서는 256Kbps 또는 512 Kbps 용량의 ADSL을 사용하거나 여전히 Dial Up 모뎀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 가정용 ADSL 요금은 512Kbps 기준으로 년간 \$213 수준이며, LAN을 구성하고 있는 소규모 사무실의 경우 512Kbps 기준 년간 \$2,000 내외로 서비스 되고 있다.
- 호텔 등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 256 Kbps 또는 512Kbps 수준으로 서비스 되고 있어 이메일이나 간단한 정보검색 정도만 가능하며, 동영상 등의 검색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호텔에서의 인터넷 사용은 대부분 정액제가 많으며 1일 사용 기준으로 \$25 내외를 청구하고 있다.

사. 호텔/식당

호텔

(환율: 미화 1달러 = SR3.745)

| 지역 | 호텔명 | 전화번호 | 요율 |
|-----|-------------------|--------------|--------------------|
| 리야드 | INTER.CONTINENTAL | (01)465-5000 | 싱글: SR650 트윈:SR800 |
| | SHERATON | (01)454-3300 | 싱글: SR650 트윈:SR750 |
| | RADISSON-SAS | (01)479-1234 | 싱글: SR650 트윈:SR800 |
| | MARRIOTT | (01)477-9300 | 싱글: SR680 트윈:SR800 |
| | RIYADH PALACE | (01)405-4444 | 싱글: SR500 트윈:SR600 |
| | HOLIDAY INN | (01)478-2500 | 싱글: SR450 트윈:SR600 |
| 제다 | INTER.CONTINENTAL | (02)661-1800 | 싱글: SR500 트윈:SR650 |
| | SHERATON | (02)699-2212 | 싱글: SR585 트윈:SR650 |
| | HOLIDAY INN | (02)631-4000 | 싱글: SR450 트윈:SR585 |
| | ALHAMRA SOFITEL | (02)660-2000 | 싱글: SR260 트윈:SR312 |

주: 조식, 봉사료 미포함 가격임.

식당

| 지역 | 식당명 | 전화번호 | 비고 |
|-----|----------|---------------|----|
| 리야드 | 비원 | (01) 463-1102 | 한식 |
| | 토쿄 | (01) 454-3300 | 일식 |
| | 쇼군 | (01) 479-1234 | 일식 |
| | 리야드 차이니스 | (01) 465-5451 | 중식 |
| | 골든 팔레스 | (01) 462-7168 | 중식 |
| | | | |
| 젯다 | 아리랑 | (02) 660-3116 | 한식 |
| | 코리아나 | (02) 660-7430 | 한식 |
| | 시안공 | (02) 669-2212 | 중식 |
| | 홋카이도 | (02) 652-1234 | 일식 |
| 담맘 | 우래옥 | (03) 864-9191 | 한식 |
| | 진고개 | (03) 894-7542 | 한식 |
| | 크라운 | (03) 898-6767 | 한식 |
| | 우래옥 | (03) 362-0354 | 한식 |
| | 끼아포 | (03) 361-4051 | 한식 |

아. 관공서 관행

1) 민원 처리기간

- 민원 처리기간은 잘 지켜지지 않으며 담당자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처리되거나 담당자가 휴가 등 부재 중에는 일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항상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미리미리 신청 하여야 한다. 한국인들의 조급함은 오히려 업무 처리에 불리한 경우도 있다.

2) 관공서 출입 시 유의사항

- 담당 공무원들은 사우디 인이나 아랍국가 외국인이 아닌 제3국인들은 만나 주지도 않을 정도로 고자세이다. 용건과 관련된 레터를 사전에 준비하여 팩스로 보내거나 휴대하는 것이 좋으며, 복장은 정장차림이 바람직하다.

자. 공휴일

1) 공휴일

- 매주 목-금요일이 휴일이며, 민간기업의 경우 목요일 오전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 사우디의 공휴일은 라마단 휴일과 하지 휴일 등 두 개의 종교적인 공휴일이 있다.
 - 라마단 휴일은 공식적으로 라마단(금식월)이 끝난 다음 날부터 5일간이나 통상적으로 라마단 종료 전 1주일도 휴무를 하여 거의 2주간 휴무하고 있다.
 - 하지 휴일 역시 공식적으로는 하지(순례월)가 시작되어 2주차가 시작되는 날부터 5일간 이지만 이후 1주간도 통상 휴무하므로 거의 2주간 휴무하고 있다.
- 사우디 왕국 건국일(9.23)은 국경일로 매년 휴무여부를 결정하며, 2006년도의 경우에는 휴일로 정하였고, 2007년도의 경우에도 휴일로 결정되었다.

2007년도 공휴일 일정표

| 일자 | 공휴일명 | 비 고 |
|---------------|----------------|-------------------------------|
| 1.1 – 1.5 | 하지(Hijjah)휴일 | 하지 기간: 2006.12.22 ~ 2007.1.20 |
| 9.23 | 사우디 건국일 | 휴무 여부는 정부에서 매년 공식 발표 |
| 10.13 – 10.15 | 라마단(Ramadan)휴일 | 라마단 기간: 2007.9.13 ~ 10.12 |
| 12.19–12.22 | 하지(Hijjah)휴일 | 하지기간: 2007.12.11 ~ 2008.1.9 |

- 사우디의 헤지라력은 음력으로서 달이 뜨고 지는 것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만 라마단이 시작·종료되므로 하루 정도의 일자 변경이 일어날 수 있다.

2) 출장 지양기간

- 라마단은 금식월이자 성지 순례(움라)를 하는 달이며 하지는 명실공히 성지 순례월이므로 이 기간은 국내외 항공 사정이 극히 어렵다.
- 라마단 기간은 금식월이자 성스러운 달이고 명절이므로 공공기관이나 일반 회사를 막론하고 업무가 거의 마비된다.
- 여름 휴가기간인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도 모든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다. 날씨도 무척 더울 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을 막론하고 의사 결정권자들은 대부분이 외국으로 휴양을 나가기 때문이다.

차. 여행시 유의사항

1) 여행준비

- 복장은 3~10월 기간 중에 하복을 준비하면 무난하며 11월~2월 기간은 춘추복이 적당하다. 햇빛이 강하므로 선글라스 휴대가 바람직하다.

2) 여행여건

- 치안 상태는 양호하며 버스 등 대중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시내에서 이동할 경우 택시 이용이 일반적이다. 택시 요금은 비교적 저렴한 편이며 택시 이용 시 현지인들은 택시 요금을 깎기도 하지만 통상 미터기 요금만 주면 된다.
- 식당에서는 서비스료가 음식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팁을 줄 필요가 없으며, 서비스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음식값의 10% 정도를 주어도 좋으나 서구 국가들처럼 팁이 상례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호텔 투숙 시에는 포터, 룸 서비스 및 청소 시에 각각 5리알(1.5불) 정도의 팁을 주는 것이 좋다.

3) 위험지역

- 사우디는 전국적으로 치안이 안전한 편이었으나, 9.11. 테러 이후 국경 지방을 중심으로 테러 및 납치 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경 근처 지역으로 여행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 리야드 시내의 경우에는 구시가지 중심으로 제3국의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위험 지역에 속한다.

4) 팁 제도

- 일반 대중 식당의 경우에는 팁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나, 요금의 5~10%정도를 지불 하는 것이 적당하며 호텔, 고급 식당 등에서는 15%의 봉사 요금을 요금에 함께 청구한다.

5) 문화적 금기사항

- 이슬람 사회 모든 규범의 근원은 코란이며, 코란을 바탕으로 한 샤리아법과 이슬람 계율이 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의 종주국으로서 무슬림의 다섯 가지 의무를 포함한 이슬람의 계율을 사회 규범으로 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엄격히 지키고 있다.
- 사우디 전역에 걸쳐 간음과 매춘행위, 음주, 돼지고기 판매, 이자 놀이 등이 생활의 금기로 되어 있으며, 무슬림 외의 타 종교 전교 관련행위 및 신앙 생활을 해치는 가무나 요란한 음악, 영화 등은 허락치 않고 있다.
- 또한 이슬람교, 아랍인, 왕정에 대한 비판은 어느 상황에서나 삼가야 한다.

- 금식기간(라마단) 중에 외국인은 아랍인 앞에서 음식을 먹거나,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좋으며, 특히 거리에서의 춤연을 삼가고 기타 아랍인들의 종교 생활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기간 중에는 호텔의 Room Service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 남녀간의 내외를 엄격하게 지켜 여자 가족에 대한 안부나 관심도 허용되지 않으며, 여인의 사진을 찍거나 말을 거는 등의 접근은 삼가 하는 것이 좋다.
- 원손은 불결한 것을 처리할 때만 사용하고 깨끗한 일은 오른손으로 하기 때문에 악수를 하거나 물건을 주고 받는 경우, 또는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해야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 옷차림은 남자라도 지나치게 노출되거나 요란한 복장을 금하고, 여성들은 손목과 발목 이상을 외부에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외간 남자들 앞에서 얼굴을 드러낸다든지 말을 걸지 않는 것이 좋다.
-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몸에 달라붙는 차림이나 무릎 위가 드러나는 치마, 소매 없는 웃옷을 입을 경우 종교 경찰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 여성의 경우도 검은 베일로 온 몸을 가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다. 뇌물을 주는 것은 절대로 금지하고, 필요시 우정과 감사의 표시로 비싸지 않은 자그만 선물 제공은 무방하다.
- 선물 받은 음료나 음식 등은 거절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집으로 초대 받았을 때에는 세 번 이상 거절하면 예의상 곤란하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답례를 하는 것이 좋다.

카. 유용한 연락처

한국기관

| 기관명 | 전화번호 |
|-------------|---------------|
| 주 사우디 한국대사관 | (01) 488-2211 |
| 리야드 무역관 | (01) 273-4496 |

한인단체

| 기관명 | 전화번호 |
|----------|---------------|
| 리야드 교민회 | (01) 230-4966 |
| 젯다 교민회 | (02) 660-2202 |
| 담맘 교민회 | (03) 899-8895 |
| 리야드 한국학교 | (01) 248-0612 |
| 젯다 한국학교 | (02) 667-3704 |

- 응급사태 시 연락처 (각 지역 모두 국번 없이 동일번호 사용)

비상 연락처

| 전화번호 | 연락처 |
|------|----------------|
| 993 | 교통 경찰 호출(교통사고) |
| 996 | 고속도로 안전경찰 호출 |
| 997 | 병원구급차 호출 |
| 998 | 화재신고 |
| 999 | 경찰서 |

주요 정부기관

| 부서명 | 전화번호 |
|-------|---------------|
| 상공부 | (01) 401-2222 |
| 재정경제부 | (01) 405-0000 |
| 외무부 | (01) 406-7777 |
| 수전력부 | (01) 477-6666 |
| 내무부 | (01) 401-1111 |
| 국방부 | (01) 478-5900 |
| 공보부 | (01) 406-8888 |
| 교육부 | (01) 404-2888 |

비즈니스 관련 현지기관

- 사우디 연합상공회의소 (Council of Saudi Chambers of Commerce & Industry)
 - Riyadh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Building P.O.Box 16683, Riyadh 11474
 - Tel. (1)405-3200/405-7502 / Fax: (1)402-4747
 - [Http://www.saudichambers.org.sa](http://www.saudichambers.org.sa)
- 리야드 상공회의소 (Riyadh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Dhabab St. Riyadh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Building P.O.Box 596 Riyadh 11421
 - Tel: (1)404-0044/404-0300/404-2700 / Fax: (1)401-1103
 - [Http://www.riyadhchambers.org.sa](http://www.riyadhchambers.org.sa)
- 젯다 상공회의소 (Jeddah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King Khalid St., Ghurfa Bldg. P.O.Box 9549 Jeddah 21423
 - Tel: (2)642-3535/647-1100 / Fax: (2)651-7373
 - [Http://www.jcci.org.sa](http://www.jcci.org.sa)

타. 관광명소

1) 개요

- 사우디아라비아는 관광비자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지방 여행을 할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와 함께 스마트폰로부터 받은 여행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특히 지방에서는 아랍어밖에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여행을 할 경우 단독 행동은 피하는 편이 좋다.
- 치안은 지방 도시에서도 잘 이루어져 있으며 호텔 사정도 좋다. 교통수단은 자동차나 비행기지만, 차를 이용할 경우 편의시설이 극히 미약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식사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물과 목적지에 도착할 때 까지의 식량을 지참할 필요가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차로 여행할 경우에는 주유소를 발견하게 되면 가득 주유해 두어야만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또한 화장실을 발견했다면 반드시 이용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2) 외교 단지

- 리야드에 도착, 도심에서 멀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조용히 산책하고 싶은 사람에게 권할 만한 장소이다. 특히 서쪽과 서북쪽으로는 천연 암벽을 따라 축조되었기 때문에 멀리 내려다 보이는 계곡(와디 하니파)의 대추야자 농장 풍경이 볼 만하다.

3) 구 리야드(Old Diriyah)

- 와디 하니파에 위치한 구 리야드(Diriyah) 유적은 초기 사우디의 수도였으며 이곳을 배경으로 한 사우드 가문이 18세기 중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을 통일하였다. 1446년에 첫 정착민이 살기 시작했으나 세상에 알려진 것은 종교개혁가이자 설교자인 모하메드 압둘 와함이 이곳에 정착, 사우드 왕가의 고문 자격으로 종교개혁을 추진하면서부터인데 동 와하비즘이 현 사우디 이슬람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다.
- 전성기에는 5,000여 명의 주민이 살았으며, 왕궁에서는 500 명의 하객을 위한 파티가 매일 열렸다고 한다. 당시에는 정복한 땅에서 들어오는 조공도 많았고 유사시 10만명 정도의 병사를 동원능력도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
- Diriyah의 좁은 골목길을 거닐다가 건물 속을 들여다 보면 옛날 중부지방(Najd)의 전통 적인 건축양식을 엿볼 수 있다. 방들은 모든 창문이 안뜰을 향해 열리게 되어 있으며 안뜰의 천장은 석회석 기둥으로 받쳐져 있는 이층 부녀자 전용 방에 의해 일부가 가려져 있고 나머지는 시원스레 뚫려있다. 마줄리스라고 불리는 남성 전용 거실은 보통 입구 쪽에 있다.

4) 메카(Mecca)

- 이슬람 성지는 제1성지인 메카(Mecca)와 제 2성지인 메디나 (Medina)가 있는데, 특히 메카는 회교 창시자인 모하메드의 출생지로서, 카바(Kaaba: 예배의 방향을 정하는 직사각형의 검은 돌을 모신 무슬림의 신전, 성지순례 시 7번 돌며 입맞춤)와 잠자리(Zamzam) 샘물이 있으며 무슬림에게 있어서 생애에 꼭 한번은 이곳을 순례하는 것을 제일 큰 축복으로 생각한다.

- 순례객이 연 3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비 이슬람교도는 방문할 수 없으며, 입구에 비 이슬람교도 전용의 외곽도로가 있다. 젯다의 The King Abdul Aziz International Airport에서 85km거리로 Taxi를 이용할 경우 50분 정도 소요된다.

5) 메디나(Medina)

- 이슬람 제2성지이자 이슬람 창시자인 모하메드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무슬림들의 메카 방문 시 제2성지로 꼭 방문하는 곳이다. 비 이슬람교인들은 방문이 불가능하며, 젯다에서 420km 북동쪽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승용차나 순례객 고속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젯다 Abdul Aziz International 공항에서 내선 항공을 이용할 경우 35분 정도 소요된다.

6) 이브의 묘

- 태초의 인간인 이브의 묘가 있는 이 곳은 자국인들도 잘 알지 못하나 유서깊은 곳이다. 외곽이 돌로 쌓여 있으며 내부 출입금지 구역이다. 젯다 시내에서 3.5km 정도 떨어져 있다.

7) 메디나인 살알리히(Madain Salih)

- 알울라(Al-Ula) 지역에 위치한 이곳은 사우디아라비아 서북쪽으로 2,000년전 Nabataean 민족이 번영할 때 요르단(Jordan)에 있는 페트라(Petra)신전과 동일한 그 당시 왕조들의 묘가 석산에 갖추어져 있다. 이곳은 젯다에서 420 km 떨어진 메디나를 경유하여 다시 320km 가면 울라(Ula) 지방이 나온다.

8) 타이프(Taif)

-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는 대부분 사막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서해안인 홍해를 따라 남북으로는 높은 산맥인 고산으로 형성되어 있다. 해발 2,700m 고산 도시인 타이프(Taif)는 인근 도시인 젯다(Jeddah)보다는 12°C~20°C 이상 저온으로 국왕 별장이 있으며, 채소 농사, 목축업 등 농업이 발달되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유일하게 휴양 도시로 일부 개발되어 있다. 이곳은 농장과 사우디 내 제일의 동물원이 갖추어져 있으며, 산 정상의 국립공원과 해발 2,700m까지의 연결된 도로를 볼 수 있다.

9) 고산 도시 알-바야하(Al-Bahah)

- 타이프(Taif)와 아브하(Abha)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타이프보다 해발 200~300m가 더 높은 도시로서, 밀 농사 및 양 사육 등을 하며 생활하고 있다.
- 사우디아라비아 통일 전(1932년) 예멘(Yemen) 지역에 옛 촌락 및 가옥이 보존되어 있어서 아랍인들의 주거 생활을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오아시스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하여 열대 야자수, 바나나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 젖다(Jeddah)에서 타이프(Taif)를 거쳐 바야하(Bahah)까지는 총 550km이며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할 수 있다.

10) 아브하(Abha)

-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의 서남쪽으로 예멘(Yemen) 국경과 근접하고 있으며, 사우디 통일 전에는 예멘(Yemen) 지역이었다. 해발 2,500m 고산도시로 밀 농사, 양 목축 등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예멘 국경지역인 나아즈란(Najran)에서는 유일하게 대형 댐이 있어 물이 풍부한 지역으로 식수를 제조 공급하고 있다. 원숭이 동산, 국립 공원 등이 있으며 사우디 아라비아 내에 특별 한 명소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휴가 시 차량을 이용하여 한번쯤은 여행해 볼만 한 좋은 곳이다.
- Hotel Billa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젯다에서 780km 지점에 위치한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 서는 해안 도로를 따라 달리면 된다. 또한 내륙 도로를 이용하여 타이프 (Taif)→바아하 (Bahah)를 방문하는 왕복 차량 이용 시에는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일시에 방문할 수도 있다. 젯다공항에서 국내선 항공을 이용할 경우에는 1시간 정도 소요된다.

11) 호오 푸부푸(Hofuf)

- 야자수가 밀림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는 보기 드물게 지하수가 도랑을 이루어 흘러 내리고 마치 정글을 연상케 하는 곳이다.
- 현 사우디 왕가가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할 때 시아파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이 끝까지 숲속에서 저항했다는 곳으로, 이 밀림지대를 지나면 토굴이 나오는데 이곳 또한 좋은 저항 장소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토굴은 그리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것은 아니지만 자연 발생된 것으로 관리 상태는 좋지 않다. 담맘(Dammam)에서 리야드 (Riyadh)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따라 100km를 주행하다 동북방향으로 100km 지점에 위치한다.

12) 사우디-바레인간 해상다리(King Fahd Causeway)

- 총 길이 50km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로서 중간기점을 기준으로 양쪽이 똑같은 길이와 모양을 하고 있다. 양쪽 끝부분에 Tower가 있으며 그 안에 휴게소, 음식점, 전망대 등이 있으나 보안상의 이유로 통제되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담맘에서 자동차로 20km 정도 가면 바레인(BahRAIN)국을 향한 다리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양쪽 국가의 방문 비자가 필요하다.